

조영할 필요가 있다.

(라) 조선 민중의 도의적인 생활을 순치(馴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황실에 대한 존숭(尊崇)관념이나 종교적인 신앙을 강화 침투시켜, 우리나라의 고전역사를 통해서 신화시대 이래 단절하고자 해도 단절하지 못하는 내선의 교섭사실을 이해시키고 새로 붙은 황국신민이 아닌 예부터의 황국신민이라는 입장 을 강하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

경성부회 의원 新井永敏

1. 의무교육의 보급촉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많으므로 성은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물론, 성전의 목적 및 전 시체제 하에서 사회생활의 신념이 완전히 잃기 때문에 부동(浮動)하거나 파행(跛行)적인 걸음을 하는 자가 매우 많다.

2. 조선역사를 잘 이용하여 교재로 삼을 것. 각 학교에 조선역사를 채용하여 신화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선(日鮮) 간의 연락적인 여러 사물을 멋지게 안배하여, 공통되는 문화, 풍속, 습관을 강조한 다음, 일선 간은 역사적으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운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양 민족은 동 조동근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북돋음으로써 틈새 없는 내선일체의 열매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3. 상의하달의 철저를 기할 것.

이것의 한 방책으로서는, 1읍, 면을 단위로 하여 내년 제1회 징집이 있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면(읍) 징병제도실시후원회(가칭)와 같은 것을 설립하여, 순전한 민간기구(비정치단체)로써 전선 방방곡곡의 2천5백만 동포에게 징병제도의 고마우신 성지를 침투시키는 것은 물론 본 제도 실시에 따른 여러 원호사업마저 아울러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

전북도회 의원 平文忠男

징병제에 따른 원호단체의 설립

우리는 이후 군인으로서 대군(大君)의 방패가 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국민적인 자질을 높여서 갈고 나갈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과 체격보다도 더 높은 생활적인 환경의 건강성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가정의 강화, 사회의 견실화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익한 재목이 얻어지기 때문에, 특히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감화와 훈육의 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지로 볼 때 유력한 추진기구의 필요성을 통감하는 바이다. 우리는 각 도에 강력한 재단법인과 같은 것을 설립하여 당국 및 총력연맹 등과 서로 협력해서, 입영군인은 물론 귀환군인의 원호와 유가족의 부조나 육성 모(母)의 교육, 여성의 계몽과 훈련 등을 강화해서 결전체제에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강원도회 의원 國本政佐

1. 우리 국민개병(皆兵)다운 정신함양.

(1) 부락마다 호주 및 가정주부를 소집하여 연성적인 훈련을 함과 동시에, 순회강연회를 개최하여 유

사 아래의 우리 국사가 나타내는 바를 충분히 이해시킬 것.

(2) 각 집집마다 징병제실시 표어를 게시하고 성지를 받들며 황공 감격 정성의 환기를 촉구할 것.

2. 징병연령에 도달한 가정의 훈도.

(1) 적령자의 성명 및 입영 연월일을 기둥이나 적당한 곳에 게시하고, 황국신민의 명예와 영광의 관념을 촉구할 것.

(2) 부락민은 입영유가족에 대하여 각별한 원호를 강구하게 할 것.

3. 징병제도실시기념행사를 유효하게 실시하게 할 것.

×

함북 무산읍회 의원 鎌田岳城

豊永 保

(1) 정신교육의 일조가 되도록 간행물을 발행하고, 애국반상회의 교본으로서 이것의 활용에 힘쓸 것.

(2) 군 생활의 실태를 견학하게 할 것.

농촌의 부녀자를 하여금 군대생활의 실상을 견학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계몽의 일단이 되고 나아가서는 기우를 쓸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함남 차호읍회 의원 玉山星煥

가. 한 동리에 1사(祠), 간소하고 청결을 내용으로 “신사(神祠)”를 세우며, 동리의 선영(先塋)을 합사하여, 주민이 ‘씨족신의 후손’이라는 관념을 조장할 것.

나. 각 동리 단위의 병사 및 군인원호회를 결성할 것. 즉 병사행정의 제1선을 보강함과 동시에 후원금을 조성하고 빈곤적령자의 가정보호 및 출정응소군인의 유가족원호에 대비시킬 것.

다. 정(町), 동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긴급하게 정리할 것을 촉진하여, 해당 병사군인후원회 또는 해당 부락연맹이 일원적으로 귀속하게 할 것. 단, 동리 안에 옛부터의 여러 가지 재산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것. 즉, 동 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라. 유익한 청장년의 애향심에 맹성(猛省)을 촉구하여 빠지기 쉬운 비국민적인 사상으로부터 이탈하도록 꾀할 것. 즉, 주로 지능 및 진취적인 기개가 풍부한 그들로 하여금 시국인식을 양양하는데 협력과 동원을 시켜 애국의 극진한 정을 소생시키며 양양하도록 재향의 여러 기관과 당지에 있는 기관과의 연락을 꾀한다.

마. 내선가정의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할 것.

×

평북도회 의원 岡利晃

1. 황국신민의 신념 철저.

(가) 내선일체의 완성.

(나) 국민개병의 인식.

(다) 국어 상용에 힘씀.

×

전북도회 의원 乾山元求

관리 및 지도자를 연성하여 그 지도자가 될 인물을 고르고 또 지도자인 이상은 지도자다운 임무를 다 한다는 몸까지 희생하는 각오를 가지도록 할 것, 다음으로 각 지방의 이미 정해진 총력기관은 이름이 있는 이상 실제의 구현이 없으면 안 된다. 일반 공직자를 지방으로 동원하여 그 정신지도 및 기타의 책임을 맡게 하고 순회강연 및 좌담회를 때때로 실시할 것.

×

나진부회 의원 金永光

징병제시행감사, 적 미, 영 격멸결의선양대회를 전 조선에 추진하도록 하고자 한다.

×

함남 신창읍회 의원 三浦 亨

황민(皇民)의 혼을 철저하게 주입하여 급속하게 황민화를 꾀할 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 2천5백만의 반도민중 전부에 걸쳐 특별 황민연성기관을 대대적으로 신설강화하고, 반도민중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민중에 대한 단기간의 재교육방침을 세우며, 국어의 철저한 보급을 꾀하여 내지인의 사상 및 풍속습관을 체득시킴과 동시에 황국의 삼천년 아래의 완전무결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의 국체의 실정을 항상 뇌리에 삭여 넣어서, 예로부터 있어 온 사대사상으로부터 생기는 잠재적인 소민족적 정신인 과거의 미몽에서 탈피하는데 있다.

×

함남 신창읍회 의원 金城光政

공직자 여러분은 자신의 근처 부락을 담당해서, 부락좌담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열어서 부락의 남녀 노소 모두에게 철저히 해설해서 부락민의 마음 속 깊이 심어서 국가의 생각과 국민의 의무를 자각을 시켜서, 성지에 감사하고 충량한 국민이 되기에 노력할 것.

×

함북도회 의원 呂同春

1. 군무가 허락하는 한, 현역 반도인 장교에게 징병제도실시에 대한 취지와 선전 순회강연을 맡도록 할 것.
2. 국어 상용운동을 한층 강화 시킬 것.
3. 공립청년훈련소 및 특별연성소를 확장함과 동시에 적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소를 허락할 것.
4. 병사사무 및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부, 읍, 면 관리에게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특별강습을 하게 할 것.
5. 만주국과 반도인의 호적 및 기류계의 연락관계를 긴밀하게 할 것.

×

함북도회 의원 利川文英

1. 부락연맹마다 징병제시행감사 적 미, 영 격멸결의선양대회를 개최하고, 각 애국반원 전부를 집합시켜서 영화, 좌담회, 강연회 등으로 성은에 감읍시킨다. 우리나라의 징병의무라는 것은 권력제도가 뒷

받침하는 구미(歐美)의 병역제도와 달리 황민임을 자랑하는 특권이다. 그리하여 지금 대동아전쟁하에 우리는 대원수폐하로부터 받은 몸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자각을 하며 내선일체의 실천에 철저해야 된다.

2. 군인의 어머니로서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이끌기 위해 먼저 각 부락으로부터 중견부녀자를 선발하여 군대생활의 견학을 시켜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징병제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며,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은 외람되게도 위 한분의 것이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도달시켜야 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인 것이다.

×

황해도 겹이포읍 회의원 橋本光義

- 부, 읍, 면, 병사계 주무자는 관계 군, 관, 서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취할 것.
- 부, 읍, 면, 병사계는 여러 차례의 실무 강습을 한다.
- 부, 읍, 면에서 호적 및 기류계의 완비를 촉진하여 적령자의 행방불명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한다.
- 병사계로 하여금, 가급적으로 내지의 시, 정(町), 촌의 병사사무를 시찰시키도록 할 것.
- 우리나라의 옛날 국방, 군비, 징병에 관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애국반을 교도한다.
- 군인에게 주신 칙유(勅諭)의 정신 및 대조(大詔)를 쉽고 간명하게 풀어서 민중에게 체득을 시킬 것.

×

경남도회 의원 豊川一清

- (가) 징병제도실시기념일 제정의 건.
- (나) 대중적인 축하회 개최의 건.
- (다) 기념병기헌납의 건.
- (라) 취지 선전강연회 개최의 건.
- (마) 징병적령자 특별연성회 개최의 건.
- (바) 입영군인후원회의 건.

×

강원도회 의원 松岡世宗

1. 1944년도부터 실시가 되는 징병자 가정은 다음과 같이 특별우대방법을 바란다.
 - (가) 생활필수품 특별배급 (단, 1년간에 한한다.)
 - (나) 각종 잡역의 면제 (단, 1년간에 한한다.)
 - (다) 위문금품의 증정 [반 조직(隣組 : 토나리구미)으로부터 매달 한 집에 10전씩의 객출금으로 위문을 할 것]
 - (라) 징병에 응한 자의 부모, 존속 등에게 때때로 위안회를 개최하여 군인의 아버지로서, 또는 그 어머니로서의 감격을 강조하고 철저할 것. 단 생활필수품의 배급, 잡역면제는 무 징병 가정으로부터 분양 받고 가세한다면 출정자는 위안이 되고 책임감도 강하게 되며, 무 징병가정은 협력정신도 점차 강하게 되므로,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현재 시정상으로 물적, 인적 변화 없이 일석삼조의 길이 된다고 믿는다.
 - (마) 반도에 의용병제(나이제한 없음)를 실시하여 응모자에게는 한 달쯤의 연성 또는 강습을 받게 하

여, 끝난 후에는 각 지방에 파견하여 제1회 징병적령자에게 강연 또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대원수폐하의 팔다리가 되며 황국의 신병(神兵)으로서 충성을 바치게 될 은명(恩命)을 입은 영광을 납득시키면 서로가 진지하게 되고,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정신은 이렇게 해서 일치(一致)결정(結晶) 되리라고 믿는다.

2. 의제 제1안에 의하여 이상과 같이 철저히 침투하게 하는 첨경에 대해서는 국가에 다음과 같이 부탁말씀을 드린다.

- (가) 반도인에 대한 시험관을 철폐할 것.
 - (나) 참정권을 지혜롭게 결단해 줄 것.
 - (다) 국가는 무조건 대 포용성을 가지고 1억 1심을 진정으로 결정(結晶)시키도록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
 - (라) 숨은 인재나 배척된 인재를 지혜롭게 결단해 등용할 것.
 - (마) 내선인의 공학제를 실시할 것.
 - (바) 반도에도 부, 현제(縣制)를 실시할 것.
 - (사) 내지인의 현인회(縣人會)를 폐지하고 대 동아인회에 집중시키도록 할 것.
 - (아) 반도인 관리의 대우를 지혜롭게 결단해 개선할 것.
 - (자) 공직자 일동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한층 우대책을 강구할 것.
 - (차) 학교교원, 훈련소의 지도원에 대하여 일본정신과 군사교련을 한층 강하게 주어서 2천5백만의 민중을 교화시킬 것.
 - (카) 반도에 살고 있는 내지인에게는 정치적인 연구회를 설치하여, 내선일체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한층 납득시켜서 반도민중 지도를 담당케 할 것.
 - (타) 일한병합 전에 조선에서의 가렴주구(苛斂誅求), 탐관오리를 일삼던 행정의 실태와, 시정 30여 년 간 넓고 커서 비교할 수 없는 성은에 감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과 향상을 이루어 온 반도문화의 현상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이것을 영화, 신문, 잡지, 강연 등 선전자료에 제공하여 일반민중에게 감동을 줄 것.
 - (파) 반도는 지리적으로 인구적으로 경제적으로 3대결함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독립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도의 노한(老闊)계급이나 사상가에게 납득시키며, 반도인의 영광은 오로지 천황 폐하에게 귀일하는 길만이 있다는 각오를 가지게 할 것.
 - (하) 군, 관, 민의 총 친화를 강화할 것.
- 통제사무 실시이래에 관공리의 직권은 방대하게 되었으며, 관과 민간은 천리 먼 거리감이 느껴진다. 민중은 바깥은 부드럽고 안은 흥측한 현상이다. 때문에 관공리에게 친절하고 숙정운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

강원도 강능읍회 의원 丸山隆達

1. 긴 머리에 뾰족한 옷과 같은 미, 영 바람을 일소하고, 강건한 선비풍의 모자와 소복을 존중하여 상무정신을 일반민중에게 수양하도록 할 것.
2. 각 가정에는 반드시 신단(神壇)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배례(拜禮)케 할 것.

3. 해마다 8월 1일의 기념일에는 신사(神社)나 신사(神祠), 부락에는 사당(祠堂) 등 기타 청정지에 집합하여, 심신을 깨끗이 맑혀, 깊이 머리를 숙여 멀리 동쪽을 배례하고, 어심(御心)에 감읍하며 성수(聖壽)만세를 삼창하며 받들 것.

4. 반도가정부인총에 군인원호의식을 주입할 것.

×

함복 도회 의원 金山韶能

1. 경신(敬神)승조(崇祖)를 실천시킬 것.
2. 국어를 전부 이해하는 운동을 강화할 것.
3. 군 막사 견학을 자주 하도록 할 것.
4. 징병제취지 선전방법을 쉽게 할 것.

징병제취지의 철저를 꾀하는 방법으로서, 종래부터 강연회, 좌담회, 영화회 등 여러 가지가 실시되고 있으나, 또 나아가서 웃으면서 이러한 것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서 야담, 만담 집단을 농산어촌에 순회 공연 시키는 것과 동시에, 군사사상보급에 적합한 언문소설, 이야기 등을 발간하여 널리 반포할 것.

5. 청소년연성기관의 충실을 꾀할 것.

수업연한을 1개년으로 하는 현재의 청년특별연성소를 2개년으로 연장하여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법학을 수득시키고, 청년훈련소를 청년학교로 끌어올려서 청소년 전부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6. 군사원호의 철저를 꾀할 것.

징병제실시가 실현될 때에는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생길 것이다. 또 이후에 상이군인도 늘어날 것이므로 이때에 유산계급에 대하여 감사현금을 종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또 일반민중에게 군사원호사상의 보급을 꾀하여, 도의관념을 확립시킴으로써 군인이 된 자에게 뒤돌아 볼 걱정이 없도록 군인원호의 태세를 정비할 것.

제2의제

대동아전쟁이나 피차 결전양상의 처참(慘劇)가열(苛烈)화에 비추어 더한층 미, 영 격멸의 결의를 새로이 하고, 조선에서 필승신념의 양양, 전력증강과 전시생활의 확립을 한층 심화하고 철저히 하는 건설적인 의견

경기도회 의원 津田興一

유휴 노동력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유

대동아전쟁은 적의 집요한 반격으로 점점 처참가열을 더하여, 양적인 위력에 기댄 적(敵)인 미국은 커다란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보급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며, 요즘의 전투양상은 피차가

보급의 공방전으로 발전한 것 같은 현상이며, 적의 양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 쪽도 역시 양으로써 결단코 이것을 쳐부숴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국력을 통틀어서 생산증강으로 바꾸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통감하는 바이나, 조선의 실정을 볼 때 지금 아직도 유휴 노동력이 특히 도시 쪽에 많이 편재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시국 하에 소위 무위도식하는 무리가 한 사람일지라도 현재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할 것이며, 당국은 신속하게 이러한 유휴노동력을 적당한 기관을 설립하여 전조선적으로 엄밀히 조사하여, 중요산업부분에 이들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전력의 비약적인 증강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조사와 노동력의 조정에 유의해 왔으나 조금은 미온적인 경향이었음으로 굳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다.

×

충남 장항읍회 의원 白江重元

제1의견과 같이 거물면장이나 구장에게 철저하게 지도를 시키고 또 영화 등을 일반민중에게 보여서 인식을 시키는 것이다.

×

경기도회 의원 德泉 溶

첫째, 면 직원의 소양을 향상시킬 것.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면직원은 면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면민의 지도자라는 중요한 직원인 것이다.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일반의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면 안 되나,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시국이 바랄만큼의 사무를 처리하고 정신적으로 면민을 지도할 수 있는 자가 적다. 그러므로 만사에 지장이 있으며, 자칫하면 면민의 반감을 일으키는 일이 가끔은 있다.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우나, 우선은 적어도 1면에 2, 3명의 중심인물을 채용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구장의 대우를 개선할 것. 구장은 상의하달과 하정상통 및 관민 간에 중추적인 기관이다. 면민과 일치단결해서 면의 사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지위이며, 면의 여러 시책이 구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방 사무는 구장의 수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면장은 그 진두에 서서 면민을 자신이 인솔하고 있는 군대와 같이 단맞쓴맛을 함께 하고, 항상 친절하고 공평을 내용으로 식량배급이나 필수품의 배급을 하며, 이러한 지도나 보좌를 한다면 일반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서 불평불만 없이 서로 신애(信愛)와 협력을 하여 전선의 장병의 싸움과 후방국민의 작용이 상호작용하여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성전완승을 향하여 매진할 때는 전쟁목적을 달성하는데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

평남도회 의원 平沼 憲

반도인에게 근로정신을 철저하게 함양시킬 것.

이제야 대동아전쟁 결전 한가운데에 있으며, 세계전사상 미쳐 유례가 없는 경우에 다다른 오늘날, 반도인 중에는 아직도 후방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쓸데없이 먹고 놀며, 어쩌면 도박, 극장, 화류계 같은 곳의 출입을 일삼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짹이 없다. 참으로 시국의 인식이 모자란다 해도 도가 지나치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유한(遊閑)자를 농촌의 식량증산이나 군

수품공장에 공출하여 노동자의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전력증강과 전시생활의 안정을 기도하는 것은 시국이 휩박한 현재 가장 국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황해도 황주읍회 의원 金城秀松

1. 중앙당국에서 말단정치, 경제부면의 사찰지도를 꼭할 것.
2. 부, 읍, 면의 각 구에 협의회와 같은 시설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것.
3. 각 애국반장의 연성강화.
4. 군 농회, 금융조합, 산업조합 등에서 금비(金肥)배급과 같은 사무를 통합 정리.
5. 거래의 공정화를 기하거나 공출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비부면의 배급량증가(주로 생명필수품 중에서 양곡).
6. 공출관념을 고쳐서, 국토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나라에 받치는 정신의 함양.
7. 미, 영은 박애의 가면을 쓰고 기독교를 선교하며, 문화시설을 표면 간판으로 하면서 뒷면에서는 선교사는 정치, 경제, 군사 각 방면에 걸쳐 자신의 나라의 스파이행위를 굳이 하면서 기회를 틈타고 침략 행위로써 동양 여러 나라를 예속시키고 착취적인 정치를 해 온 사례, 지난 해 평북 선천군의 선교사가 사과 1개를 아이가 땀으로써 사적으로 극형을 준 사례를 넣은 영화를 만들어서 미, 영국인을 중요하는 생각을 깊게 할 것.
8. 미 영국인을 숭배하는 기독교 교사 등을 우대하면서 전직(轉職)을 시켜, 기도교회당은 연성도장, 기타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
9. 전력증강은 인적인 자원증강과 생산 확장에 있으며, 생산 증강에는 국민개로(皆勞)의 실적을 올릴 필요가 있으며, 요즘 양곡이나 기타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듯한 데에서 종래에 노무생활을 해 왔던 자들이 양곡 1밀5되를 자전거에 싣고 암거래 상인이 되어 하루 10원이나 5원 수입을 쉽게 얻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때문에 각 애국반장에게 반원의 근로부(簿)를 직업별로 비치케 하여 매일 각 일터의 봉사유무를 조사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암 거래상을 하루 하고는 3일이나 4일간 놀고먹는 비국민에게는 읍, 면장에 보고하여 벌칙으로 양곡조합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일을 실시할 것.
10. 전시생활 확립으로서는,
 - (가) 혼인하는데 공회당에서 서양풍의 결혼식을 금지하고 그 비용은 1년간의 전 수입의 3할 이내로 한다.
 - (나) 장례식은 3일 이내에 매장이나 화장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3백 원을 초과 않기로 한다.
 - (다) 제사, 회갑연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것을 금지할 것.

×

목포부회

대동아전쟁의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전시생활을 확립함으로써 필승신념을 양양하기 위해서는 대동아 전쟁의 참 뜻을 체득하고 미, 영의 격멸신념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각자가 완벽의 방도를 수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신념의 파악 방책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자 한다.

1. 대조(大詔)봉답가(奉答歌)(또는 봉답서사)의 제정.

대동아전쟁의 참 뜻을 체득하고 항상 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대조(大詔)봉답가(奉答歌)(또는 봉답서사)를 제정하여, 일반 여러 모임에서 대조를 봉독한 뒤 이것을 제창시킴으로써 필승신념을 상기 시킬 것.

2. 유휴노동자의 징용제 실시.

전력증강을 꾀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통틀어 국가가 요청하는 방도에 응할 것이 긴요함으로, 현재 인적자원의 고갈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휴자의 징용제를 실시하여 생산력 증강에 도움을 줄 것.

3. 의복의 통일화.

위용을 바르게 하며, 나아가서는 외관으로부터 정신 긴장을 꾀하고, 또한 물자의 절약과 여러 동작의 편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비상체제하에서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옷을 만드는 데에 통제를 가하여 천이나 기장, 염색 등을 몇 가지에 한정함과 동시에, 항상 일반국민에게는 남자는 국민복 또는 경장(輕裝), 여자는 통소매에 “몸폐”를 항상 쓰게 하여, 항상 정신의 앙양, 활동의 민첩을 꾀할 것.

×

합남 함홍부회

1. 적개심의 앙양.

생사의 분기점인 이 결전에 즈음하여, 국민 특히 반도민중에게 어느 정도의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바로 본 문제검토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써, 되도록이면 지방지도력을 갖는 반도의 지도자 협력을 구하여 이것의 침투를 도모하고, 귀축(鬼畜) 미, 영의 잔인성을 유감없이 폭로하여 적개심을 앙양할 필요가 있다.

2. 전력증강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간소화.

전쟁은 바야흐로 참으로 처참가열을 극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관민이 참으로 긴장을 높여 나가고 있는 때에, 전력증강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재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점점 강조하고 실천하는 외에 달리 좋은 대책이 없으나, 그 시책이 여러 가지 다양하나 이것에 따르는 여러 행사가 너무 많아지나친 것은 지방민중이 안심하고 생산과 저축에 매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러한 각종 행사를 상당히 축소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

3. 결전생활의 간소화에 더 한층 노력을 할 것.

결전생활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생활의 간소화, 생산증강, 암거래의 배격, 저축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도,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이탈자를 모두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철저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4. 본 대회의 결의를 빠짐없이 전조선에 보급하고 그것의 철저한 실천을 도모할 것.

종래에는 자칫하면 각종 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인데 실천하지 않고 끝내며, 대체로 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시국하에 본 대회의 결의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는 것으로써, 빠짐없이 보급철저를 꾀하는 일이 긴요하다.

×

통영읍회 의원 諸岡泰彥

세계평화의 교란자인 귀축 미, 영을 타도하여 동아10억 대중을 구출하는 도의적인 전쟁, 즉 성전인 것이 스스로 알려지게 되면, 필승신념의 양양은 물론, 전력증강을 할 때 생활의 확립 같은 것은 스스로 철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 및 이유는 제1의제의 제안과 마찬가지임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

함남 북청읍회 의원 金本祐屹

1. 필승신념의 양양.
 - 1) 시국강화(講話), 전국(戰局)의 속보.
 - 2) 지도계급의 지방순회좌담회.
 - 3) 매월1회의 필승기원제 집행.
 - 4) 매월의 대조(大詔)봉대일(奉戴日)행사의 확충강화.
2. 전력증강의 강화철저.
 - 1)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인적자원의 확보.
 - 2) 금속종류의 철저한 회수.
 - 3) 식량증산.
 - 4) 유휴잉여 노동력의 전시산업으로 예의 적극적인 동원.
 - 5) 저축의식의 양양.
3. 전시생활의 기준지시의 철저.
 - 1) 물자절약, 애호.
 - 2) 암 거래의 근절.
 - 3) 배급기구의 완비.
 - 4) 전시최저생활기준의 지시철저.
 - 5) 애국반활동조직의 합리화.
 - 6) 지도계급의 자숙수범.
 - 7) 최대한도의 저축실시.
 - 8) 전시생활의 모범부락 및 모범가정의 표창.

×

경기도 안성읍회 의원 松井秀浩

1. 필승신념의 양양.“일본은 신국(神國)이다”라고 하는 3천년의 빛나는 역사를 대중에게 납득시켜 원나라, 일청, 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사실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신국(神國)절대불멸의 관념을 침투하게 하는 강연과 부락별의 좌담회를 개최할 것.
2. 귀축(鬼畜) 미, 영에 대한 적개심양양.

귀축 미, 영에 대한 적개심의 급속한 양양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즉 “앵글로색슨”민족의 유래, 세계 특히 동아침략의 이면에 숨어 있는 수많은 죄악과 잔인성을 역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영화화, 강연회, 이동극단, 종이연극 등을 통하여 농민대중에게 널리 알릴 것.

3. 전력증강.

국민개로(皆勞)정신의 계발과 배양에 노력하며, 노동능력을 끌어올리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놀고먹는 계급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도를 강구하며, 농산촌의 증산전사의 근로현공장(顯功章)의 수여를 부지런히 하는 등 “상재전장(常在戰場)”의 결의를 촉구하고, 집단근로의 권장에 적절한 방책을 강구할 것.

4. 전시생활의 확립.

결전국민의 생활양식은 부자유가 원칙이 되는 것으로써 부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는 자는 후방의 죄악이 되는 사유를 강조하며 사치생활 특히 부인계급의 생활도의를 양양하고, 마음가짐이 잘못된데 대한 도덕적인 제재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생활필수품의 배급을 공평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상공업자의 정리와 편재(偏在)를 시정해서,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경제사법의 벌칙과중을 단행하여 폐품의 재생활용은 대용품의 발명이나 이용가정 등을 조사하고 선정하여 권장하는 방책을 강구할 것.

×

황해도 연안읍회 의원 長城圭亮

1. 관리의 도리 확립에 강력하게 철저를 기할 것.

2. 부정비(不整備)배급기구를 급히 정비할 것.

오늘날 대도회는 말할 것도 없이 지방의 작은 읍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부녀자들은 일용생활품을 사기 위하여 날 새는 줄도 모르나, 이러한 물건은 쉽게 구할 수가 없으며, 자연히 줄지어서 사거나 정실거래 도는 암거래가 이루어지며, 임산부가 비를 맞거나 더위가 심한 속에서 몇 시간 서서 기다리거나 해서도 구할 수 없는 예는 결단코 건전한 전시생활의 모습이 아니다. 식료품의 종류가 특히 심하다. 적은 물건을 고루 나누는 조직을 급히 정비하여 이들 부녀자들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과 노력(勞力)을 군수(軍需)나 기타 생산증강 쪽으로 또는 건전한 가정의 일에 전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3. 군인원호사업을 통일하여 그의 강화를 도모할 것.

현재 그러한 사업에 관계하거나 또는 원조하는 자들은 군인원호회, 지원병후원회, 해군협회, 대일본부인회, 충력연맹, 사회사업협회 등이 있으나, 이러한 것이 각각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부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1선의 읍, 면에 이르면 이러한 것들이 서로 중복을 가져와서, 같은 내용의 통첩이 4개나 5개도 동시에 하달된다고 하는 일은 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육군의 징병제도, 해군의 지원병제도의 실시에 따라, 내용과 명칭이 고쳐질 것으로 추측되나, 동시에 이들을 통일해서,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통제 있는 조직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4. 유흥방면의 정화와 여행자의 숙정(肅正)을 철저하게 할 것.

5. 병기현납과 홀병사업의 촉진을 도모할 것.

×

원산부회 의원 湖山祚鳳

1. 정회(町會) 또는 부락회제도를 강화하여, 정민 또는 부락민의 전시생활 결전화에 긴밀한 진두지휘를 취하게 하고자 한다.

제도강화가 필요한 이유.

1) 정회(町會)장 또는 부락회장의 입선(入選) 여하는 직접 지도훈련에 엄청난 영향이 있으며, 제도의 강화로 인선상 효과가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도시의 정회는 곳에 따라서는 하나의 정회가 수천 호에 도달하는 곳이 있으며 정회(町會)장 외에 임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앞과 마찬가지로 한다.

3) 민중의 지도와 훈련은 세밀하게 긴밀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서로 접하는 정회 또는 부락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한다.

2. 국민학교를 총동원하여 모자회를 한층 활발하게 하고, 부녀자의 교양의 일익(一翼)이 되게 한다.

1) 모자회는 부형, 모자회원 중 유지자로 하여금 협력하게 한다.

2) 모자회는 상례회로 매월 한번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충남 예산읍회 의원 成井觀永

1. 적개심의 양양.

적(敵) 미, 영의 식민지정책을 규명하고, 그들의 동아에서 백년의 죄악을 폭로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비인도적인가 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귀축(鬼畜)과 같은 것인가를 알려서, 민중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양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국체의 본의(本義)를 철저하게 한다.

3. 자동적 지도.

전력증강은 물론, 전시생활의 확립을 더한층 심화시키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 타동적보다도 자동적 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중요성을 스스로 통감하여, 몸을 받쳐서 전력증강에 진력하며 전시 생활의 재편성을 단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구장과 부락이사장의 분리.

민중과 직접 접촉하고 최전선의 부락장이라고 말할 구장을, 그러한 사람을 얻는 것은 면 행정상 면장에 그러한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그 사람 여하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책무와 아울러 부락민에 대한 세력이 너무 커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결국 구장이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읍, 면 또는 부, 군 기타에서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폐단도 많으며 상의가 하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그들 속의 많은 사람이 부락에서 제1인자가 아닌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총력운동이 애국적인 운동이며, 총력연맹이 내지의 요쿠상카이(翼贊會)와 뜻을 달리하는 순수한 애국적인 단체이며, 또한 현재 애국반장에 우수한 인물이 많으며 명예직이면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부락이사장은 이것을 명예직과 같은 부락 중의 제1인자를 추천하여, 통틀어 구장과 회의제를 채택한다면,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의 배급은 물론, 공출 등에도 적정을 기할 수 있으며, 전력증강 상에

도, 전시생활의 확립에도, 또는 더한층 심화 철저 시킬 수 있는 데에도 주효함이 적지 않다고 우고(愚考)한다.

×

충남 예산읍회 의원 藤丸友吉

1. 금속류의 공출에 공직자의 협력방법의 건.

철, 구리를 비롯하여 전시에 불가결한 금속류는 아직도 가정에 남아 있다고 생각되나, 종전에는 부, 군, 면, 경찰 등의 당국자 및 총력연맹이사장, 애국반장 등이 공출의 독려를 맡는 외에, 공직자가 이것을 협력한 사례는 예산지방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부, 읍, 면 등 지역 단위로 의원 면협의회원, 학교와 조합의원 등 전부가 협력하여 각 가정을 빠짐없이 방문, 금속공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본건은 감독관청으로부터 각 공직자에게 실행을 종용하도록, 대회에서 총독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전쟁 기원제 집행의 건.

오는 10월 8일의 대조(大詔)봉대일(奉戴日)을 기하여, 이번에 공직자대회 출석자 주창 아래에 전조선의 부, 군, 도(島)의 각 공직자가 발기인이 되어, 각 관공서와 학교단체 및 애국반원을 전부 망라하여, 부청, 군청, 도청(島廳)소재지의 신사에서, 성전의 완승, 황군의 무운장구, 전몰영령위령제 및 기원제를 대대적으로 집행하고, 적 미, 영 격멸의 기세에 박차를 가하도록, 대회에서 결의하기 바란다.

×

경성부회 의원 山中大吉

오늘 시행하고 있는 모든 단련을, 전력증강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실제화할 것, 이러한 필승신념을 스스로 체득하고 전시생활을 여실히 하는 사유이다.

종래 의미의 단련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들은 대동아전쟁이 시작한 이래 이미 2년, 이 사이에 단련을 계속해 왔으며, 이후는 실전적으로 관여함으로서 단련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단련을 위한 단련이 아니고, 전쟁을 위한 단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학도는 싸우러, 직장에서 총후의 남녀는 싸우러, 공장으로 논밭으로.

×

전남도회 의원 高島在渭

1. 읍장은 대체로 주임(奏任)대우를 받고 있으나 면장은 장기근속으로 상당히 볼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퇴직의 경우 명예적으로 주임(奏任)대우를 줄 만한 위치이며, 재직 중에 이러한 대우를 받는 자가 적음으로써, 이러한 자들에게는 읍장과 마찬가지 취급을 하여, 주임대우를 주었으면 한다. 또 읍 면장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지난번에 급호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대우 개선상 참으로 시의에 맞는 조치로 경의를 표할 만 하지만, 이때에 읍면 이원(吏員)의 급료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급호봉제의 실시를 희망한다.

2. 결전연속의 시국하에 있는 국민의 전시의식양양과 전시생활의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재사범의 적발에 전력을 기우려 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윤추구, 암거래의 완전봉쇄와 동시에, 물자배급 루트상의 생활필수품의 행방불명과 같은 것을 철저하게 규명함으로써 후방국민의 명랑생활에, 전폭적인 활약을

시험하는 방법으로서, 종래의 관 주도적인 단속을 한층 협조하기 위하여, 일반민중의 실정을 알리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내탐하는 사찰원을 위촉해서, 더욱더 그 본질을 발휘하도록 선처하시기 간절히 바란다.

×

충남 온양읍회 의원 中畠武男

제1의제와 관련하는 것임. 양 의제 철저의 획을 긋는 것은 공직자의 징용에 있다.

2천5백만 동포의 총궐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라고 이름이 붙는 일체의 공직자를 필요에 따라, 곳에 따라 징용함. 이로써 읍면부락의 세포분자의 지도를 맡게 할 때는 지방의 공직자다운 신망과 수완 그리고 지식의 활용으로, 그 활동여하는 즉시 필승신념의 앙양과 전력증강도, 전시생활의 확립도 당국의 시책과 아울러 크게 기여하고 공헌할 것이다. 공직자의 징용이야 말로 이것을 확립하는데 더한 층 심화를 철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

경성부회 의원 伊藤奉圭

1. 공동운명관의 확립.

2. 필승신념의 앙양.

(가) 황군의 정강(精強)함은 세계에 유례가 없으며 일기(一騎)당천(當千)의 용맹은 물질편중의 미, 영군을 잘도 격파할 수 있으며, 작전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황군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 아울러 전쟁초기 아래 혁혁한 전과를 완전히 알도록 철저하게 시킨다.

(나) 자원을 갖지 않는 국가라고 불린 것은 대동아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점령한 공영권 내의 각지에 자원이 풍부하며 다채(多彩)한 것은 대체로 “가진 나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풍부한 내용을 넣어서 영화 같은 것을 통하여 소개를 할 것.

(다) 적 쪽의 약점 즉 반 추축국의 행동불일치,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의 치명적인 전쟁수행능력의 부족과 계속되는 패전에 따른 적국내의 여론의 비등, 전쟁자재의 결핍에 따른 고통, 황군의 정신력에 압도되어서 전쟁 공포병에 걸린 적의 군영(軍營) 등의 상황을 폭로할 것.

(라) 대동아공영권 산하 여러 나라의 맹주인 일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끝까지 일본과 협력하여 대동아전쟁을 이겨 내고자 하는 현상을 인식시킬 것.

3. 전력증강.

(가) 종래에 반도인은 오로지 피지도자의 입장에서 나쁜 상태가 계속되어 왔으나, 내선일체화의 구현으로 균등하게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다운 긍지를 파악시켜서 자발적으로 생산으로의 창의 연구 또는 생산적인 근로의 배가(倍加) 등을 획책할 것.

(나) 국민학교의 교육비를 내지와 마찬가지로 국고부담으로 하며, 정신교육에 중점을 둘 것.

(다) 생산자의 노력에 충분히 보답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현재 가끔 볼 수 있는 중간 착취 통로 기관을 정리 통합하여, 생산자에 대한 그들의 생산증가에 지장이 없도록 할 정도의 보수를 얻게 하며,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행정조치의 불합리에 대한 애로를 타개할 것. 예를 들면 기업의 기획에 대

한 행정당국의 허가여부의 견해가 국과 과에 따라서 구구하며, 조령모개로써 기업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사례가 없다고 하지 못하며, 그러한 것은 법령이나 직능 등에 구애받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나 전력증강이라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스스로 해결될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4. 전시생활의 확립.

(가) 전시생활의 관념 확립

(나) 지도자의 솔선수범.

(다) 전시생활전(展), 강연회개최.

(라) 전시생활을 저해하는 암거래 기타 모든 불법행위를 막고 금지할 것.

(마) 전시생활 실천자의 추천과 칭찬.

×

경북 안동읍회 의원 三達正武

1. 국체본의의 명확한 징표와 성전 목적의 소재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신사참배의 독려와 국어 상용의 강화를 도모할 것.
2. 국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혁혁한 전쟁역사, 특히 국난을 맞이하여 지난날 국민의 절개를 강술하고 파악시키는 방법을 세울 것.
3. 지도계급층, 특히 관공리의 상부가 철저한 기강의 진작을 도모하며, 지행(知行)일치의 열매를 수렴하게 할 것.

×

경북 안동읍회 의원 松下嘉次郎

1. 당연히 반도에 정용의 운용을 강화하고, 도, 읍의 유휴의 지노력(智勞力)을 가진 남녀를 불문하고 각각 그들에게 적합한 일을 주며, 군수제품생산, 식량 기타 전력증강, 국방의 완벽에 운용함으로써 한 사람의 유한자가 없도록 하게 하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2. 전시의 식량은 안정되고 있다고 해도, 특히 청소년의 발육이 왕성한 특수성과,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국방상의 지위를 중시해서 특별한 고려를 통감한다.

×

경남 진주부회 의원 富士山隆盛

국민총력정동리연맹에 지도원 설치

종래 국민총력정동연맹 및 대일본부인 정동리분회에서 각각 그 지도를 맡으며,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아직도 철저하지 못함이 있음으로써, 각 정(町), 동리연맹 및 부인층 중에서 신망이 있고 또한 열의가 있는 자에게 연성강습을 시켜서, 항상 지도하며, 개개인에 대해서는 취지의 철저를 도모하고, 수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정(町), 동,리 단위로 성적을 참작하여 표창함으로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평북도회 의원 黃原觀河

1. 대동아전쟁 필승가 창정(倉定)의 건.

2. 국민개로(皆勞)의 철저화.

3.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 국민의 생활을 하여금 무장화가 되도록 피할 것.

×

대구부회

의례준칙을 결전 하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것을 확실하게 철저를 기할 것.

요지. 앞서 의례준칙의 발포를 보았으나, 현재 결전시국을 감안하여 아직도 더 많은 간소화가 필요하다. 즉 혼례식과 같이 일률적으로 신전(神前)결혼식을 권장하고 신사(神社)나 신사(神祠)가 없는 지방은 반도 고래의식에 의할 것), 물자절약 및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조상의 제사는 간소함을 내용으로 정신적으로 치르며, 장례는 매장을 폐지하고 화장으로 고치는 등, 극력 낭비의 배제에 힘쓰므로써 전력증강의 목적달성을 도움을 줄 것.

×

함남 영홍읍회 의원 小室千代吉

본안도 제1의안과 통합하여, 조직되는 위원에 의하여 인식을 더욱더 새로이 하는 일에 노력하며, 전력증강을 위해 중산에 매진하며 전시생활의 각 가정의 사정에 맞추어, 창의확립에 노력하도록 지도와 유세를 위해 노력하는데 있다.

×

황해도 황주읍회 의원 井上改平

1. 영화회나 강연회 또는 인쇄물의 반포로, 대동아전의 현 단계가 이미 우리나라가 필승불패의 태세를 확립하고, 미, 영은 점차적으로 초조의 몸부림을 시작했으며 귀축의 악성을 폭로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 반격에 들어 간 실정을 민중에게 알려 줄 것.

2. 대동아전이 동아 10억 민족의 흥옹(興隆)이나 멸망인가 하는 기로에 선 성전(聖戰)이라는 것, 그러나 화해나 타협의 길이 없는 결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방법을 강구할 것.

3. 행정기구의 밀단에서 관공리의, 공인으로서의 도의관념을 한층 양양시키고, 공정한 선정을 베풂으로써 민중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신뢰의 신념을 깊게 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채택하고자 본 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국에 진언할 것.

4. 시국을 인식하지 않고 대동아전을 강 건너 화재와 같이 보는 태도로 있는 유식계급자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도를 가하도록 당국에 요망할 것.

×

전남 순천읍회 의원 凑 京吉

金光相洙

1. 필승신념의 양양에 관한 건.

(가) 국민학교 교육의 심화(深化)철저에 의한 방책.

(나) 청소년 교육의 강화에 의한 방책.

(다) 국체본의의 투철에 의한 방책.

2. 전력증강에 관한 건.

(가) 인적 자원조정에 의한 방책.

종래에 조선의 중류 이상의 생활자 중에는 비교적으로 근로정신이 빈약하며, 육체노동을 싫어하고 오늘날 아직 이들 계급자 중에는 잉여 노동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유휴자의 동원을 실시하여 적당한 생산부문에 취업을 시켜서 한층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나) 종래에 조선에서는 도읍(都邑) 및 농산어촌에서 제1선 노무조정 계획의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도읍지에서는 제조공업, 농산어촌에서는 농산과 임산, 해산물의 생산부문에서 각각 인적자원의 배치에 원활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증강과 생산 확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적지 않았던 현상에 비추어, 이러한 때에 본부(本府) 및 도, 부, 군, 도(島), 읍, 면에서 관련성이 있는 노무조정기관을 설치하여, 각각 관내에서 적당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특히 읍, 면에서는 읍, 면 당국과 경찰 쪽에서, 총력 연맹이나 해당업자 측 등을 망라하여 연락협의회를 조직하고 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증강과 생산 확충의 부문에 매진하게 할 것.

3. 전시생활 확립에 관한 건.

(가) 단체훈련 강화에 의한 방책.

(나) 의식주의 결전체제 강화에 의한 방책.

(다) 일반생활부면의 개선에 의한 방책.

국어생활의 강화이행 및 근로애호정신의 강화 등으로 전시생활의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

×

함남 영홍읍회 의원 李家昇龍

(가) 생활개선 및 후방국민의 정신(挺身)태도의 강화.

(나) 농촌의 식량증산의 열의(熱意)환기(喚起).

(다) 식량증산의 정신대를 조직.

×

강원도회 의원 高山載東

조선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을 감안하여, 후방의 각종 생산의 증강이야말로 그들의 최대사명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노무자는 항상 식량에 고통을 받으며 모처럼의 노동력도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며, 근래에 관현에서도 주요 식량의 증산에 노력하고 있음으로써 식량증산은 기대해 볼 것이며, 이렇게 증산이 된 식량은 일반민중에게는 한동안 참게하고 제1차적으로 노무자에게 배당함으로써 그들의 노동능률을 최고도로 양양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경성부회 의원 茲村定宰

1. 종래 조선에서는 미, 영 등의 악질행위의 사실을 영화, 책자,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하여 인식시킴으로써 더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사실(史實)에 따르는 신의 도움이나 전사(戰史)에 의한 승리의 실상과 전황 및 전쟁의 현단계에 대해서, 국민이 싸워서 이길 때까지 주지(周知)를 철저하게 할 것.

2. 물자절약, 저축, 필요자재의 공출 등 적극적인 장려책.

3. 전시에 적정생활의 물적인 기준을 시급하게 지시하며, 아울러 최저 생활 확보에 관한 시책을 강화.
4. 내선생활양식의 각각 장점을 명확하게 하고, 애국반마다 생활양식의 철저한 개선실시.

×

전북 전주부회 의원 元村炳喜

반도인으로서 한번 예수교 특히 가톨릭교와 같은 것이나 또는 유사단체의 산하에 들어 간 자에게는 쉽게 일본정신을 주입할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내지에서는 일본정신이 소화되어 가고 있으나, 반도에서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들의 수가 아직도 대단히 많음으로 선량한 사상을 파먹는 것이 심함을 걱정한다. 그들은 아직도 지금 미, 영을 숭배한다고는 말하지 않아도, 역시 필승신념이나 전력증강의 기백이 모자라는 느낌이 있으며, 거듭 미, 영 격멸의 결의를 새로이 하는 데는 이들의 계몽운동도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믿는다.

×

평북 강계읍회 의원 香山承洙

전력증강은 증산운동으로써 시작된다.

1. 광공업의 확충.

(가) 광산의 채굴은 국가에서 계통적으로 과학적인 채광을 할 것.
(나) 공업조선에는 원료, 동력과 노동력이 풍부하게 있으며, 지금 조선 내에서 상당 정도 공업이 발흥되어 가고 있으나, 정밀공업, 기계공업 등은 아직도 설비되어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며, 내지의 이러한 공장을 조선에 이전하여 대륙의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고, 또한 운반을 쉽게 하여 생산비의 경감을 꾀하며 공업발전에 완벽을 기할 것.

(다) 농업의 기계화.

영농방법은 구태의연하여, 노동력을 혹사함으로써 증산에 힘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빠짐없이 기계력을 이용하고, 큰 규모의 근대적인 농업경영의 실현이 필요하다. 농업영단을 만들고, 농지를 매수 또는 차입하여 농업을 실시하며, 국가가 요청하는 농작물에 힘써야 할 것이며, 좁은 지역이나 농지정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곳은 잠시 두고, 평탄한 곳은 특히 수리조합구역부터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이다.

2. 농지확장.

(가) 간석지개척.

(나) 산지의 평탄부를 개간하여 숙전(熟田)화 할 것.

3. 노동력의 정비.

조선은 인구의 8할이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기계화로 생긴 능력을 다른 생산사업에 전용할 것.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전부 이들을 징용하여 연성을 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산업방면에 봉사시키도록 할 것.

4. 전시생활의 확립.

1) 옷은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빼(일바지)”를 착용하고, 집에 있는 일본옷은 긴 팔을 폐지하고, 조선 옷은 긴 고름을 폐지하며, 또 중류 이상의 사람은 옷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나, 중류 이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든 옷은 이들에게 우선 배급하도록 할 것.

- 2) 식습관의 개정, 빵, 죽을 주로 하며 밥은 그 다음으로 한다.
- 3) 주택은 위생, 방공설비를 충분히 하고, 보온 연료는 무연탄 또는 연탄을 쓰도록 설비할 것.

국가사업으로서는,

- 국민복의 여자의 뒷을 제정하여, 이것에 사용하는 천을 배급할 것.
- 식량영단으로 하여금 건빵을 제조하게 해서 이것을 일반민수용에 충당할 것.
- 표준주택의 제정, 국영주택의 건설.
- 공동취사, 탁아소의 보편화.
- 후생시설 특히 의료기관의 보급.

×

전남 광주읍회 의원 岩橋朝一

1. 부, 읍, 면에서 대동아전쟁의 발전현황을 도면으로써 상세하게 표시하여, 우리 접경지역과 공영권의 각자 관계의 밀접한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하고, 또 하나하나를 쫓아서 전쟁의 발전상황의 추가정보를 그림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숫자의 게시판을 특설해서 이러한 것을 두루 알리도록 꾀할 것.
2. 부, 읍, 면 및 부락 상회(常會)에서는 앞에 적은 취지 아래 각 관계 공무원을 상회에 파견하여 도면으로써 이것을 설명하고 주지 방법을 모색할 것.

1) 애국반지도

종래에 애국반의 지도는 실제적으로 그 부락연맹 이사장인 구장직에 있는 자가 이를 지도했으나, 구장은 읍, 면행정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애국반과 지도를 하는데 너무나 시간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 이사장은 다만 읍, 면 이사장으로부터 전해 오는 사항을 반장에게 전할 뿐으로, 그 실행에 대해서는 또한 철저하지 못한 느낌이 크게 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입으로 전하며 행동을 하지 않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며, 이래서는 전시에 맞추지 못하는 일이 역시 크다. 그래서 부락유식자로 조직한 애국반지도원을 설치할 필요가 생긴다. 즉, 유식자로 하여금 그 지도원에 임명하여, 10 내지 20반 정도(또는 5 내제 10반도 됨)의 애국반을 담당시키며, 월 3회 이상 애국반원 전부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전쟁의 현단계에 우리나라가 필승태세임을 설명하고 듣게 하여, 필승신념을 양양하고, 전력증강케하고, 또한 전시생활을 철저하게 할 것.

2) 애국반지도원의 지도.

읍, 면은 월 3회 이상 앞에 말한 지도원을 초집(招集)하여 강습회를 열 것.

3) 도, 군은 앞에 말한 지도원대회를 때때로 열고, 읍, 면의 지도원교양의 도움을 줄 것.

(1) 조선의 민도와 실정을 감안하여, 부, 읍, 면마다 징병후원회(가칭)를 조직하고, 병역기피의 방지, 적령자의 질병치료 및 입영자의 빈곤 가정의 구조 및 본 제도 실시상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하며, 본 제도 실시의 완벽을 다 하기 바란다.

고마우신 성지를 2천5백만 민중에게 침투 철저시키기 위하여,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 경내에 조선징병제실시기념탑의 건설, 또는 8월 1일을 그 기념일로 제정하도록 바란다.

(2) 1면1사(祠)의 조영(造營)을 신속하게 실현시킴과 동시에, 행정말단기관의 확충과 인재양성을 꾀하고, 민중에 대한 지도와 이해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본 의제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강원도회 의원 平沼昶鎬

1. 필승신념을 견지할 것.

대체로 승리의 요체는 필승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유구한 3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일본제국은 1억 국민의 순국의 정신으로, 승리는 제왕의 존엄한 위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철저를 기한다.

2. 전력증강에 힘쓸 것.

대체로 관리와 농민이 모두 그 구별이 없으며, 각각 그 본분을 다하고, 관리정신을 양양하고, 농민혼의 함양에 노력하며, 퇴장되어 있는 물건(특히 놋쇠제품)과 노동력의 공출, 식량증산 등 어느 것이나 전력 증강의 일익을 짚어지고 있다는 영예를 자각시킬 것.

3. 전시생활의 철저를 도모할 것.

소박하고 강건 명랑한 전시생활에 철저하며, 의식주를 최소한도로 절약하여, 여력을 통틀어 성전완수에 봉사시킬 것.

×

함남 신포읍회 의원 西原正雄

1. 생산증강.

전력증강에는 열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원동이 되는 증강은 농업증산이라고 생각이 되며, 농업증강을 주안점으로 제안합니다.

1) 무직유민(遊民)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산업보국단에 차출할 것.

2) 지주(地主)로 하여금 증산의 진두에 직접 서게 하여, 성적이 불량한 소작인에 대해서는 소작권을 지주가 마음대로 이동시키도록 할 것.

3) 농회(農會) 등에 토성(土性)조사기관을 두고, 농민에게 토성에 적합한 비료를 하도록 지도할 것.

4) 내지농민을 많이 이민을 시켜, 조선의 농업을 방치하는 농업으로부터 집약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책을 취하게 할 것.

5) 농산어촌에 등유배급을 원활하게 할 것.

2. 전시생활의 확립.

곡물의 공출을 한층 강조하여, 아이들이 많은 가정과 산업전사가 많은 가정에 양곡을 더 많이 배급했으면 한다.

×

평북 만포읍회 의원 妻木國雄

咸元泰夫

적 미, 영 격멸의 결의를 새로이 하기 위하여 군기(軍機)에 저촉되지 않는 한, 미, 영의 비인도적인

만행(병원선의 폭격과 상이병의 참살 혹은 동경도의 학교를 폭격을 해서 아동을 살상한 것과 같은)을 영화화하여 공개해서 그들의 미워해야 할 귀축(鬼畜)행위를 민중에게 알릴 것.

×

전남도회 의원 木尾良清

1. 먼저 전조선 공직자가 비행기를 현납하는 일.
2. 참가자 전원이 2일 밤에 밤9시경부터 적어도 2, 3시간 혹은 다음날 아침5시까지 8시간 동안 조선 신궁 앞의 대 광장[또는 제전(齊殿)앞)]에서 입은 옷을 입은 채로 와침(臥寢)을 하는 일.

(이유) 여러분은 참으로 난폭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는 모두 유식자들로서 평소에 “일선의 군인을 생각하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논의나 변명은 일체 빼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를 공략하는데 천리를 거의 한 잠도 안 자고 진격했다던지, 오늘 백리 내일 백리 남짓, 한 밤중에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또 곧장 행진이다, 5분간 정도 쉴라치면 앞 사람에 기대어 포개져서 쿨쿨 코고는 소리, 총알이 비 오듯 하는 속에서도 군인들은 잠깐이라도 가로 누우면 최대의 행복의 순간이라고, 이런 일을 생각하면 비행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며, 조용히 걸어가서(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달음박질 쳐서 등산하는 것도 아니며)광장에서 편안이 자는 것쯤은 고맙기 그지 없으며, 잠자지 못했다고 해도 하룻밤 8시간에 불과한 것이고, 모처럼 각지에서 참가한다, 먼저 공무원이 연성을 실행하여 돌아가야 한다. 더욱이 총독각하가 잠깐이라도 임석하신다면 본 대회는 유종의 미를 겪을 것이라고 믿는다.)

×

함남 북청읍회 의원 金澤聖明

마치 햇빛과 공기의 고마움을 감사하는 것처럼, 성은의 넓고 큼과 대동아전쟁이 성전이라는 까닭으로 일본의 전과(戰果)가 대첩이라는 것, 격전이 얼마나 처참가열한가, 이 전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전으로서 귀축(鬼畜)과 같은 적, 미국과 영국을 상처가 없는 곳이 없어 질 때까지 격멸하지 않으면 휴전이나 강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시킬 것. 만약에 비국민에 가까운 무리가 있다면 한편 인식과 이해를 시킴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비상 국책을 반강제적으로 짊어지게 강행해서, 여러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

충남 조치원읍회 의원 田中陣平

전시 최저소비생활규정제정의 건

- (가) 모든 계급에 가장 엄정하고 적절한 소비규정법규를 정할 것.
- (나) 물자 또는 원천적으로 이용과 응용을 제한할 것.
- (다) 모든 운수(運輸)를 제한할 것.

×

부산부회 의원 池田佐忠

국민의 개로(皆勞)를 꾀하고 식량증산에 힘자라는 대로 주력하며, 자각심의 함양에 힘을 쓰며, 물자 절약과 생활개선을 할 것.

×

부산부회 의원 金山浚源

반도인의 결전생활은 민도가 낮은 자에게는 아직 철저하지 못한 느낌이 있으며, 금주와 금연을 이행시키며, 전시생활의 긴축을 단행하고, 저축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사회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전력증강과 필승신념을 양양하도록 지도할 것.

×

부산부회 의원 大潭泰昇

우리가 싸우는 대동아전쟁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성전이며 도덕전이며 건설전이다.

그러므로 적 미, 영은 침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악전이며 파괴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반드시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에게 편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칠생(七生)⁴⁸⁾의 맹서로써 이 성전의 목적달성을 약속하며 또 후방의 우리들로서는 국민개로(皆勞)의 취지를 준봉(遵奉)하며 생산증강을 꾀하고 인고(忍苦)의 생활을 단행하여 암거래를 절멸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한층 심화시키고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방송, 영화, 시가(詩歌) 등을 활용해서 국민의 각오를 새로이 할 필요를 통감한다.

×

경북 포항읍회

현재 매우 미온적인 가창(歌唱)운동을 강화하여, 가창으로서 본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창은 국민의 지기(志氣)를 양양함과 동시에, 국어 습숙(習熟)의 일조(一助)가 되기 때문이다.

×

경남 진영읍회 의원 青柳種吉

吉本正成

필승신념의 양양에 관한 의견.

1. 신령(神靈)에게 필승을 기원. 전조선 2천5백만 민중을 하여금 한사람도 빠짐없이 매월 1일, 15일은 새벽 일찍 가장 가까운 신사에 참배하여 군국(君國)의 안태(安泰)와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게 할 것.
2. 적개심의 양양. 남자는 노동복 또는 국민복에 항상 계에토루⁴⁹⁾를 사용할 것. 여자들도 평복으로 고쳐 입고 평소에 몸뻬를 입음으로써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곧바로 일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결의를 표현하게 할 것.

전력증강에 관한 의견.

미곡증산, 보리파종면적을 줄여서, 대신에 자운영(紫雲英)⁵⁰⁾ 기타 퇴비원료가 되는 씨를 뿌려, 자급

48) 일곱 번 다시 태어나는 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극한.

49) 각반(guetres),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종아리를 감는 것.

50) 퇴비원료, 콩과의 두해살이풀. 잎은 어긋나고 9~11개로 된 깃모양 겹잎이다. 봄에 자줏빛 또는 흰색의 꽃이 산형(繖形) 꽂차례로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이다. 어린잎과 줄기는 식용하거나 사료로 쓴다. 중국이 원산지로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비료증산의 원료가 되게 할 것, 경작면적을 줄여도 결코 보리수확은 줄지 않는다. 오히려 증수하게 된다. 많은 토지를 경작하여 많은 인부를 써서, 평당 2홉이나 3홉의 보리를 수확하기보다, 경작면적을 줄여 평당 1되나 1되 반 이상을 수확하는데 중점을 둘 것.

전시생활 확립에 관한 의견.

1. 식량배급율을 가능한 범위에서 증배함으로써 암거래를 없앨 것.
2. 관호상제 또는 여러 가지 연회를 할 때 혀례의 폐지하거나 제한 등에 대하여 당국이 그 한도를 정해서, 전조선이 일제히 반드시 시행할 것.
3. 시간 지키기. 집합이나 회의 등의 시간을 확실하게 지킴으로써 전시하에 능률증진에 매진할 것.
4. 온돌의 축소 및 개선으로 연료절약.
5. 현옷의 재생, 폐품이용, 물자애호, 쓰지 않는 물건의 현납, 자가 소채나 식량재배의 이행.
6. 이상, 전쟁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라는 기개를 항상 염두에 새겨, 그 절약으로 각 가정이 하루 10전 이상은 반드시 저축하며, 월말에 애국반장을 통하여 적당한 금융기관에 저금할 것.

×

강원도 원주읍회 의원 植原正義

읍, 면에 농회를 설치할 것.

이유. 증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현재 지도기관은 군의 농회직원이 주체가 되고 있으며, 읍과 면은 분구제로 전속직원이 없고, 읍과 면의 직원에게 촉탁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지도는 군의 농회직원이 읍이나 면에 출장할 때, 읍이나 면직원이 안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런 일이 노동력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지도는 자연히 간접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읍이나 면은 행정밀단기관으로서 생산 공출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욱더 사무가 폭주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읍이나 면에 농회를 설치하여 이것을 완화함과 동시에 생산 지도는 직접 핵심에게 담당케 하여, 군 농회는 단순히 읍내를 통합 감독하는 데만 그칠 때, 증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

강원도 평강읍회 의원 島田秀一

1. 귀축(鬼畜) 미, 영 격멸의 결의를 새로이 하고, 조선에서 필승신념을 양양하기 위해서는, 현행 애국반상회를 애국반 미, 영 격멸회생략하여 애국반 적격회(敵擊會)로 개칭함으로써 적격(敵擊)의 기백을 실제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진충(盡忠)일본정신을 더욱 연성하고, 쏘고야 말겠다는 기백을 실제로 발휘시키고, 이것을 각 일터에서 공익을 우선해서 실천시킬 것. 또 현재 부진한 국어 상용을 가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2. 전력증강에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을지라도, 전쟁의 승리에 직접 관련하지 않는 불요불급의 부문의 기업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생긴 노동력과 도읍의 항간에서 유한 노동력을 강력한 법적인 정비를 해서, 먼저 군수식량의 생산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전력증강을 하는 외에 농촌에서 경지면적을 안배하여 가장 이상적인 농촌을 경영하도록 했으면 한다.

×

경성부회 의원 朝野晴義

1. 식량적정량의 확보.

특히 농촌식량의 적정량 확보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2. 일상생활필수품 배급의 적정화.

3. 호화사치를 삼갈 것.

4. 수송력을 원활하게 하라.

철도 1, 2등은 불필요, 침대차도 불필요, 좌석을 많이 살려서 여객의 수송능력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수송능력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면 식량이 적정하게 배급이 실시되면 가까운 거리의 여객은 엄청나게 반감할 것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5. 암 거래의 근절을 요망한다.

그 근절에는 먼저 무엇보다 적정한 배급이며 적당량의 확보다. 그래도 근절할 수 없다면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를 한다든지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

경성부회 의원 山口友造

1. 당연히 후생보건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략) 조선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각도의 식량생산고는 각 도마다 달리 하고 있는 현황이다.

요는 어떤 도는 보리, 콩, 어떤 도는 쌀, 기타의 도는 잡곡이나 야채류와 같은 형편이다. 이러한 것을 각 도가 제멋대로 확보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래서는 각 도 간에 교환 또는 교류의 원활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반도국민의 평균된 영양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국의 도의 식량배급은 한 집안과 마찬가지로 각종의 식량품을 공평하게 배급되기를 바라고 싶다.

그래서 예산비목(費目)에 후생보건비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설치할 것을 결론으로서 제창하는 바이다.

×

전라북도 남원읍회 의원 國定 豊

1. 전조선 공직자의 분발을 촉구하며 조직적인 체형(體形)아래에, 일반민중의 지도와 계몽에 수범을 하게 할 것. 이번 공직자대회를 단순한 일시적인 회합으로 그치게 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전조선 공직자를 맹라한 조직적인 단체를 이루며, 명칭을 신도(臣道)실천대, 또는 결전실행대(가칭)라고 하고, 중앙으로부터 끊임없는 적절한 시책을 연구하여, 그 자료를 각도, 부, 읍, 면의 공직을 통하여 산간벽지 방방곡곡에 이것의 심화와 철저를 꾀하는 것은, 오늘날 정세에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

충북도회 의원 三井奭熙

1. 필승신념의 양양.

1) 사생활에 있어서의 경신(敬神)생활의 순치(馴致).

(가) 신단(神壇)배례(拜禮)와 만민의 죄를 사(謝)하는 축사(大祓詞) 주상(奏上)의 보급.

(나) 궁성요배의 철저.

2) 구체적인 강연회의 보편화 강행.

- 3) 전진 훈(戰陣訓) 낭송의 보급철저.
- (가) 각 일터(관공서, 공장, 회사)에서의 낭송회.
- (나) 총력연맹관계 여러 모임에서의 낭독 강행. 총력연맹관계의 크고 작은 회합의 첫머리 국민의례 다음에 이것을 한다.
2. 전력증강.
- 1) 감투(敢鬪)의식 강화철저.
- 2) 체력향상 시책.
- 3) 기능연마.
- 무위도식하는 무리는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징용제를 더욱 엄하게 하여, 황국의 소요부분에 배치해서 각 분야의 노무를 맡게 하여, 기능연마의 기회를 삼게 한다.
- 4) 국방담당 실력의 철저.
- 나의 하늘은 내 힘으로 방위할 수밖에 없다, 즉 부녀자에게 맡긴 곳이 적지 않으며, 전원이 담당하여 총력결집의 철저를 다할 필요가 있다.
- 5) 총력연맹활동의 강화의 실제화.
- 총력연맹의 활동이 아직도 멀어서, 철저하게 박력을 내고 실제적인 활동이 되게 할 것.
3. 전시생활의 확립.
- 1) 자원애호와 회수의 철저.
- 2) 의(衣)생활의 간소화.
- 3) 식생활.
- (가) 영양본위로 사치의 배격.
- (나) 가족이 단란하게 회식함을 필연으로 하고 외식금지.
- (다) 기호식품의 편식과 포식금지.
- 설탕, 후추, 마늘섭취의 절약(경작면적의 한정).
- (라) 음식점과 주점의 개업제한.
- (마) 음식 찌꺼기 억제, 잉여재생이용 강조.
- (바) 식품의 자급조제 강조.
- (사)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 곳에는 도시락을 지참하는 관행.
- 4) 주택
- 간소하고 단순함을 내용으로 건축제한의 규격화와 내구력을 유지.
- 5) 사교적인 회합이나 향응은 단호하게 억제.
- 6) 배급통제의 원활화 강화.
- 생활필수물자의 배급 엄격통제와 공평을 강행하고 편향과 경중을 억지.

×

경남 거창군 菊田鏞禧
大山重穆

1. 전쟁을 완수하는데 국민조직의 근원을 이루는 부락연맹의 활용과 강화를 꾀할 것.
2. 부인들의 교양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

경북도회 의원 金田龍周

1. 대동아전쟁의 목적과 목표 및 전국의 추이를 일반민중에게 널리 알려서, 이것을 이겨내는데 결심을 굳힐 것.

매일신보에 매주 1회, 백만 부 정도의 언문과 한자가 섞인 주보를 발행하여, 미국, 영국, 화란의 과거 수백 년 동안의 동아침략의 실정 및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약소 전폐국의 참담한 말로와, 때때로 전국 추이에 따른 후방국민의 중산 및 공출과 기타 이것의 나아가는 방향을 명시해서, 죽어도 이겨낸다는 결심을 굳게 하여야 한다.

2. 생활개선과 폐습타파를 총력연맹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실천시킴으로써, 노동력과 물자 양면의 전력증강과 전시생활의 확립을 꾀할 것.

반도 2천5백만의 반수가 되는 부녀자의 생산방면 활동을 내지의 그것과 비교할 때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반도 부녀자들은 바깥 노동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단정이 되나, 이것은 그 실정을 설명하지 못함이 심한 것으로, 실제는 반도농촌의 부녀자는 노동량과 시간에서 남자의 몇 배나 된다, 그 노동력을 소비하는 것은 첫째는 식사의 복잡함과 관혼상제 등 의식의 폐습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의복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것의 개선하는 구체안으로서,

- (가) 식사할 때 개인상을 폐지, 한 집안이 같이 앉아서 같은 상으로, 밥짓기는 아침저녁 두 번으로, 낮에는 도시락제로 할 것.
- (나) 관혼상제 등의 의식초대에는 근친 및 특별한 관계처의 극소수에 그치고, 장례식에는 볼일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술과 밥을 내지 않을 것.
- (다) 옷은 남자는 양복(작업복), 여자는 색깔이 있는 옷으로 화려한 것은 금할 것.
- (라) 요릿집, 음식점 등의 유흥음식시간을 당분간 미, 영을 격멸할 때까지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

경성부회 의원 新井永敏

1. 왕성한 적개심을 기조로 하는 결전생활을 확립할 것.
2. 민간훈련실시.
3. 지도자의 재교육으로 관민일체의 실현할 것.
4. 이론보다도 시청각교육을 시킬 것.

×

전라북도회 의원 平文忠男

1. 행정기구의 단순화.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언론의 격려나 희망사항의 요구보다도 행정기구의 강행적인 단순화라고 생각한다.

2. 농업단체의 단일화.

농업단체는 할거(割據)적인 분열을 배제하고, 각종 단체의 기능을 단일화하며,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총력발휘조직을 완성해야 된다.

3. 토지교환과 분합(分合)의 실현.

농업생산의 여러 가지 요소는, 특히 농지가 농작업의 합리적인 조종에 따라서 배치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또 농업생산의 확충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농업경영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농지관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의미로 최근에 토지문제는 단순한 분배과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 확충유지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특수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토지부문에서 이러한 과제는 먼저 첫째로 농지의 기술적인 배치의 변경과 농업경영의 합리화 특히 노동력부족을 완화하고 조정할 목적을 갖는 농지의 교환과 분합(分合)의 촉진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나 농지의 생산력적인 배치로서의 교환과 분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토지의 사유제도에 있다고 하나, 농지의 사유로부터 오는 소작료의 복잡함 — 예를 들면 농지의 비옥도, 농업수리(水利)의 편리여부, 경지소재의 편리여부 등이 농지의 교환과 분합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러한 농지 하나하나에 특이한 생산관계가 결합하고 있는 일 자체가 농지이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새로운 생산관계에 편입해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농지교환과 분합에 따르는 등록세는 당연히 면제해야 될 것이다.

×

강원도회 의원 國本政佐

1. 필승신념의 양양.

- 1) 우리국체의 존엄과 유사이래의 전적을 명확하게 밝힐 것.
- 2) 읍과 면에 한시바삐 신사(神社)나 신사(神祠)를 건설하여 경신(敬神)승조(崇祖)의 사상에 더 한층 힘을 쓸 것.
- 3) 순회영화회 및 시국재인식강연회, 좌담회, 종이연극 등을 이용하여 황국정신과 국민교양연성에 한층 철저를 다 할 것.
- 4) 각종 포스터, 표어 같은 것은 각 관공서에 그치지 말고 각 부락에 이르기까지 배포하여 부락민의 각성을 촉구할 것.

2. 전력증강.

- 1) 식량증산의 철저.
- 2) 지하자원의 철저한 채굴.
- 3) 읍, 면, 이(里)단위에 국민연성도장을 건설해 국가방책의 국민교양연성의 철저를 도모하고, 전반적

인 협력을 하도록 할 것.

(가) 여자교육의 쇄신을 도모하고 가정주부의 교양에 적절한 지도를 강구할 것.

(나) 탁아소의 교양쇄신을 도모하고 유아나 소아의 교양연성에 힘 쓸 것.

(다) 앞과 같은 연성에 지도하는 적임자를 배치할 것.

4) 국민학교부설 청년특별연성소교육의 쇄신.

(가) 교육연한을 연장(2개년).

(나) 전임지도원의 배치.

(다) 입소생의 연령을 적령 2개년 앞에 당길 것.

5) 초등의 국민학교 결전체제와 과학교육의 진전쇄신.

(가) 설비에 알맞은 경비의 충당화.

(나) 과학교육의 자재충당화.

6) 금속제품회수와 대용품배급의 철저를 도모할 것.

7) 각 단체기관의 활동쇄신.

(가) 부락보국대의 활동 강화.

(나) 애국반의 활동 철저.

(다) 회람판의 이용으로 한편 부락만의 이해를 촉구함과 동시에 시국의 인식화를 철저하게 도모할 것.

8) 국민학교 아동을 통하여 가정교화의 실천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일이 있으며, 이것을 한층 깊게 철저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락소재 학교에 이르기까지 사무를 전담하는 훈도의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전시생활의 확립.

1) 생산물의 공출양해와 협력의 일원화를 꾀할 것.

2) 자급자족품의 제작 지도를 철저하게 도모하고, 이러한 것의 통제적인 판로(販路)를 강구하게 할 것.

3) 잉여능력의 심화(深化)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저축보국의 실천적인 철저를 도모할 것.

4) 소비절약을 유의(留意)시킴과 동시에, 일상생활상 필수품배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암거래의 판매 근절을 강구할 것.

×

함북 무산읍회 의원 鎌田岳城

豊永 保

1. 필승신념의 양양.

신사(神社)나 신사(神祠)에 준하는 것을 부락적으로 건립을 권장하며 모든 행사를 신전에서 하게 하여 신념적인 생활에 인도할 필요가 있다.

2. 전력증강.

상공업자의 정비통합을 도모하고, 생산력 확충이나 중요산업 부문에 노무동원을 강화하고, 인적 현재(偏在)를 피하고 비생산적인 국민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로지 전력증산에 총

력을 결집하는 분기(奮起)를 바라는 바이다.

3. 전시생활의 확립.

통제품 이외의 섬유와 잡화에 있어서는, 특히 시국에 편승해서 조제(粗製), 남조(濫造)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당히 비싼 값에 비하여 내구력이 없고, 매우 불경제적인 것이 있다. 전시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강인한 기업정리의 용단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함남 차호읍회 의원 玉山星煥

1. 전황뉴스, 대동아뉴스의 농산어촌에 대한 신속한 보급과 소개를 하며, 지방 이동영화반을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것.

즉 처참 가열한 결전의 실상을 2천5백만의 뇌리에 빈틈없이 각인하고, 황위(皇威)에 광파(光破)된 10억의 새로운 전우와 무진장의 대자원을 눈앞에 생동시키고, 도의적인 생명력의 분기와 필승신념의 견지(堅持)를 꾀한다.

2. 경제사법의 단속법령을 비상하게 강화할 것. 한 줌의 쌀은 만인의 긴장을 흘트리는데 충분하다. 후방생활도 바로 전쟁이라면, 이러한 규정도 남김없이 엄격하게 하여, 첫째 단속, 둘째는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3. 소위 자칭 “인텔리”라는 청장년 도배의 유언비어의 온상을 짹 없앨 것.

즉 외래사상의 미몽으로부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여천餘喘⁵¹⁾을 잇는 “대세(大勢) 망상론자”의 무서운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사상 국방단체에 흡수해서 재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

4. 농어촌의 계절적인 번한(繁閑)을 어림잡아, 근로보국대의 출동을 강력하게 하거나 법제화할 것.

5. 정(町), 동, 이(里), 부락 연맹이사장 및 애국반장의 소질향상을 위하여 한층 연찬을 더할 것.

즉 그 많은 시책에 대하여 그들의 활약에 힘입는 바가 절대로 큰 것을 감안하여, 적어도 그들에게 행정적인 창의와 책임 관념을 계발하고 지도하며, 결전 하에 제1선 공무원의 중대임무를 자각하게 하고 아울러 민중의 선두에서 솔선수범을 잘 하도록 유능하고 숙달된 인사를 집결시킬 것.

×

경남도회 의원 杉村逸樓

1. 이제야 전국(戰局)은 가열 처참한 결전의 연속의 양상을 보이며, 참으로 먹느냐 먹히느냐의 중대 시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살고 있는 국민 중에 특히 청장년 계층에서는, 특히 유식유산계급에서는 지금 아직도 무위도식의 생활을 하며, 안일과 향락을 마음대로하며 근로정신이 모자라는 자가 적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기 짹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도배에 대하여, 일찍이 1941년 칙령 제995호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및 그해 총독부 제313호 국민근로협력령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전력증강을 위하여 의식주에 걸쳐, 철저하게 생활의 긴축을 단행하고자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

51) 다 죽어가는 자가 아직도 숨쉬고 있는 것.

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전쟁하는 나라의 국민은 어디에서나 생활에 부자유를 느끼는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국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에 불평불만을 외치는 자가 적지 않으며, 그들의 언동은 자칫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염전(厭戰)사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 미, 영의 모략에 태워지는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이러한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차제에 하부단체인 각 애국반으로 하여금, 일체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을 합의시키도록,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4. 도, 부, 읍회의원 중에 오직 도, 부 읍회의원으로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이 직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없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이때에 한층 인식을 새로이 하여, 의원으로서 일터에 봉공의 치성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기타 각 방면에 걸쳐서 스스로 진두에 서서 솔선수범 민중을 지도하고 독려함과 동시에 진정으로 군관민이 하나 같아, 1억1심의 열매를 구현함으로써 전력증강에 더 한층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상의상달과 하의상달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는 현상을 감안하여, 총력연맹에서는 맨 아래 하부단체인 애국반의 훈련에 온 힘을 기울임으로써 전력의 증강, 전시생활의 확립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즉 조선연맹에서는 맨 아래의 단체인 각 애국반에 호소하면서, 우리들 애국반은 우리 손으로 이것을 지키며, 우리 반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훌트린 자도 한 사람의 법규위반자를 내지 않도록, 단원전원이 결속하고, 연대책임으로써 우리들의 반을 지켜나가도록, 신념을 굳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맹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더구나 문화정도가 낮은 농산어촌의 반원을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상당한 곤란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신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의외로 쉬운 것과 같이, 훈련방법을 쉽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가령 상당한 세월로써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화정도가 낮은 국민이야 말로, 신양적인 훈련이 쉬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민간에서 왕성해 지는 총력을 양양하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선의 각 애국반을 훈련하는 데는, 방공방화, 방범, 준법, 암거래 및 곡물의 공출, 저축 및 국채소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 그러한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됨과 동시에, 전력의 증강, 전시생활의 확립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평북도회 의원 岡利晃

1. 미, 영에 대한 적개심의 양양

제국은 현재 유사 아래에 미증유의 대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승패는 단순히 황국의 흥폐뿐만 아니라, 전 동아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사인 것은 새삼스럽게 지껄일 필요가 없는 바이다.

그렇다면 누가 국민으로서 미, 영 격멸의 결의가 안 되어 있는 자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몰래 국내의 현실을 볼 때는, 전쟁 첫 머리부터의 전과(戰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인습이 되어온 배양(拜洋)사상으로 미, 영에 대한 국민의 적개심은 뜻밖에 박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크게 한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조선에서는, 미, 영의 선교사들의 마술에 도취된 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한층 그들에 대한 적개심은 박약한 느낌이 듈다.

이것의 개선 양양책으로서는, 이제 한층 더 미, 영의 동아침략에 대한 수많은 사실과 현하 성전에 대한 귀축(鬼畜)의 폭행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두루 알리기 위하여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필승신념의 양양

최근에 이태리의 정변에 더 보태어 독소전의 추이 및 적 미, 영의 본격적인 반공(反攻) 등에 자칫하면 이번 대전의 귀결을 우려할 일이 없지도 않으므로, 이때에 이미 지나간 일러전쟁 당시의 피차간의 국력과 이번 성전에서의 피차의 국력 등을 대비하고, 또 동아공영권 안에 있는 자원 및 민족의 협력을 등을 비추어 보고, 필승은 우리에게 있다는 신념을 고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아직도 배외(拜外)사상이나 사대사상과 같은 잘못된 사상을 마음 속으로부터 베어내지 못하는 도배가 있으며, 심기일전하여 황도(皇道)의 광명에 돌진할 것에 말미를 주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큰 일로서, 이러한 사상의 선도책으로서는, 각 애국반을 통하여 그러한 자들을 내사하고, 이들을 어떤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5일 내지 1주간 정도의 정신연성을 꾀하기로 하고, 또 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자를 직접 처벌주의를 백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애정으로 지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3. 전력증강

1) 전력증강을 하는 데는 국민으로서 한 사람일지라도 노는 자가 없이 각자가 생업에 분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 내에는 아직도 청장년계층에서 상당수의 놀고먹는 자가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이러한 원인은 본인의 정신적인 결함도 많으나, 그 중에는 일하고 자 해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 자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때에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맞은 직업을 적극적으로 알선 지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2) 중산장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점이 적지 않으나 특히 농산방면에서 작년 겨울부터 천수답의 한발대책으로 용수지를 파게 하여, 이것에 5할 내외의 보조를 준 사실이 있으며, 지난 여름에 이것의 이용 상황을 볼 때 1개동의 10여 개소의 용수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용되지 않아서 경지면적만 손해를 보았다, 운운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중에는 물론 예상 이상 이용된 지방도 있으나, 우견(愚見)으로서는 천수답에 대해서는 봄에 직접 파종을 장려함으로써, 한발이 될 때에는 몇 번 풀을 뜯고 내버려 두면 6, 7월의 우기에 들어가서 상당한 성장을 보고 가을에 가서는 풍작까지는 안 되어도, 수확이 전혀 없다는 참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전시생활의 확립

이번 대전은 서전(緒戰)이래 미증유의 대 전과를 올려, 현하의 제1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수만리 밖의 먼 곳이기 때문에 국민은 아직도 지금 낙관적인 기분을 씻지 못하고, 전시생활의 확립 등이 아직 본심으로써 실전에 돌진하는 자가 적은 상태에 대하여, 이때 패전국의 실정이나 격전으로 입은 참상을, 적절하게 강연이나 영화 등으로 일반에게 두루 알리는 동시에, 지도계급이 간절한 지도와 훈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전북도회 의원 乾山元求

“천 사람이 네네 하고 추종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정론을 펴나가는 것이 낫다(千人之諾諾不如一士謗謗)”란 글이 고문서에 있다. 그래서 나는 기坦없이 말한다. 즉 첫째는 일반상업계의 암거래 근절이며, 둘째는 배급원활을 하도록 하는 것.

셋째는 공장직공 및 인부의 대우향상과 농민대우향상, 아울러 농업양식을 확보하는 일, 넷째로 인민을 강제로 복종시키기보다 가급적으로 기쁘게 따르게 하는 것을 주로 하는 일, 이러한 것은 즉, 적인 미, 영을 격멸하는데 필승의 신념앙양, 전력증강, 전시생산의 확립을 철저하게 하는 길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

×

나진부회 의원 金永光正

1. 내지의 각 지구에 반도부인시찰단체를 파견하도록 바란다.

결의를 새로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병검사 받을 남자가 있는 반도부인을, 내지에 시찰 파견시켜서, 황군장병을 제1선에 보낸 내지의 전시생활의 실정을 파악시키며, 귀환 후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반도민 중 일반에게 두루 알리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일은 경비문제도 있으나, 그것은 각 지구에 후원회를 결성할 필요도 있으나, 오히려 국민총력연맹의 기구를 충실히 강화시켜서, 보다 한층 활발한 운용을 꾀하고 싶은 것이다.

×

함남 신창읍회 의원 三浦 亨

1. 미, 영 격멸의 결의를 새로이 하는 의견

미, 영의 세계제패라는 야망을 철저하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과거 백 여 년에 걸쳐, 동아 10억의 민중을 넘본 죄악을 일일이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강연회 및 기타 모든 부문을 적극적으로 총동원하여, 항상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적개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장기결전 체제에 내선일체, 제1선과 후방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적의 심리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전력증강

놀며 입고 먹고 하는 도배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도배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전시생산부문에 활용하고, 성전의 영광스러운 전사가 되게 함과 동시에, 10억 동아민중 지도의 천부의 기회를 획득 할 수 있도록 긴급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 전시생활

우리 국민생활을 간편하고 또한 긴축을 철저하게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필수품만을 중점주의로 강화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생활부터 한 계단 배제하는 방침을 긴급하게 세우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

함남 신창읍회 의원 金城光政

성전완수상, 반도 2천5백만 민중은 총력생산, 총력익찬(翼贊)의 열매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곧바로 하부조직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또 하부 조직 강화방법에는 읍과 면이 솔선해서 읍과 면내를 구별하여 유익한 인물을 선택하여 집합양성하고, 그 인물을 구장에 임명하고, 구장은 실지사무를 맡으며 구(區) 자체는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제출하며, 읍면은 공람한 뒤 승인하고, 구장은 예산으로써 구내의 일반 사무를 맡는다. 또 구에는 평의원 약간 명을 두고, 또 현재의 애국반장은 국어 및 문서를 미해득하는 자가 상당하게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국어 보급이라는 의미로 국어문장 외에 지방말을 기입해서, 해석하기 쉬운 설명편 수첩을 각 구장과 애국반장에게 배포하여, 수시로 낭독한 뒤 반원에게 자유로이 교화 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

×

함북도회 의원 呂同春

1. 수양연성의 철저한 실천

2천4백만 민중에 대한 황민연성을 가하여 진정으로 국체에 철저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완성을 다하는 것이 된다. 황국신민으로서 연성없는 징병제, 국체에 철저하지 않는 의무교육제 같은 것은 혼이 없는 시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수양연성기관을 확충하기 바란다.

2. 생산력의 결승적인 증강

(가) 식량증산과 생활 확보에 농촌재편성의 기획 등과 아울러 쌀, 잡곡, 주식물 및 부식물의 급속한 증산과 저장에 매진하게 할 것.

(나) 공, 광업은 반도의 생산전력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의 원동력인 전력 및 석탄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태의 적응성의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통제방식을 적절하게 개량 및 강화하도록 바란다.

(다) 교통기관을 확장하도록 할 것.

조선의 육해교통의 비상태세를 신속하게 정비 증강하여, 그것의 민첩한 운영으로 대동아경제권의 생산력의 증강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전완수에 기여하도록 바란다.

×

황해도 겸이포읍회 의원 橋本光義

(가) 총력연맹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후방국민이 귀향(歸嚮)해야 할 방책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 종래에 총력연맹으로부터 보내지는 문서의 지령은 최말단에 와서는, 본 문서째로 민중에게 읽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원의 대부분은 스님이 한자로 번역한 경전을 독송(讀誦)해서 그 신도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참다운 뜻의 이해와 파악은 완전히 곤란하며, 그래서는 상의하달이나 하정(下情)상통(上通)의 주된 목적은 도달하기 어려움에 대하여, 전조선에 걸쳐서 정(町)이나 부락연맹이사장의 진두지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검토해서, 현재 시국에 맞는 유익한 인재를 골라서 그 결합을 보완할 것.

(나) 타이쇼호우타이비(大詔奉戴日)에는 각 연맹 모두 일제히, 대조(大詔)를 봉독하고, 또한 그 주된 뜻을 설명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이해시킬 것.

(다) 반도민중은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적자(赤子)인 사실을 애국반상회나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자(識者)로 하여금 고사기(故事記), 서기(書紀)나 기타 문헌을 인용하여 민중에게 이해시켜서,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신앙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인류의 악마인 유태인이나 또는 이들의 피를 받은 모든 이원적 상대적 배타주의의 사교(邪教)를 부지불식간에 말살하고, 황도근본의 일본적인 종교에 귀속시키도록 할 것.

(라) 빨리 기업정비를 실행하고, 국민개로(皆勞), 암거래근절을 하도록 할 것.

(마) 물자배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애국반의 활동을 촉구하는 외에, 배급통제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여태까지 낡은 습관에 사로잡혀서 공정한 판매를 하지 않는 실상을 감안하여, 전부를 티켓제로 고쳐 애국반장에게 통제품의 구입과 알선을 하도록 할 것.

×

경남도회 의원 豊川一清

(가) 지방 유세대(遊說隊) 조직의 건.

(나) 노무관리의 강화와 잠재노동력의 철저한 동원 건.

(다) 도시의 불필요한 인구의 농촌으로 환원 건.

(라) 공장농촌 분산실시건

(마) 중요식량 및 특수 광물 증산 건.

(바) 생활필수품의 티켓제 실시 강화 건.

(사) 기업정비의 급속단행과 통제기구의 강화 건.

(아) 공영공동취사장 설치 건.

(자) 공영탁아소의 시설 건.

(차) 의류 자료의 티켓 점수제 제정 건.

×

경기도회 의원 大川光一

전시생활의 확립을 더 한층 철저하게 하는 데는 먼저 곡식 값을 올려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농민이 도회지에 전출해서 여러 가지 잡역에 종사해도, 하루에 3원 내지 5원의 수입을 얻어서, 식량은 가족에게 알맞은 배급을 받아, 농촌에 살 때보다 조금 생활안정을 맛보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은 피폐해지는 것이 예상됨으로 이렇게 되면 생산 확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우선 곡식 값을 올리도록 당국에 요망하는 바이다.

×

마산부회 의원 常松 泰

조선 징병제시행감사의 표현으로 전 조선에서 100대 이상의 “징병기념호” 항공기를 현납하는 건. 이상은 본 대회 의제 제1안, 제2안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안하는 바이다.

×

경남 진영읍회의원 靑柳鍾吉
吉本正成

필승신념양양에 관한 의견.

1. 신령(神靈)에게 필승의 기원.
2. 적개심의 양양.
3. 여기도 전장(戰場)이다, 즉전(即戰)즉응(即應)의 전시색(戰時色)으로 전환시킬 것.

×

강원도회 의원 松岡世宗

1. 전력증강

- (가) 관청에서는 사무 간소화 운동을 철저하게 할 것.
(나) 민중에게 각종 배급의 편의를 주어서 노동력의 소비, 낭비되는 경비, 사상악화 등을 방지할 것.
(다) 농민, 어민, 노동자에게는 식량을 최소한도 5홉씩을 정확하게 배급함으로써 노동력을 향상시킬 것.
(라) 전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여러 생산방면에는 지도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이유)

통제사무, 생산확충사무, 기타사무가 혼동이 될 때에는 큰 폐단과 부정행위가 가끔 있으므로 약간의 전력증강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마) 관리의 개인감정적인 행정은 전력을 증강하는데 심한 해독을 주기 때문에, 이를 일소하고 숙정을 할 것.

(이유)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城)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바) 상공업의 통제 사무는 민간기술자 또는 전문가에게 맡길 것.

(이유)

숙련자와 미숙련자의 능률발휘는 천양지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차이마저 있기 때문이다.

2. 전시생활 확립

(가) 3대 표어

- ① 사치는 국민이 망하는 길.
- ② 절약은 국가가 사는 길.
- ③ 긴장은 필승하는 기초.

(나) 조선에 내려오는 관혼상제, 허례허식, 미신의 나쁜 습관 등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대신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전체가 식탁 앞에 정좌하여,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받들고, 대동아성 전의 필승을 기원하도록 실행시키고, 그것의 실천여부는 각 애국반장을 통하여 당국에 보고하게 하여 결과에 따라 상벌을 줄 것.

(다) 연회는 당연히 폐지할 것.

(라) 음주량은 현재보다 반으로 줄일 것.

- (마) 음주시간은 오후6시부터 10시까지로 할 것.
- (바) “카페”의 작부와 여관의 도우미 “팁”제는 전폐하고, 음식점 작부의 급료는 반으로 줄일 것.
- (사) 음식세, 유홍세 등의 세율인상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영업자의 수익과 탈세행정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기구는 세무서와 분리 독립시킬 것.
- (아) 정신노동자는 1일2식 주의를 실행할 것.
- (자) 1천석 이상의 수확이 있는 지주에게는 1천석까지를 자신의 자작이나 소작이 자유이나 그 이상의 뜻은 대동아전을 필승할 때까지 국가경영으로 맡기며, 소작료만큼은 매년 지주에게 환급할 것.
- (차) 주식시장을 배회하는 탐욕가나 유한배(有閑輩)는 일일 근로봉사에 종사하도록 한다.
- (카) 흰색의 남녀 옷과 남자의 “두루마기”와 “상투” 및 갓은 절대로 폐지할 것.
- (타) 식량배급소는 각 정회(町會)에 설치하고, 그 판매이익은 전부 국방현금으로 할 것.
- (파) 남자 옷은 전부 기성복으로 하고, 이전 옷감장사는 다른 생산방면에 전업시킬 것.
- (하) 기타 종전의 풍속이나 습관에 구애받아서 단행하기 어려운 것은 결전하의 오늘날 단연코 실행 시켜서 전시생활 확립의 본 뜻을 철저하게 하도록 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

강원도 강릉읍회 의원 吉田祐四郎
丸山隆達

1. 전력증강

(가) 인적자원.

현재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대동아전쟁하에서는, 특히 청소년층의 강약이 바로 전력에 후방생산력의 확충에 일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이러한 경우 청소년의 교양을 보아서는, 본 대전이 인류세계에 우리 황도를 기초로 하는 성전의 본질을 갖는다고 하는 점에 자각을 주어서 양양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 물적 자원.

① 생산을 증강할 것(이 경우 직접 군수생산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지에는 만난을 무릅쓰고 교통운수의 편리를 열어야 하며, 식량증산에는 경작지를 개척 확장하여 수리의 편리를 도모하고 더욱 경작방법을 개선할 것.

② 소비규제에는 먼저 집하(集荷)와 배급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활정도의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소비규제를 엄격하게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2. 수송력의 증강

조선은 대병참기지이며, 대륙물자 교류의 일대수송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경부, 경의의 중앙간 선철도와 진남포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철도가 있으나, 이 밖에 이미 정해진 계획선으로 부산을 출발하여 동해안의 지하자원을 개척해 나가면서 일로 북진하여, 함경선에 접속하고 동부만주에 도달하는 소위 동해안철도의 완전 개통은 매우 긴요한 문제이나, 기획원은 이 선은 조선을 위한 철도인 듯한 견해 하에, 이것에 요하는 자재의 운송배당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은, 현재 수송력증강이 가장 급함을 요하는

때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아볼 때 대륙물자의 교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더욱이 국제정세의 급변이 있을 경우를 생각하여, 본 철도의 완성은 최대 급선무로서 단연코 천연(遷延)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3. 교육기관의 정비

교육은 참으로 국가백년의 흥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국(大局)을 달관하여 장래를 통찰하며 선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황국은 이제야 총력을 통틀어 전쟁을 수행 중이기에 교육도 결단코 그 테두리 밖에 있음을 허락지 않는다. 교육계 그 자체도 함부로 형식에 구애되거나, 또는 유신 아래 수입된 유럽 문학 등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된다.

4. 청소년의 연성

5. 국어 보급

6. 모성의 계몽

×

전남 나주읍회 의원 梁井癸元

제1의제에도 제2의제에도 양쪽 다 먼저 일본정신앙양을 철저하게 하고, 내선이 일체가 되어 천황귀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경비가 들지 않고 실행하기 쉬운 반면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풍속과 습관을 내선이 일치시키는 일이다. 대체로 풍속과 습관은 한 나라 문화의 소장(消長)을 재는 나침반인 것이다. 조선은 예부터 예의의 나라로서 일찍이 장유유서(長幼有序)하고 부부유별(夫婦有別)이 올바르고, 조상을 숭배하는 양풍(良風)이 완성하며,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의를 존중하고, 참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문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요즘은 자칫하면 엄숙한 예의도 쓸데없이 형식에 훌러 긴요한 정신을 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속출하여 민중은 그것의 번잡함에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히 신분에 맞지 않는 비용과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사회의 상하를 통하여 그 부담에 괴로워하며 한 번의 혼례나 한 번의 장례에 재산이 기울게 된 자가 적지 않는 현상이며, 이러한 적폐를 잘 알면서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이구동성이나, 수백 년 내려온 전통적인 관습에 굳어져 속박이 되어 오늘날까지 잘 탈피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최대의 비상시를 맞아 대동아건설의 대임무를 짊어져서 착착 맹진 중인 이 때에 우리들 후방국민인 자들은 하나만이라도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래 또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각이라도 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우리 반도민중은 국가에 일치하는 진충(盡忠)의 성심과 국가방침에 순응하는 비율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되어, 누구라도 국가의 요청 즉 관의 방침이라면, 아무튼 이유 없이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반도민중의 독특한 아름다운 현상이라고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일대영단을 내려서 여러 가지 폐단을 교정하고 그 형식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낭비를 없앰과 동시에 어디까지나 도의정신을 관철하여 예부터의 미풍양속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사회 신질서에 순응하고, 완전한 국민생활을 개생하도록 고치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이면 내선일체는 필연적인 산물로서, 따라서

일본정신은 부수적으로 스스로 앙양되어 제1의제도 제2의제도 스스로 철저하게 구현되는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구현방법.

1. 장혼(葬婚)예식의 개선.
(총독부가 발포한 의례준칙의 이행).

동 실행방법.

1. 각 읍, 면단위에 교풍(矯風)회를 조직하고 주된 간부에 관공리로 충당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정하며, 당사자 측으로부터 자산정도(호별등급)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받아서 동 집행위원 일체를 집행한다.
2. 국민총력연맹을 통하여 독려하는 것도 괜찮으나, 자칫하면 등한하게 되기 쉬움으로 (1)안을 채용하여 지방본위의 관공리가 절대적으로 독려하고 원조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지방에서는 일반으로부터 커다란 희망이 보이며 머지않아 실행될 것이다.

실행위원회 및 간담회 결정사항 개요

10월 3일 오전10시
경성 부청회의실에서 개최

참가자

실행위원

충북	立野新五郎
동	三井寅熙
충남	芝山 祺
동	沼田虎次郎
전북	片桐和三
동	金田英武
전남	木尾良清
동	高島在渭
경북	大峯丙朝
동	杉原長太郎
경남	杉村逸樓
동	富士山隆盛
황해	三島承催
동	新田豊吉
평남	大山 晃
동	森 幸次郎
평북	岡利晃

동	神保信吉
강원	和氣孫吉
동	松岡世宗
함남	篠川恭三郎
동	방의석(方義錫)
함북	四元嘉平次
동	金山韶能
경기	石原磯次郎
동	元村 肇
동	賀田直治
경성	伊達四雄
동	石原憲一
동	石森久彌
동	森安敏暢
동	中村郁一
동	中本弘鍾
동	夏山 茂
동	梁川在昶
인천	小谷益次郎
원산	大村謙次郎
함흥	岸川於菟松

내빈

정무총감	田中武雄
본부기획실장	美根五郎
본부문서과장	山名酒喜男
본부사정국장	新貝 肇
본부체신국장	白石光治郎
본부농림국장	横山幸生(대리)
본부경무국장	八木信雄(대리)
본부철도국장	若木사무관(대리)
경기도지사 대리 경찰부장	岡 久雄
본부지방과 이사관	田中俊輔
군사령 부	長屋 小三郎
동	厚地 大領
동	江上 中領

국민총력연맹	簡牛凡夫
경성부	古市 進
동	千田專平
동	星村宇德
동	伴 格夫
동	濱田虎熊

- 오전 10시30분 개회.
- 대회준비위원장 이달사옹씨로부터 개회인사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대회실행 위원장으로서 좌장석에 앉아 의사에 들어갔다.
- 오전 10시37분 정무총감 임석.
- 각 위원으로부터 기坦없는 의견의 개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당국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
- 정무총감 “본 대회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향은 가능한 한 정치에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퇴장하며 휴게에 들어갔다. 때는 오후1시5분.
- 재개 오후2시47분.
- 대회채택사항은 대회 이름으로써 총독에게 진언하고, 또 연맹에 통보할 것.
- 비행기현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전조선의 공직자가 한 냉어리가 되어, “비행기 전선공직자호” 4대를 현납하기로 하고, 각 공직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각출하는 것으로 한다.

도회의원	50원	671명	33,550원
부회의원	50원	421명	21,050원
읍회의원	30원	1,456명	43,680원
면회의원	10원	22,704명	227,004원
학교조합의원	20원	5,760명	115,200원
학교협의회원	20원	2,325명	46,500원

계487,020원

- 대회는 각도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급히 본 대회의 본 뜻을 철저하게 기할 것.
- 본 대회잔무처리를 경성에 주재하는 위원에게 일임.
- 폐회, 때는 오후4시32분.

대회참가자 성명

참가 수				
도명	도회의원	부회의원	읍회의원	합계
경기도	24	66	16	106
충청북도	3	—	8	11
충청남도	4	3	22	29
전라북도	4	8	12	24
전라남도	5	6	17	28
경상북도	5	4	20	29
경상남도	5	11	22	38
황해도	4	4	21	29
평안남도	4	10	10	24
평안북도	4	4	18	26
강원도	4	—	24	28
함경남도	4	8	18	30
함경북도	5	10	11	26
합계	75	134	219	428

경기도

경기도회의원	石原磯次郎	경기도회의원	大川光一
동	伊藤敬燮	동	德泉 溶
동	力武 昇	동	力武黒左衛門
동	岡本豊喜	동	김주한(金胄漢)
동	村田 孜	동	松本 清
동	강태곤(姜大昆)	동	茂谷一弘
동	俞原琬植	동	민규식(閔奎植)
동	咸豐敏烜	동	中馬越之助
동	堀 正一	동	元村 肇
동	賀田直治	동	睦川頃相
동	平山忠一	동	金子根鎬
동	國平鳳九	동	車田濬潭
경성부회의원	伊達四雄	동	이경봉(李庚鳳)
			德山必求
동	三井疇明	동	山崎廣龜
동	전부일(全富一)	동	加納一米

동	高澤藤子	동	内田鯤五郎
동	伊藤奉圭	동	新井永敏
동	松本斗用	동	南條 晟
동	江村相鑄	동	이민구(李敏求)
동	神岡昌熙	동	野附勤一郎
동	上杉直三郎	동	高井健次
동	伊東立雄	동	石原憲一
동	小川勝平	동	山口友造
동	井原荒太郎	동	夏山 茂
동	伊藤壽一	동	野田勝弘
동	鈴木文助	동	太宰欽明
동	徳山白洵	동	柳樂達見
동	廣山種香	동	梁川在昶
동	廣瀬徳太郎	동	朝野晴義
동	梅林卯三郎	동	石橋良祐
동	近藤秋次郎	동	山中大吉
동	阿部喜之助	동	木村昌薰
동	森安敏暢	동	藤崎謙祐
동	안정원(安錠遠)	동	芝村定宰
동	草内興洙	동	金井泰漣
동	中本弘鍾	동	中村郁一
동	石森久彌	동	加藤好晴
동	石川倦造	동	新井康弘
동	三井清次	동	戸谷正路
동	栗本正隆	인천부회의원	小谷益次郎
인천부회의원	金永泰勳	동	金森 信
동	吉木善介	동	直野良平
개성부회의원	孫園禮次	개성부회의원	林敬雄
개성부회의원	林憲章	개성부회의원	김준형(金駿炯)
동	山隆賢龍	수원읍회의원	黑岩覺一
수원읍회의원	鈴川泰重	안성읍회의원	市山直衛
안성읍회의원	松田秀浩	의정부읍회의원	松田敏一
의정부읍회의원	小林重延	평택읍회의원	西村哲太郎
평택읍회의원	千岡鳴煥	여주읍회의원	大邦仁宇
여주읍회의원	池 畑灯	이천읍회의원	金原炳哲

장호원읍회의원	玉岡在新	장호원읍회의원	南憲政輔
소사읍회의원	小見山清三郎	소사읍회의원	金澤良忠

충청북도

충청북도회의원	立野新五郎	동	馬場友慶
동	三井庚熙	청주읍회의원	大井魯泰
청주읍회의원	芳湖敏浩	충주읍회의원	大山隆司
동	設樂平八郎	영동읍회의원	泉 良一
동	金岡 潤	제천읍회의원	金田弘三
동	日高 勇		

충청남도

충청남도회의원	芝山 祺	충청남도회의원	西島寅吉
동	임창수(林昌洙)	동	新安善弼
대전부회의원	沼田虎次郎	동	金田大英
동	外山喜右衛門	공주읍회의원	大西幸吉
동	大谷善一	강경읍회의원	廣瀬健次郎
동	大山高明	조치원읍회의원	島田義文
동	扶林廣治	천안읍회의원	井上吾一
동	宗本昌漢	논산읍회의원	小山伊三郎
동	大山 弘	장항읍회의원	白江重元
동	金田在道	예산읍회의원	藤丸友吉
동	成井觀永	홍성읍회의원	津島寛太郎
동	喬木鍾丸	온양읍회의원	中畠武雄
동	木山成珪	광천읍회의원	佐生源吉
동	清水達永	서산읍회의원	川端勝春
동	西原永茂		

전라북도

전라북도회의원	片桐和三	동	柳富太郎
동	金田英武	동	平文忠勇
군산부회의원	樋口寅藏	동	大平晚秀
동	睦山繁藏	동	青山允信

전주부회의원	北本松雄	동	加瀬雄三
동	宗島柱祥	동	元村炳喜
이리읍회의원	星本照雄	동	大元朗民
정주읍회의원	金原和平	동	한영교(韓釁教)
남원읍회의원	國定 豊	동	諫訪善右衛門
김제읍회의원	岐岡在軒	동	安本昌市
신태인읍회의원	西來路富	동	平光金平
금산읍회의원	大山俊鎬	동	中山新夫

전라남도

전라남도회의원	松井邑次郎	동	松永東允
동	政吉 信	동	木尾良清
동	高島在涓	목포부회의원	中島健三
동	德山南鎮	동	森 誠一
광주부회의원	岩橋朝一	동	菊池光興
동	松山登光	여수읍회의원	本田孝一
동	延原昌熙	제주읍회의원	金山倉久
동	高峰秀明	순천읍회의원	金光相洙
동	湊京吉	나주읍회의원	梁井癸之
송정읍회의원	木村千藏	동	東 純朝
별교읍회의원	大山昌文	동	鴻池養千
강진읍회의원	安田豊太郎	동	福永由太郎
영산포읍회의원	内山政雄	보성읍회의원	曾根 勇
동	林秉極		

경상북도

경상북도회의원	小口 肇	동	入山 昇
동	大峯丙朝	동	金田龍周
경상북도회의원	高木信	대구부회의원	杉原長太郎
동	坂本俊資	동	明本智隆
동	青田永德	구룡포읍회의원	石原 榮
동	成澤永道	상주읍회의원	稻垣徳三郎
동	山岡尚善	김천읍회의원	青松 潔
동	高崎平吉	영천읍회의원	土肥清五郎

동	金谷榮太	포항읍회의원	岡部與一
동	金浦丙俊	경주읍회의원	青岡海弼
동	竹岡寅一	영주읍회의원	和泉巖
동	松田憲昌	안동읍회의원	三達正武
동	松下嘉次郎	예천읍회의원	小島金之助
동	金村光郎	위성읍회의원	高山夏樹
감포읍회의원	織田留吉		

경상남도

경상남도회의원	杉村逸樓	경상남도회의원	김동준(金東準)
동	清水佐太郎	동	桐本鍾洛
동	安本孝式	부산부회의원	井谷儀三郎
동	池田佐忠	동	大潭泰昇
동	金山俊源	동	平山榮彥
마산부회의원	西田木惣市	동	玉山壹義
동	常松泰	진주부회의원	富士山隆盛
동	上村重太郎	동	松岡秀昌
진해읍회의원	豊山祐吉	동	重松鶴吉
통영읍회의원	原田長二郎	동	諸岡泰彥
밀양읍회의원	河本相祐	동	菊地仁德
삼천포읍회의원	金浦徹	동	邦光朗
방어진읍회의원	岩城鍾泰	동	大串旣
거창읍회의원	菊田鏞禧	동	大山重穆
하동읍회의원	岡田伊弘	동	山本錫根
고성읍회의원	朴本容甫	동	文川性律
장생포회의원	共田元洙	동	河本啓秀
진영읍회의원	吉本正成	동	青柳種吉

황해도

황해도회의원	松本利雄	동	毛勝伊之助
동	三島承一	동	金江鎮聲
해주읍회의원	上野行藏	동	新田豊吉
동	金澤清	동	上村篤實
겸이포읍회의원	橋本光義		

동	長岡壽郎	동	金山兼二
사리원읍회의원	萩野龜久治	동	金宮貞夏
연안읍회의원	谷口市二	동	長城圭亮
신천읍회의원	西崎敏男	동	香村吉徳
재령읍회의원	金浦德裕	동	金井 勇
옹진읍회의원	石原高一	동	大島久昌
장연읍회의원	上山亨一	동	小林義雄
안악읍회의원	岡崎 劑	동	和田始復
황주읍회의원	井上改平	동	金城秀松
남천읍회의원	楠瀨正直	동	泰川濟洪

평안남도

평안남도회의원	大山 晃	동	平沼 憲
동	森 幸次郎	동	山本昌鎬
평양부회의원	松尾六郎	동	吉村元治
동	青木貞浩	동	水原 進
동	安城 基	동	今井頼次郎
진남포읍회의원	鈴木孝太郎	동	重技太索
동	末永 淳	동	松岡良樹
순천읍회의원	西原敏夫	동	淺野文亮
승포읍회의원	今泉岩光	동	中野昌範
안주읍회의원	金谷秀信	동	平澤永浩
양덕읍회의원	小林請三	동	安東星玉
개천읍회의원	小林義武	동	青松允瑞

평안북도

평안북도회의원	岡利晃	동	黃原觀河
동	中込精一	동	足立長吉
신의주부회의원	神保信吉	동	河東秀明
동	野原藤次郎	동	平居熙迪
의주읍회의원	福田國光	동	平山清朝
정주읍회의원	後藤吾一	동	茂松春根
선천읍회의원	吳本鉉琦	동	日沖政之助
강계읍회의원	香山承洙	동	阿野堅若

복진읍회의원	石川化慶	동	松岡秀樹
박천읍회의원	宇内光濂	동	坂本幹平
만포읍회의원	妻木國雄	동	咸元泰夫
희천읍회의원	吉村親定	동	新井重陽
용암포읍회의원	金浦恒一	동	吉田雅一

강원도

강원도회의원	和氣孫吉	동	村上八郎
동	松岡世宗	동	平川徳一
춘천읍회의원	池田秋藏	동	山中 異
동	宮内幾太郎	강릉읍회의원	吉田祐四郎
동	丸山隆達	철원읍회의원	大野孝太郎
동	朝田永常	원주읍회의원	植村忠清
동	植原正義	삼척읍회의원	金田 弘
고저읍회의원	藤井福七	동	宮本哲男
고성읍회의원	橋本吉藏	동	張元正己
금화읍회의원	宣永嘉一郎	동	松宮 朗
목호읍회의원	大田豊市	동	河原田庚用
속초읍회의원	大原清治	동	金谷淨實
평강읍회의원	齊藤壽	동	島田秀一
장전읍회의원	津田梅一	동	黃本雲天

함경남도

함경남도회의원	笛川恭三郎	동	방의석(方義錫)
동	公山弘基	동	木村重樹
합흥부회의원	岸川於菟松	동	西原翊華
동	邦本泰禹	동	金本安民
원산부회의원	大村謙次郎	동	小林儀三郎
동	湖山祚鳳	동	남백우(南百祐)
북청읍회의원	金澤聖明	동	金本裕屹
홍남읍회의원	前田長太郎	동	도청호(都忠浩)
혜산읍회의원	大倉鐵三	동	竹山 明
신포읍회의원	西原正雄	동	新井保實
단천읍회의원	夏川正鳳	동	柳川咸範

홍원읍회의원	高山珉用	동	錦城熙昌
차호읍회의원	玉山星煥	동	熊谷正一
신창읍회의원	三浦 亨	동	金城光政
영흥읍회의원	李家昇龍	동	小室千代吉

함경북도

함경북도회의원	四元嘉平次	동	여동춘(呂同春)
동	松原泰龍	동	金江信治
동	金山龍能	청진부회의원	厚母繁一
동 武田辰三	동	祥原弼顯	
나진부회의원	新井 準	동	金永光正
동	中山郁之亮	동	北村久七郎
성진읍회의원	萩原 寬		

〈출전 : 全鮮公職者大會 事務局,
『徵兵制實施感謝赤米英擊滅決意宣揚全鮮公職者大會記錄』, 1943년, 77~256쪽〉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VIII

IV. 경찰치안과 사상탄압

1. 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1941)

조선경찰개요 목차

서언

제1장 조선 경찰제도의 연혁

1. 창시 시대
2. 경찰권의 위탁
3. 총독부의 설치
4. 제도 개정
5. 현재의 경찰력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관할

제4장 경비시설

1. 경비선
2. 경비전화

제5장 경찰비

제6장 경찰직원

1. 정원
2. 현 인원과 급여
3. 근속년수
4. 연령
5. 본적
6. 병적관계

제7장 경찰관의 교양

1. 순사의 모집
2. 교양기관
3. 교육 정도
4. 어학 능률

제8장 진퇴상벌

1. 진퇴
2. 직무사상(職務死傷)
3. 징벌
4. 상여(賞與)

제9장 근무 및 생활

1. 개요
2. 수지(受持)
3. 특종근무
4. 휴가
5. 생활

제10장 경찰관의 급여

제11장 치안상황

1. 병합 전의 상황
2. 병합 후의 독립소요후(3.1운동)의 상황
3. 최근의 상황
4. 지나사변(만주사변)하의 치안상황

제12장 국경경비

1. 개황(概況)
2. 비적(匪賊)상황
3. 경비기관
4. 근무상황

제13장 범죄의 상황

1. 개황
2. 범죄발생 및 검거
3. 범죄 즉결

제14장 다중(多衆)운동

1. 노동쟁의
2. 소작쟁의

제15장 재외조선인

1. 이주 연혁
2. 불령자의 상황

제16장 내지거주조선인노동자

1. 도항상황
2. 출가노동자모집 단속상황
3. 취업상황
4. 생활상황

제17장 신문, 잡지, 출판물 및 영화,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1. 신문, 잡지, 출판물의 개황
2. 신문, 잡지의 내용

3. 출판물의 상황

4. 이수입(移輸入)신문, 잡지 및 보통출판물의 상황
5. 지도 및 단속상황
6. 영화의 단속
7.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제18장 제(諸)영업 기타 단속

1. 총포화약 단속
2. 연화(煙火), 인화질물 그 외 위험물 단속
3. 수렵 단속
4. 전기사업 단속
5. 원동기 단속
6. 교통 단속
7. 숙박업소 단속
8. 요리옥, 음식점, 예기(藝妓)집, 대좌부, 예기, 창기작부 단속
9. 사창 단속
10. 질옥(質屋) 단속
11. 고물상 단속
12. 기부금모집 단속
13. 대금업자 단속

제19장 시가지 계획

1. 적용도시
2. 1941년 중의 준공 건축물 개황
3. 방공건축규칙의 공포

제20장 경방(警防)

1. 방공의 개요
2. 소방기관
3. 기계기구
4. 화재발생 및 손해

제21장 경제경찰

1. 연혁
2. 지도상황
3. 단속상황
4. 특수물자의 소비규정

제22장 위생시설

1. 개황

2. 의료기관

제23장 방역

1. 전염병
2. 만성전염병
3. 지방병

제24장 약품, 매약(賣藥), 아편 및 마약류 단속

1. 약품 및 매약 단속
2. 아편 단속
3. 마약류와 마약류중독자의 단속

제25장 가축위생기관

제26장 가축전염병예방

제27장 이출우검역

제28장 고기와 우유의 위생

1. 도축장과 도축 단속
2. 우유 및 산양유

제29장 경찰공제조합

1. 급여금
2. 사업성적
3. 급약부(結藥部)
4. 금융부

제30장 경찰협회 및 지부 후원회

참고제표

제1표 신구경찰기관의 비교

- (1) 경찰직원
- (2) 경찰직원
- (3) 경찰직원수

제2표 1919년 경찰제도개정전후 경찰기관의 비교

- (1) 경찰관서
- (2) 경찰관정원

제3표 경찰관서

제4표 경찰관할 1

제5표 경찰관할 2

제6표 경비선성적표

제7표 경찰전화가설개소

- 제8표 누년경찰비
제9표 1941년도 경찰비예산
제10표 경찰직원정원
제11표 경찰관배치표(현직원)
제12표 순사근무별배치표(정직원)
제13표 동 (현직원)
제14표 경찰관현직원현급(現給)
제15표 경찰관리근속년수
제16표 경찰관리연령별표
제17표의 1 내지인경찰관본적별
제17표의 2 조선인경찰관본적별
제18표의 1 경찰관병적표
제18표의 2 경찰관병적표
제19표 순사채용성적
제20표 순사교육정도표
제21표 경찰관리어학능률표(내지인은 조선어, 조선인은 일본어)
제22표 경찰관리진퇴 및 사망표
제23표 경찰상 사상인원수
제24표 순사징벌사유표(1)(2)
제25표 경찰상 상벌표
제26표 순사정근(精勤)증서수여자조사
제27표 문서건수표
제28표 순사 1인당 면적, 호수, 인구표
제29표 순사생활상태표
제30표 순사휴가 및 결근조사
제31표 순사가족조사
제32표 1920년~1940년간 국경3도비적상황표
제33표 국경경찰관급여상황
제34표 – 1 범죄발생건수각도별
제34표 – 2 범죄검거건수각도별
제34표 – 3 범죄발생 및 검거누년비교
제35표 – 1 도별범죄즉결
제35표 – 2 누년별범죄즉결
제35표 – 3 사변전후 형법범발생상황(월별)
제35표 – 4 사변전후 형법범발생상황(도별)

- 제35표 – 5 사변전후 형법범발생상황(범죄별)
제35표 – 6 금밀수검거사건조사(년별)
제35표 – 7 금밀수검거사건조사(건수,인원별)
제35표 – 8 금밀수검거사건조사(수량별)
제36표 총포, 화약, 연화등 영업자
제37표 총포수이출입허가수량누년비교
제38표 화약류이출입허가수량누년비교
제39표 폭발물어업검거수
제40표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조사표
제41표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조사표(각도별)
제42표 자동차사고누년비교
제43표 경찰제영업단속표
제44표 – 1 시가지계획령관계준공건축물표(각도별)
제44표 – 2 시가지계획령관계준공건축물표(용도별)
제44표 – 3 시가지계획령관계신청서수리건표
제45표 경방단표
제46표 경방설비자재표
제47표 – 1 화재도수 및 손해액누년비교
제47표 – 2 화재도수 및 손해액표
제48표 화재원인표
제49표 경제경찰직원정원표
제50표 경제통제법령위반단속조치 및 위반검거월별표
제51표 경제통제법령위반단속조치 및 검거건수표
제52표 – 1 의료기관표
제52표 – 2 의료기관표
제52표 – 3 의료기관표
제53표 약품영업자표
제54표 – 1 전염병환자 및 사망자누년비교
제54표 – 2 전염병환자 및 사망자도별표
제54표 – 3 전염병환자 및 사망자월별표
제54표 – 4 인구 1만에 대한 전염병환자 및 사망자표
제55표 마약류중독자수누년비교표
제56표 가축전염병
제57표 이출우
제58표 – 1 도살장수

제58표 – 2 도축검사성적표
제59표 우유 및 산양유
제60표 공제조합원이동 및 현재원
제61표 – 1 공제조합수지과목별조사(수입)
제61표 – 2 공제조합수지과목별조사(지출)
제62표 공제조합구체금급여금급여액
제63표 구급상배비상상황일람
제64표 – 1 금융부대부금회수상황
제64표 – 2 금융대부상황표
제65표 – 1 조합원결핵요양보고조사(1)
제65표 – 2 조합원결핵용양보고조사(2)
제66표 – 1 조합원건강진단상황표(1)(2)
제66표 – 2 조합원건강진단상황표(3)

부

전조선경찰서명 일람
총독부 도청간 이정표

서언

조선의 면적은 22만 778평방킬로미터로 우리 제국 전 국토의 약 32%를 차지하고, 인구는 2,308만 4,737명으로 우리 총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분포상황은 북쪽은 매우 희박하지만 남쪽은 일본 내지의 밀도와 별 차이가 없다.

행정구획은 전체 13도(道)를 19부(府) 218군(郡) 2도(島)로 나누어져 있고, 군도(郡島)를 204읍 2,135면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일반적으로 넓은 편이다. 가령 함경남도는 31,978평방킬로미터를 관할하고 있어서 간토(關東) 지방의 1부 6현에 필적한다. 군 역시 함경북도 무산군(茂山郡) 같은 경우에는 6,165평방킬로미터로 오이타현(大分縣)과 비슷한 면적이고, 면도 무산군 삼사면(三社面) 같은 경우에는 2,254평방킬로미터로 거의 가나가와현(神奈川縣)과 비슷한 곳이 있다.

지세는 장백산맥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어져 있어서 북방의 국경을 지키고 있고, 그 한 줄기는 남으로 뻗어 평안남북, 함경남북도의 경계를 이루면서 강원도로 들어가고, 동해안선을 따라 남으로 달려 반도의 척추를 형성하고 있다.

산맥의 강동(江東) 지역은 경사면이 급격해서 큰 강과 평야가 부족하지만, 그 강서 지역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곳곳에 평야가 많고, 압록강, 임진강,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이 있어서 배편이 편리하고 관개수리가 뛰어나 대체적으로 땅이 비옥하다.

철도는 부산-신의주 간의 반도 종횡선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지선들과 사영(私營)철도가 부설되었고 그 길이는 국선(局線) 3,831킬로미터, 국유 북선(北鮮) 위탁 철도 329.2킬로미터, 사선(私線) 1,252.4킬로미터, 계 5,412.7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승합자동차의 크게 발달해서 각 주요도시는 물론 최근에는 국경 제1선의 이른바 국경도로에도 연결되어, 이제 그 연장 승합 25,871킬로미터, 화물 22,489.5킬로미터에 달하고, 지금도 발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기후는 남북의 여름철에는 기후차가 적지만 추운 계절에는 그 차이가 크다. 따라서 주민들의 성격에도 자연히 차이가 있었다. 즉 남쪽에는 대개 온화하고 일본 혼슈(本州) 중부지방과 거의 비슷하며, 토지는 잘 경작되었고 민정(民情)도 온건한 데 반해, 북쪽은 대륙적 기후 영향을 받아 한서(寒暑)의 차이가 심하고, 아울러 불모지가 많아 교통도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민정도 소박한 구석이 있다.

이처럼 그 관할 구역이 광대하고 또 벽지와 미개지가 많은데, 경찰력의 정비에 따라 제반 물정은 매우 완화되어 민심도 더욱 신정(新政)에 기대게 되었고, 모두 그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치안유지에 전력을 기울인 탓에 다른 것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경찰은 이제 그 방침을 바꾸어 새로운 시설의 완비에 착실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은 소비에트 및 만주의 국경과 서로 인접하고 있는 관계상, 소비에트의 공산당원, 만주의 마적·비적, 혹은 불령(不逞) 조선인 등의 책동이 있어서 국경의 경비는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종 국교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선의 경찰은 평소에는 보통경찰행정에 종사하고,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서는 등, 수사, 공격, 선무(宣撫)를 겸하 기민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또 의무상에서 보더라도 일본인 경찰관은 조선어, 조선인 경찰관은 일본어에 숙달할 필요가 있는 등, 일본 내지와 그 밖의 경찰과는 자연히 성격

을 달리하고 있다.

제1장 조선 경찰제도의 연혁

1. 창시 시대

구 한국정부 말기의 경찰은 거의 권문의 수족이 되어 주구(誅求)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인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폐해가 속출하는 상태에 있었다. 우리 제국 정부는 1894년 경무고문을 추천하여 개혁에 힘쓰도록 했으나, 외교의 성쇠로 인해 모처럼의 개혁도 중도에 좌절했다. 이어서 러시아와 프랑스 등에서 고문을 초빙했으나 종종 정쟁의 와중에 빠지게 했을 뿐이고, 그 뒤 1904년 제국 정부가 또 다시 추천한 경무고문의 도움으로 현저히 쇄신·개선됨으로써 비로소 경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우리 제국은 영사재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무성 경찰관을 두고 체류 제국신민의 보호와 단속하고 있었지만, 1905년 11월에 성립한 일한조약에 의해 공사관, 영사관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없애고 새로이 통감부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해 통감부 경찰관을 배치했다.

제국은 전신 보호를 목적으로 각지에 현병을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1906년 2월에 이들 현병에게 군사경찰 외에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을 겸무시키기로 하고,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은 통감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1907년 10월에 현병은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을 맡고,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해서는 통감에 속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사경찰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현병 및 통감부 경찰관은 통괄하고, 경비기관은 점차 정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도초적(匪徒草賊)은 여전히 각지에 출몰하여 양민을 괴롭히고 있어 섬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경찰권의 위탁

1907년 10월 제국 정부는 통감부 경찰관을 없애고 일본인 및 조선인에 대한 경찰은 한국 정부 초청의 일본인 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했으며, 이어서 1910년 6월에 구한국 정부는 공안유지, 내외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완수하기 위해 경찰기관을 통일하는 동시에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경찰 업무의 일부를 우리 제국 정부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무대신의 보조기관인 경무국, 관찰사의 보조기관인 경찰부 및 그 통괄에 속하는 경찰서와 경찰분서 등은 폐지하게 되었고, 1910년 6월 29일 제국 정부는 통감부 경찰관서관제(警察官署官制)를 발표하여 경무총장, 경무관, 경무부장, 경시, 경부, 기사, 통역관, 기수(技手), 통역생, 경찰의(醫), 순사, 순사보를 배치하고 통감의 직속하에 중앙에 경무총감부를,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해 지방행정기관의 외부에 독립시켰다. 그리고 경무총장은 한국주둔 현병의 최고 수장인 육군장관을 경무총감부의 수장으로 삼았다.

경무총장은 통감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경무부장은 각 도의 현병대장인 육군좌관이 맡도록 해서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도록 했고, 수도 경성은 정치적 또 지리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경무총장이 직접 경찰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경시, 경부가 맡도록 하고 경찰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경찰업무는 현병 분대와 그 파견소가 경찰관서로서 이를 맡기로 했다. 따라서 현병 분대장과 파견소장인 현병 장교, 준사관(准士官), 하사는 물론 다른 지역의 현병 장교, 준사관, 하사에 대해 필요에 따라 경시 또는 경부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주둔 현병의 수장인 현병대 사령관 및 현병대장은 한편으로는 통감부 경찰관으로서 일반 경찰관을 지휘하는 동시에 현병 역시 통감부 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보통경찰 및 위생경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군사경찰 이외에 경찰과 현병은 완전히 그 임무가 동일하고 명령체계 또한 통일되어 있었다. 때문에 종래의 중복배치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각 도내의 관할구역은 그 지방에 적합하도록 정리하여 그 통일과 보호의 보급을 도모하고, 배치는 대체로 철도연선 및 개항(開港) 지역에는 경찰관을,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및 벽지나 국경지역에는 현병을 배치하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을 피하고 경찰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했다.

3. 총독부의 설치

1910년 8월 체결된 한국병합조약은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실시되면서 통감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통감부 경찰관서는 조선총독부 경찰관서로 개편되었고 종래의 각국의 거류지에 있던 거류지 경찰관은 한국이 각국과 맺은 조약이 무효가 된 당연한 결과로서 철거되어 현병경찰의 통합제는 당면 현 상황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는 시설로서 여전히 그 제도를 답습하였다.

총독부 설치 이후에는 한층 더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기울이면서 같은 해 12월 현병 침 경찰의 관할구역 및 직원 배치를 개정하여 몇 차례에 걸쳐 산재(散在)제도를 실시하고, 주재소 한 곳의 순사, 순사보를 통해 많게는 10여명, 적게는 5, 6명이었던 것을 일본인 순사 1명 혹은 2명 외에 조선인 순사보 2명 내지 4명을 두게 하였다. 이어서 1915년 3월에는 경찰관서관제를 개정하여 경무총감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던 경성의 경찰 및 위생 사무를 경기도 경무부장의 권한으로 옮기고, 또한 경무부장의 경무부령을 발포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도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한 이래로 직원의 증감, 관할구역의 정리 및 시대에 따른 여러 법규의 발포, 시설을 개선하면서 경찰현병의 통합제도를 실시한 지 10년에 이르렀다.

4. 제도 개정

사회 상황이 매년 변천하고 특히 세계대전 아래로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경찰현병 통합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점차 각지에서 일어나 묘의(廟議) 또한 총독정치의 근본적 혁신과 더불어 현병을 경찰집행 기관에서 제외하고 완전히 보통경찰로 환원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1919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하여 총독부에 경무국을 두고 경찰 및 위생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관서관제를 폐지하고, 지방관관제를 개정하여 경찰권을 도지사에 이관시켰다. 각 도에는 제3부를 두어(제3부는 1921년 2월 지방관제의 개정으로 □□□로 개칭) 도사무관을 제3부장(□□□□로 개칭)이 맡도록 했고, 각 부군도(府郡道)에 경찰서를 설치해 경시, 경부가 경찰서장을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지방관들로

하여금 경찰·위생 업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여 민중적 경찰제도의 확립을 꾀하였다. 또한 경시, 경부 아래에 새로이 경부보를 설치했고, 또 종래 조선인에 한정해 임명한 순사보의 계급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순사로 함으로써 경찰 관리의 쳐우를 개선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혁신되어 일본 내지와 동일한 경찰제도가 된 조선의 경찰은 착실히 요원의 보충에 힘쓰면서 같은 해 11월 4일자로 현병으로부터 사무를 완전히 인계받음으로써 명실상부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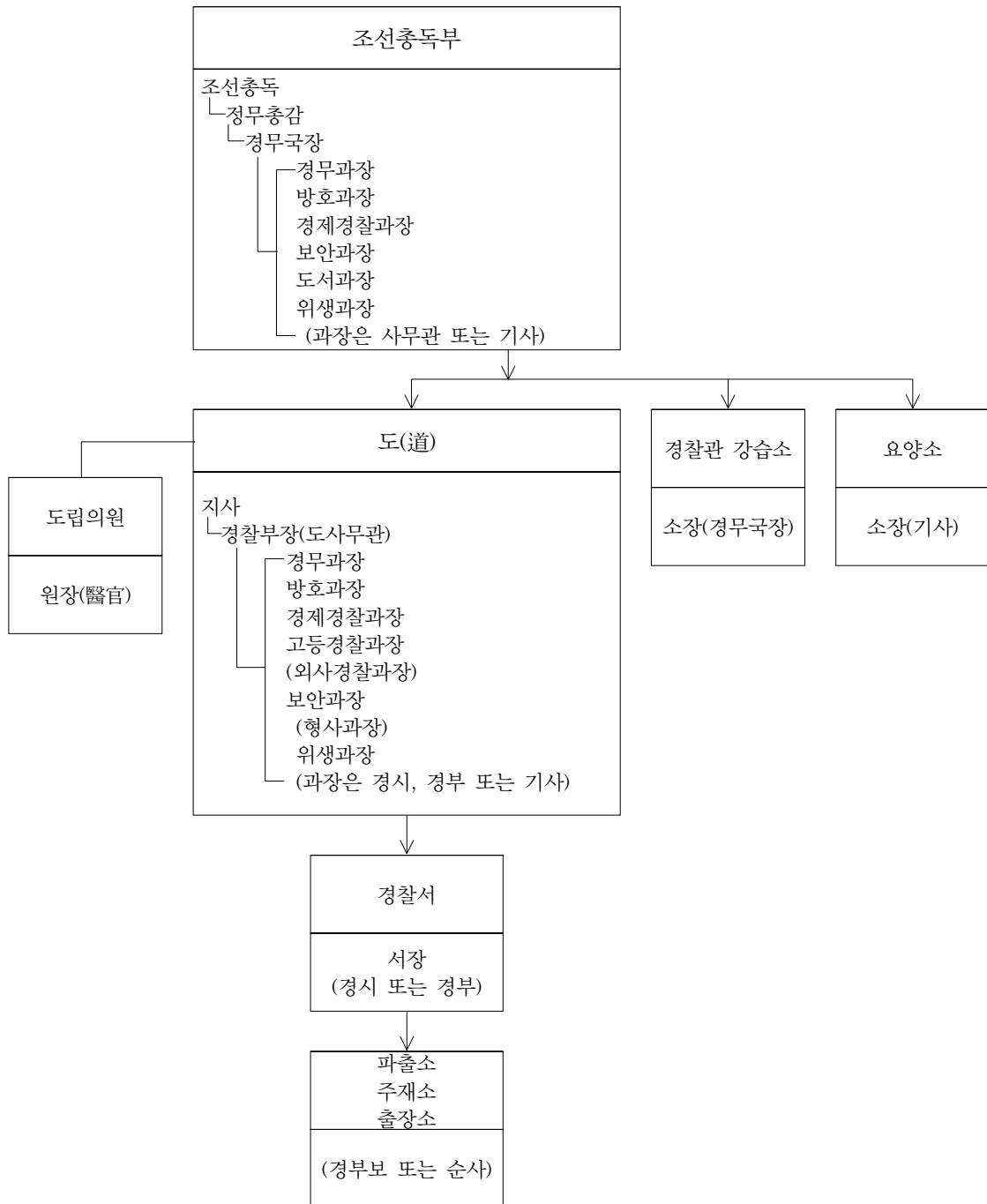
5. 현재의 경찰력

경찰제도의 개신과 더불어 관할구역의 정리 및 시대에 따른 여러 법규의 발포, 경비전화이 증설, 경비선의 증가, 경찰청사의 신축, 피복 개선과 그 밖의 종래의 시설들을 개선하였다. 특히 제도 개정과 동시에 경시 이하 10,561명의 경찰관을 증원했는데, 개정 이전의 현병을 경찰관으로 간주한 총 인원 14,501명에 비하면 사실상 2,382명이 증원되었다. 이어서 1920년 2월에는 치안유지상 경찰관서의 증설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인원 증원의 필요성이 있어 경시 이하 3,254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1921년 국경 주둔 현병 및 수비대의 감원으로 인한 보충으로서 경시 이하 621명을 증원하여 총 20,758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합병 이래 최대 인원이 되었지만, 1922년 4월과 1923년의 행정 정리로 경시 이하 2,313 명이 감원된 이래 몇 차례 증원과 감원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총 인원은 경찰부장 이하 23,898명이다. (제10표 참조)

제2장 경찰기관

경찰기관으로서는 총독부에 경무국을 두고 경무국장 이하 사무관, 이사관, 기사, 통역관, 속(屬), 기수, 통역생 등을 배치하여 경찰 및 위생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지방에는 도(道)를 두고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고 도사무관을 경찰부장으로 하여 그 밑에 경시, 기사, 항무의관(港務醫官), 수의관(獸醫官), 경부, 속, 기수, 항무의관보, 수의관보, 경부보, 순사 등을 배치하는 동시에 각 부군도(府郡島)에는 경찰서 두고 그 아래에 파출소, 주재소, 출장소 등을 설치해 필요한 경찰 관리를 배치함으로써 치안유지 및 인민보호의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제3표 참조)

조선경찰기관 일람도



비고>

형사과는 경기도에만 둔다.

외사경찰과는 경기·함경북도에만 둔다.

(1) 조선총독부관제 초록

-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 제2조 총독은 친임(親任)으로 한다.
- 제3조 총독은 제반 정무를 총괄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上奏)를 하고 허가를 받는다.
- 제3조의 2 총독은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의 사령관에게 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총독은 그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거해 조선총독부령을 발포하고, 이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구류,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 총독은 소관 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에 있어서 제규(制規)에 비추어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 총독부에 정무총감을 둈다.
정무총감은 친임으로 한다.
정무총감은 총독을 보좌하고 업무를 통괄하고 각 부처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12조 국장은 각 국의 장으로서 총독 및 정무총감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 제16조 사무관 및 이사관은 상관을 명을 받아 업무를 본다.
- 제18조 기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을 맡는다.
- 제19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통역을 맡는다.
- 제20조 속, 통계관보, 편수 서기, 기수 또는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통계, 교과용 도서의 편수 및 검정에 관한 사무, 기술 또는 통역에 종사한다.

(2)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 초록

- 제5조 지사는 조선총독에 예속되어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소부(所部)의 판임관 이하의 진퇴는 지사가 이를 행한다.
- 제6조 지사는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령(道令)을 발령할 수 있다.
- 제8조 지사는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에 구상(具狀)해야 한다. 다만 비상시일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지방에 주둔하는 군대의 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각 도에 지사관방, 내무부 및 경찰부를 둔다.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를 지정하여 산업부를 설치할 수 있다.
관방 및 각 부의 사무 분담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 제13조 부장은 사무관이 이를 맡기로 하고, 지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 한다.

경찰부장은 경찰 및 위생 업무의 집행에 관해 지사의 명을 받아 경시, 경부, 경부보, 순사 및 소방수를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의 2 경시는 지사의 명을 받아 경찰 및 위생 업무를 분담하고 부하인 경부, 경부보, 순사 및 소방수를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의 4 항무의관(港務醫官)은 상관의 명을 받아 해항 검역 및 의무(醫務)를 맡는다.

제15조의 5 수의관(獸醫官)은 상관의 명을 받아 수의에 관한 검역, 검사 및 의무를 맡는다.

제15조의 6 기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을 맡는다.

제16조 경부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경찰 및 위생 업무에 종사하고 부하인 경부보, 순사 및 소방수를 지휘 감독한다.

항무의관보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해항 검역 및 의무에 종사한다.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기술에 종사한다.

수의관보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수의에 관한 검역, 검사 및 의무에 종사한다.

경부보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경찰 및 위생업무에 종사하고 부하인 순사 및 소방수를 지도 감독한다.

제16조의 2 각 부군도(府郡島)에 경찰서, 경성부, 부산부 및 평양부에 소방서를 둔다. 단 조선총독은 지방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구역을 정해 □□□를 설치할 수 있다.

경찰서 및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16조의 3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경시 또는 경부가 맡도록 한다.

경찰서장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경찰 및 위생업무를 관리하고 부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소방서장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소방업무를 관리하고 부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16조의 4 각 도에 순사를 두고 판임관 대우를 한다.

경기도, 경상남도 및 평안남도에 소방수를 두고 판임관 대우를 한다.

소방수는 소방서에 속하고 상관의 지휘를 받아 소방업무에 종사한다.

순사 및 소방수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3) 조선총독부 사무분담규정 초록

제11조 경무국에 경무과, 방첩과, 경제경찰과, 보안과, 도서과, 위생과 및 발파기술원 양성소를 두고 경무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무를 본다.

1.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2. 경찰구획 및 경찰직원의 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3. 기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경찰의 □□ 및 총기탄약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소방관리의 공로 기장에 관한 건
6. 국경경비 경찰직원 및 유족 일시금에 관한 건
7. 병사에 관한 사항

8. 경찰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9. 발파 및 화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내(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한 사항

발파 기술원 양성소에서는 발파 기술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방첩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방공에 관한 사항
2. 소방 및 수방에 관한 사항

경제경찰과에서는 경제경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보안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2. 노무자 모집 단속에 관한 사항
3.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도서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신문지, 잡지 및 출판물에 관한 사항
2. 저작권에 관한 사항
3. 검열의 신문지, 잡지 및 출판물 보존에 관한 사항
4. 활동사진 '필름'의 검열에 관한 사항
5. 활동사진영화의 단속에 관한 사항
6. 죽음기 '레코드'의 단속에 관한 사항

위생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의생, 산파, 간호부 및 종두 위생에 관한 사항
3. 약품 및 매약에 관한 사항
4. 병원에 관한 사항
5. 틀니, 이발, 안마 및 침술영업에 관한 사항
6. 묘지 및 매장·화장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이출우(移出牛) 검역에 관한 사항
9. □□변소에 관한 사항
10. □□□ 및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

(4) 조선총독부 도(道)사무분장규정 초록

제4조 경찰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경찰에 관한 사항
2. 위생에 관한 사항

3. 경찰문서의 왕복, 기록, □□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경찰 직원의 처우, 상벌 및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단 판임관 이상의 자를 제외
 5. 병사(兵事)에 관한 사항
 6. 방공에 관한 사항
- 제5조 각 부(部)에 과(課)를 둘 수 있다.
과의 설치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도지사가 이를 정한다.
- 제6조 각 과의 분담 업무는 도지사가 이를 정한다.

(5) 조선총독부 위임사항규정 초록

- 제2조 각 국장, 각부부장, 과장, 수석비서관 및 심의실 수석사무관은 아래 사항을 전행(專行)할 것.
1. 부하 직원의 근무 지정, 단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제외
 2. 부하 직원 및 그 주관에 속하는 관서 장의 청원휴가 승인 □□출사 명령 및 관리 복무기율에 따른 출원의 승인. 단 경성제국대학 총장 및 도지사를 제외
 3. 부하 직원 및 그 주간에 속하는 관서 장의 일본·조선 및 암록강, 두만강 건너편으로의 출장 명령. 단 경성제국대학 총장 및 도지사를 제외
 4. 부하 직원의 만주국 및 지나 출장 명령. 단 과장을 제외
 5. 부하 직원의 진퇴 및 상여
 6. 사업비소속관인의 진퇴 및 상여
 7. 1건의 금액 1만 원 이하의 국고보조
 8. 별도로 결재를 받아 내시(內示)한 국고보조의 집행. 단 보조금액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를 제외
 9. 보조공사 설계의 변경. 단 이를 위해 국고보조 금액 1만 원(농림국장의 경우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10. □□ 공사에 속하는 연도내 실시 계획의 결정 및 그 변경
 11. 1건의 예정가격 또는 평정가격 2천 원 이하의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
 12. 법인의 정관 변경의 허가
 13. 보고 및 □서의 처리. 단 중요한 것은 즉시 총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14. 사무상 정례일 경우, 혹은 간단한 사항에 관한 청원, 조회, 회답, 통지와 청원 및 의견 제출에 대한 비준
- 제9조 경무국장은 아래 사항을 전행(專行)할 것
1. 조선총독부 경찰관 □□소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2. 경찰관리에 협력 원조함으로써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자에 대한 1927년 칙령 제9호에 따른 급여. 단 급여금액 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3. 경찰관리의 □□□□
 4. 경찰관리의 □□ 및 □□의 □□, 급여 및 대여

5. 총기탄약의 □□.
6. 총포화약류 제조 단속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허가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검사
7. 총포화약류단속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8. 총포화약류단속령 제9조, 동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
9. 총포화약류단속령시행규칙 제3조의 검사 및 동 제26조의 허가
10. 인화물질 저장소 단속규칙 단속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령
11. 화약 판매 영업의 허가 가부 및 화약류의 반출 허가에 관한 지휘
12. 기부 금모집의 처리 및 3만 원 이하의 기부금 모집의 허가
13.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
14. 항만 내의 선박 항행의 단속
15. 경찰관 강습소의 강습료 및 교습료의 수업기간 단축의 풍선에 대한 지령
16. 노동자 모집 단속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및 동 단속절차 제2조,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령
17. 출판물의 단속에 관한 사항
18. 신문지의 단속에 관한 사항. 단 신문지 발행 허가, 정지 및 금지처분 및 신문지 발행 인가, 정지 및 인가 단속 처분을 제외
19. 활동사진영화 단속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상영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이출(輸移出) 허가
20. 활동사진 '필름'검열규칙에 따른 검열
21. 1933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47호 축음기 레코드 단속규칙에 따른 축음기 레코드 단속에 관한 사항
22. 의사, 위생, 치과의사, 틀니영업자, 약제사, 의업, 수의사 및 수의업의 면허. 단 재면허 및 금지의 □□를 제외
23. 틀니영업 단속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24. 의사 면허증, 의생 면허증, 치과의사 면허증, 틀니업 면허증, 약제사 면허증, 수의사 면허증 및 □□□ 면허증의 □□□□□
25. 조선 산파 규칙 제1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26. 조선 산파학교 및 산파양성소 지정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27. 조선 간호부 규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
28. 조선 아편 단속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양귀비 재배 구역의 지정 및 조선 아편 단속령 단속 절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
29. 조선마약단속령 제1조 제1항 제12호, 동 조 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30. 마약 □매□(□賣□)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31. 조선마약단속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동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 32. 소독약품 검정의 처리
- 33. 전염병예방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
- 34.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품의 지정
- 35. 전염병 예방비 보조 내규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 36. 조선 가축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품의 지정
- 37. 이출우(移出生) 검역소에서의 소의 개별 관리 및 선박 탑재의 요금 인가
- 38. 1924년 조선총독부령 제63호[선박법 제1조 등의 일본선박의 불개항(不開港) 출입에 관한 건]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기항지의 지정
- 39. 읍에 조선 오물청소령 및 동 령 시행규칙의 준용에 관한 지휘
- 40. 조선경찰협회 지부 후원회의 1만 원 미만의 차입의 관리

(6) 조선총독부소속 관서위임사항규정 초록

- 제1조 각 관서의 장은 특별히 규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라 전행(專行)할 것
- 제2조 각 관서의 장은 아래 사항을 전행할 것
 - 1. 부하 직원 근무의 지정, 단 도에서는부장을 제외
 - 2. 부하 직원의 □□의 가부, □□출사 명령 및 관리복무기율에 따른 신청 가부
 - 3. 부하 및 소관 직원의 일본, 조선, 만주국 및 지나 출장 명령, 단 도의 부장의 만주국 및 지나 출장 명령을 제외
 - 4. 소송비용 관할 10원 미만의 민사사송의 제기
- 제14조 도지사는 아래 사항을 실행할 것
 - 1. 부하와 직원의 사망 위로금 수당 및 급여
 - 2. 소관 직원의 근무의 지정, 단 도립의원장, 부윤, 군수, 도사 및 경시인 경찰서장을 제외
 - 3. 포장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천원 미만의 기부에 대한 감사장 수여
 - 4. 경찰관 파출소 및 경찰관 주재소 관할 구역 설정
 - 5. 순사 정원 배치
- 제15조 전 각호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자는 전행 사항을 비교해 간단한 사항을 각 전행할 것.
- 제16조 전행 사항과 □ 중요한 것은 의견을 첨부해 총독의 결재를 받을 것.
- 제17조 전행 사항 중에서 총독부 명의 또는 총독 명의로 시행해야 할 것은 사전에 정례를 만들어 총독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장 경찰관할

경찰 관할은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나의 부(府)와 군(郡)에 하나의 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의 사정에 따라 두 개의 경찰서 이상을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다. 현재 221개의 부군도(府郡島)에 255개의 경찰서를 두고 있어 부군도의 숫자에 비해 17군데가 초월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찰서의 관할 면적은 일본 각지에 비해 광대하고 1,500평방킬로미터(약 97만 필) 이상인 곳이 27군데 있다. 특히 함경남도 풍산(豊山)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3,926평방킬로미터(254만 필)에 달한다. 또한 300 평방킬로미터(120만 필□) 이상인 곳도 93군데나 있는데, 함경북도 훈계(訓戒)경찰서 같은 경우 불과 154평방킬로미터(10만 필)에 지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개별 경찰서의 평균 면적은 약 865평방킬로미터(약 54만 필)에 달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풍산경찰서는 혁준한 산악의 고산지대에 있고 훈계경찰서는 만주국 훈춘과 마주하고 있어서 국경 경비와 관계가 있는 곳이다. 또 인구와 가구 수는 일반적으로 희박해서 하나의 경찰서가 관할하는 평균 인구는 90,538명이고, 그 중에서 15만 명 이상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조선 전체에서 27군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불과 2만 명 미만인 곳이 13군데 있는데, 함경북도의 국경지방이 가장 희박하다.

경찰서 관내에는 경찰관 파출소, 주재소 및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파출소는 경찰서 소재지에, 주재소는 경찰서 소재지 외에 두고 대체적으로 하나의 면에 주재소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정황에 따라서는 한 면에 두 개 이상을 설치한 곳도 있다. 출장소는 국경지방의 경비 또는 철도공사를 비롯한 그 밖의 특별한 경계를 필요로 하는 사정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재소는 현재 전체 2,339개의 읍면에 대해서 2,387군데 있으며, 시가지를 제외한 각 경찰서는 소재지 면을 직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 면에 주재소 하나가 있다. 또 파출소는 291군데 있으며, 출장소는 323군데 있다. 주재소의 출장소 부담 면적은 일반적으로 광대하고 함경북도 삼장(三長)경찰서 농사동(農事洞) 주재소는 1,048평방킬로미터(□□□□), 동 연□(延□)경찰서 수침(水砧)주재소, 삼사(三社)주재소, 연암(延岩)주재소는 각 647평방킬로미터(42만 필), 각 주재소의 면적 462 평방킬로미터(30만 필) 이상인 곳이 평안북도와 강원도에 각 5군데 있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도 다수 있는데, 이곳은 모두 관할 면적인 광대한 데 비해 인구는 희박하다.(표 3·4·5·6 참조)

제4장 경비시설

1. 경비선

1910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폭도들의 대토벌을 실시했을 때, 소탕작전에서 벗어난 비도들은 해안의 섬에 도망가서 해적들 무리에 합류하여 여러 섬에 출몰하여 업자를 압박하거나 섬 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등 그 횡포함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이를 진압, 단속하기 위해 구 한국정부는 우리 통감부

에 경비선 10척, 순찰선 6척의 건조와 선원 고용을 의뢰함에 따라 우리 통감부는 이에 응해 같은 해 선박의 준공과 더불어 경비선은 경무국의 소관으로 하고 전라남도 목포와 여수에 해상 경비소를, 전라 북도 줄포(茁浦)에 해상 출장소를 설치했다. 이로써 남으로는 경상남도 부산에서 북으로는 충청남도 안면도에 이르는 해안 및 해면의 경비를 맡도록 했고, 다른 6척은 세관 소속으로서 인천 이북의 밀어선 및 밀수입 단속을 함께 맡도록 했다. 이것이 곧 해상경찰의 시초이다. 해적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는 동안 우연히 1910년 12월에 남만주에 흑사병이 발병하게 되면서 그 방역 경계를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형편이 되면서 응급조치로 수차례 육군성으로부터 선박을 빌려와 조선연안 및 압록강 등지의 방역 임무를 맡도록 했다. 또한 그 이후 교통이 열리게 되면서 점차 연안 해상을 경비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해군성 소관의 배의 보관 전환을 받거나 혹은 기선을 새로 건조하여 충실을 꾀했다. 현재는 기선 4척, 발동기선 19척을 주요 항만 21곳에 배치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해상 경찰서는 부산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소재 육상 경찰서가 해상경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처럼 경비선은 처음에는 주로 해적 및 폭도 소탕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운의 발달과 어업의 진흥에 따라 해상경비가 매년 복잡하게 되었고 그 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국외의 불온한 무리들이 국경지방의 경비가 엄중함을 피해 소형범선이나 지나의 용극선(戎克船)을 이용하여 조선으로 침입하려는 경향이 현저해졌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지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비선 대부분은 소형선이기 때문에 풍랑을 헤치고 바다 멀리 나가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상 연안경비에 불충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경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형기선이 필요하지만, 경비 문제로 인해 아직 건조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국경을 경비하는 용도로서 현재 배 아랫부분이 깊게 잠기지 않는 소형발동기선 및 ‘프로펠러’선 각 1척을 배치하고 있다.(□□□□□)

2. 경비전화

1907년 7월의 정변에 폭민들이 각지에서 봉기하여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던 전신, 전화선을 절단하고 전주를 절도(折倒)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를 진정(鎮定)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13만여 원을 지출하여 피해선로의 복구를 겸해 시국상 필요한 전선을 가설했다. 그 뒤 이들 폭도들은 수비대, 경찰, 현병 등의 위력으로 점차 퇴패, 괴멸하게 되었지만, 그 잔당들은 흩어져 토비초적(土匪草賊) 무리가 되어 각지에 출몰하면서 지방의 양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는 통신교통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쉽사리 그들을 섬멸할 수 없어서 우리 통감부는 각지의 통신망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폭도 소탕은 물론 경찰보안상 가장 긴급한 과제임을 느끼고 한국 정부의 사업으로서 각지 경찰서를 연결하는 경비 전화선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비대, 현병대 및 우체국 등을 연결하여 통신의 편리를 도모한 것이 경비 전화의 시초이다.

이리하여 일한병합과 동시에 경무총감부에서 경비 전화를 관리하고 내실을 다질 계획을 실시한 덕분에 1919년 7월(□□□□□) 그 연장 길이가 6,468킬로미터, 같은 해 독립소요사건 당시 통신기관이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탓에 경찰과 현병은 각지에서 고립 상태에 빠져 예상치 못한 참상을 입게 되었

다. 그래서 통신망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1920년, 21년에 경비 200여만 원을 투자해 경성을 중심으로 부산, 신의주, 함흥, 공주 등을 연결하는 장거리 경비 전용 전화선을 설치하였다. 그 뒤 점차 주요지역에 경비 전용 전화선을 설치하여 1940년 말에 이르러 23,900킬로미터에 달해 각 도의 경찰부에 경무국에서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회선은 모두 접속량이 많고 점차 통신이 폭주한 탓에 종종 긴급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경찰서 중에 경비 전화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32군데나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별도로 지방 유지들의 도움으로 경남, 전남, 강원, 황해도를 비롯해 평북, 함북, 경북, 함남, 평남에서도 경찰 전용 전화 시설에 착수하여 1940년 말 현재 28,000킬로미터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연락이 가능하게 된 경찰서 주재소와 그 밖의 파출소, 출장소 1,560군데가 되면서 경찰 통신망은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경비 전화망은 과거 그 통신망이 매우 희박한 과도기에 회선을 너무 혹사시켰고 중요회선 역시 연선의 다수의 경찰서나 파출소 등을 접속한 탓에 능률이 현저히 떨어져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래에 회선 설비의 개선은 경비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긴요한 사항이다.

제5장 경찰비

병합 당시, 즉 1910년에는 경찰비 2,896,000원, 현병 보조원비 163,000(조선인 현병 보조원에 필요한 경비), 합계 3,059,000원이었지만, 1911년 보통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현병에 대한 경비도 경찰비로 부담하게 되면서 특별회계에서 연 30,800원을 계상하여 제도가 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경찰비는 매년 증가하여 1918년에는 경찰비 4,357,000원, 현병비 2,469,000원, 현병 보조원비 1,177,000원으로 계 8,003,000원이었지만, 1919년에 경찰□□이 개정되면서 현병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찰관의 증원 등으로 9,730,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총액은 17,734,000원이었다. 1920년에는 6,213,000원의 증액이 있었고 총액은 23,948,000원으로 크게 팽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증액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정세의 변천에 따라 경찰 시설은 더욱 확충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서 경비의 증액이 시급했지만 예산 관계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21년에는 1,983,000원 감액되었다. 1922년에는 국경 경찰관의 증원에 필요한 경비와 그 밖의 경비로 291,000원 증액되었으나 그 뒤 행정개편으로 1923년 188,000원, 1924년 93,000원, 1925년 2,303,000원 감액되었다. 1926년에 이르러 국경 경비 등으로 인해 98,000원, 1927년에는 처우 개선에 따라 354,000원, 1928년에는 사상 단속 등으로 185,000원, 1929년에는 위생방역 등으로 688,000원 증액되었다. 1930~32년에는 다시 감액되었고 1934년에는 병원비 삭감이 있었다. 이처럼 매년 감액되면서 그간에 내용에 있어서 다소 증액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1936년에는 총액 20,070,412원이었다. 1937년에 조선인 순사 등의 처우 개선, 북부산(北釜山)경찰서와 평양 선교(船橋)경찰서의 신설, 순사 교습생 정원제 신설 등으로 709,169원, 1938년에는 신설 역 단속, 방공법 시행, 위생방역, 청원순사 증원 등으로 460,192원, 1939년에는 신설 역 단속, 순사 교습생 정원 증가, 건축단속, 화약단속, 항공 가봉(加俸)제도 실시, 경찰 전용 전화 유지비 증가, 아편단속, 가축 결핵 예방령 제도 및 이출우(移出牛) 검역용 선박비 등으로 379,515원, 1940년에는 신설 역 단속, 병사

사무 증가에 따른 증원, 순사 피복비 부족액 보충, 기부 채납(採納)에 따른 전화 유지비 증가, 아편단속, 대우 관리 봉급 정률 개정 등으로 2,055,933원이 증가하여 총액 23,675,221원이 되었다. 1941년에는 아래와 같이 증·감액되어 현재 24,551,029원이다.

기(記)

1941년도 증감 내역

- 부(府) 소재 경찰서장, 경시를 경찰서장으로 배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13,574원
- 경성 성동경찰서 신설에 필요한 경비 47,828원
- 재류지(在留地) 징집제도 실시에 필요한 경비 189,545원
- 나진 배치 경비선 승무원을 기수(技手)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경비 3,944원
- 원동기 자동차 단속 기술원 증원에 필요한 경비 6,711원
- 청원순사 증원에 필요한 경비 18,350원
- 경부보 봉급 예산 정률 정리에 필요한 경비 87,879원
- 경부보 순사에 정근가봉 지급에 필요한 경비 99,087원
- 도절비부족액보충 65,016원
- 경부보 피복대금 예산정률 정리에 필요한 경비 7,375원
- 경비용 마필 사료비 증액에 필요한 경비 3,318원
- 춘천, 양양 외 3구간 경찰전용 전화 가설에 대한 유지비 11,260원
- 경성부 내의 경찰전용 전화 유지비 증가 767원
- 기부 채납과 관련한 경찰전용 전화 유지비 23,995원
- 경찰관서 청사 대여에 필요한 경비 9,961원
- 청진 소방서 신설에 따른 경비 6,466원
- 지방청의 방공훈련에 필요한 경비 15,950원
- 방공통신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30,000원
- 외사경찰요원 증원에 필요한 경비 82,218원
- 도기사(道技師)인 위생과장 배치에 필요한 경비 8,864원
- 약품 및 위생 재료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비 8,571원
- 공의(公醫) 증원에 필요한 경비 73,100원
- 해주항 개항에 따른 해항 검역 시행에 필요한 경비 18,657원
- 탄저 예방에 필요한 경비 6,643원
- 광견병 예방주사에 필요한 경비 7,075원
- 청사 등의 수리에 필요한 경비 18,490원
- 나진청 설치 보류에 따른 인건비 정리
- 조선인 관리의 봉급 예산정률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비 7,280원

- 대우 관리의 봉급 예산정률 개정에 필요한 경비 1,008,960원
- 일반경비에서 경무(警務)경비로 개편 25,939원
- 동 (방공법 시행에 따른 경비) 35,458원
- 1940년도 중원의 실행상 억제한 인원에 대한 경비의 감소 △32,000원
- 동 (나진청 안(案)의 폐지) △22,963원
- 인원 감소 및 상여 계상에 필요한 경비의 증감 △25,642원
- 예산개편 지방청 사무비 선박제비(諸費) 감소 △3,272원
- 동 동 동 집행 및 송달 사무비 증가 5,300원
- 동 동 집행 및 송달 사무비 집행 및 송달 사무비 △5,300원
- 동 동 사무비 공제조합 급여금 감소 △1,457원

제6장 경찰직원

1. 정원

조선은 병합 이래 경찰현병통합제도를 실시하여 1919년에 경찰관 6,322명, 현병 8,179명, 계 14,501명이었는데, 같은 해 8월 보통경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일본인 경시 8명, 조선인 5명, 일본인 경부 121명(단 조선인 경부에 12명 증원), 일본인 경부보 596명, 조선인 266명, 일본인 순사 4,828명, 조선인 4749명, 계 10,561명을 증원하여 현병을 경찰기관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2,382명이 증원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치안유지상 경찰관서의 증설 및 직원 증가에 필요성이 있어서 1920년 2월 경시 이하 3,254명을 1922년 국경현병 감원에 대한 보충을 위해 일본인 경시 1명, 일본인 경부 8명, 일본인 경부보 12명, 일본인 순사 600명, 계 62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20,758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23년 4월 행정 정리로 인해 일본인 경시 1명, 일본인 경부 8명, 일본인 경부보 12명, 조선인 6명, 그 외의 순사 등을 합쳐 124명을 감원하였다. 또 1924년 12월이 행정 정리로 경시 이하 2,189명을 감원하게 되었다. 그 뒤 사상단속, 병사사무, 사업 발흥에 따른 단속 및 지나사변의 발발로 인한 각종 단속 등을 위해 증원하였고, 이후 수차례 증·감원이 이루어져 1940년 말 현재 총 정원은 경찰부장 이하 23,898명이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경찰부장 13명, 경시 79명, 경부 516명, 경부보 974명, 순사 22,306명이다.

그 밖의 경찰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경무국장 이하 사무관, 이사관, 지사, 통역관, 속, 기수, 통역생 등 99명, 각 도에 기사, 항무의관, 수의관, 항무의관보, 속, 수의관보, 기수 등 196명으로 계 295명이다. (제10표 참조)

2. 현 인원과 급여

1939년 말 현재 경찰관 인원(청원 배치된 자를 제외)은 20,259명, 경찰부장 13명, 일본인 경시 72명, 조선인 7명, 일본인 경부 399명, 조선인 71명, 일본인 경부보 711명, 조선인 118명, 일본인 순사와 순사

부장 10,942명, 조선인 7,928명으로 합계 일본인 12,135명, 조선인 8,124명이다.

현 인원에 대한 월 평균 봉급은 일본인 경시 132원 57전, 조선인 133원 32전, 일본인 경부 70원 9전, 조선인 73원 68전, 일본인 경부보 52원 54전, 조선인 53원 73전, 일본인 순사 43원 3전, 조선인 42원 95전이다. 일본인에게는 그 밖에도 4할 내지는 8할의 가봉(加俸)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봉만을 일본 각 부현(府縣)의 평균 봉급액과 비교하면 경부, 경부보는 약 1부 5리, 순사는 2할 4부의 낮은 수준이다.(제14표 참조)

3. 근속년수

현재의 경찰관 중에 제도 개정 이전부터의 근속자 또는 제도 개정 때 각 부현에서 온 자는 비교적 적고, 대부분은 제도 개정 이후 퇴직자 보충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자들이다. 1940년 말 현재 1년 미만인 자는 2,533명,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는 2,187명, 2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5,939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5,099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는 2,785명, 15년 이상인 자는 1,779명인 상황이다. (제15표 참조)

4. 연령

경찰관 중에 경시의 연령은 50세 이상, 경부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가 가장 많고, 현 인원에 대해 경시는 48.1%, 경부는 48%이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40세 미만인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을 통틀어 경부보는 85%, 순사는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인 자는 경시 이하 불과 236명으로 총 인원의 1.1%이다. 다시 말해 조선의 경찰관은 거의 40세 미만인 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6표 참조)

5. 본적

일본인 경찰관은 구마모토현(熊本縣) 출신자가 가장 많은데, 그 수는 1,118명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1,093명, 후쿠시마현(福岡縣) 958명으로 대체로 규슈(九州), 주고쿠(中國) 방면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긴키(近畿), 히카이도(北海道) 방면은 그 숫자가 매우 적고, 가장 적은 곳은 사할린 2명, 히카이도 21명이다.

또 조선인 경찰관의 본적지별 인원은 평안북도 912명, 함경남도 792명, 경기도 760명으로 대개 그 본적지인 도에 근무하고 있다. (제17표 참조)

6. 병적관계

경부 이하의 일본인 경찰관 현 인원 12,171명 가운데 병적관계가 있는 자는 경부 이하 육군 7,610명, 해군 414명, 합계 8,024명으로 현 인원의 6할 5부에 해당한다. 특히 국경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은 9할 정도가 병적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병역별로 구분하면 현역 귀휴(歸休) 9명, 예비역 1,725명, 후비역(後備役) 2,877명, 보충역 2,999명이다. 그중에서 장교 199명, 준사관 15명, 하사관 970명, 병 3,981명, 미교육 제1보충병 2,545명이다. (제18표 참조)

제7장 경찰관의 교양

1. 순사의 모집

조선 전토에 배치하는 일본인 순사의 모집은 경찰관 강습소에서 실시하고 조선인 순사의 모집은 각 도의 경찰부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일본인 순사는 경찰관 강습소에서 매달 1회(제3□□□) 채용시험을 시행하고 또는 일본 본토의 3개 현 내지 4개현을 하나의 모집구역으로 정해서 중추 도시를 시험장소로 선정해 모집관을 파견하여 채용시험을 시행한다. 그래서 매달 약 200명 정도를 채용하여 입소시켜 교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 순사는 각 도의 경찰부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것 외에 지원자의 편의상 필요한 경찰서에 시험을 위탁하고, 그 도의 결원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해 교습을 실시한다.

한편 채용 성적을 보면 1940년 일본인 지원자 4,458명 가운데 1,486명을 채용하였고 채용 비율은 33.3%이고, 조선인 지원자 5,587명 가운데 채용자 858명으로 채용 비율은 15.3%이다. 그 밖의 각 도의 특별 채용자는 일본인 99명, 조선인 35명이다. (제19표 참조)

2. 교양기관

경찰 관리의 교양기관으로서는 경성에 경찰관 강습소가 있고 각 도에 순사 교습소가 있다.

1905년 1월 경무(警務)고문 시절에 한인 순검(순사)의 교양기관으로 시작해 경성에 경무학교가 창설되었는데, 1908년 11월 고문제도와 함께 폐지하고 내부 경무국에 새로이 경찰교습소를 설치하여 주로 일본인 순사의 교양 훈련을 실시해왔다. 그 뒤 경찰과 현병 통합 시절에는 경무총감부의 일개 분과로 만들어 경찰관 연습소로 개편해 소장 이하 교관으로 대개 총감부원들이 겸무하도록 하고 1기 정원 50명의 일본인 순사 교습 및 경부 이상에 대한 단기 교양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1919년 8월에 제도 개정과 더불어 새로이 조선총독부 경찰관 강습소 관계가 발표되어 현재 소장 이하 교수 3명, 조교수 6명, 서기 2명, 그 밖의 강사와 촉탁 등의 직원들을 두고 교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찰관 강습소에서는 강습과와 교습과라는 두 과를 두고, 강습과는 여름에 본과와 별과로 나누어 본과는 각 도지사의 추천으로 현 감독자인 자 또는 장래 감독자가 될 자 약 30명을 선발하여 매년 1년 이내를 1기로 하는 장기 강습을 실시하고, 별과는 형사, 회계, 병사(兵事), 어학, 원동기 또는 총포화약 특수 실무를 교양하기 위해 수시로 각 도에서 필요 인원을 소집하여 단기 강습을 실시한다. 교습소는 초임 일본인 순사에 대해 4개월을 1기로 하고, 매기마다 350명을 수용하여 오로지 인격의 수양과 실무 교습에 노력하고 있다.

또 각 도의 순사 교습소는 경찰부에 두고 초임 조선인 순사에게 3개월 내지 4개월의 교양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관은 경찰부 직원들이 맡고 있다.

초임 순사에 대한 교습과목은 보통훈육, 법학대의(大意), 경찰법, 형법, 위생대의, 소방, 조선사정(□인구□□), 어학(일본인에게는 조선어, 조선인에게는 일본어), 경찰 실무, 접경, 예식 및 조련, 무도(武道) 등으로 교습 중에는 전부 기숙사에 수용하여 기율(紀律) 관념의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관 교양 규정에 따른 법령, 보통학, 어학, 실무 강습, 수신훈화(修身訓話), 조련, 무도, 포승술, 수영 및 조선술 등에 대해 이론을 피하고 실무를 중심으로 각 계급에 따라 직무 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1주 4회 4시간 이상 교양하고 있다.

그 밖에 경찰협회는 매달 정무휘보를 발간하여 교양 자료로 삼고 있으며, 또 각 도에서도 그와 동일한 수양 책자를 발간하거나 순회문고를 설치하여 신문과 잡지를 강독 장려, 자수(自修) 촉진의 시험 시행 등 각종 시설을 통해 철저하게 교양을 쌓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3. 교육 정도

순사의 교육 정도는 일본인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으로, 총 인원 10,984명 가운데 8,464명, 즉 총 인원의 약 77%에 달하고 있으며, 중학교 중퇴자는 744명, 졸업자는 1,632명, 고등정도 이상의 학교중퇴자는 52명, 졸업자는 59명이다. 또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9명이다. 조선인 순사도 국민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고, 총 인원 7,902명 가운데 6,759명, 즉 총 인원의 약 85.5%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중퇴자는 590명, 졸업자는 389명, 고등정도 이상의 학교 중퇴자는 23명, 졸업자는 21명이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다니지 못한 자는 120명으로 총 인원의 약 1.5%이다. 한편 순사의 교육 정도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 (제20표 참조)

4. 어학 능률

일본인 경찰관의 조선어 습득은 가장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협회는 『선어필휴(鮮語必携)』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경찰관들이 자습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선어에 한해서 교양 시간을 정해 교육하거나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승급 자료로 삼는 것 외에,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개월 3원 내지 10원의 통역수당 또는 조선어 장려 규정에 따라 5원 내지 2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교양의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 성적이 향상되었다. 즉 1940년 말 현재 번역과 통역 모두 능통한 자는 경부 89명, 경부보 166명, 순사 785명으로 합계 1,040명이고, 통역에 지장이 없는 자는 경부 204명, 경부보 388명, 순사 2,979명으로 합계 3,571명이다.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자는 경부 98명, 경부보 151명, 순사 4,681명으로 합계 4,953명으로 총 9,564명으로 대개 일본 조선인과 대화할 수 있고, 호구조사 등 간단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또 앞서 언급한 통역 수당 및 조선어 장려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경부 3명, 경부보 258명, 순사 392명, 합계 653명으로 총 인원의 5.4%이다.

조선인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일본어에 능통하고 회화 통역에 지장을 느끼는 자는 거의 없다. 즉 번역

과 통역 모두 능통한 자는 경부 67명, 경부보 121명, 순사 5,162명으로 합계 1,350명이고, 통역에 지장이 없는 자는 순사 2,638명이다. 그리고 조선인 경찰관의 일본어 역시 일본인 경찰관의 조선어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니,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본 뒤 우수한 자에게는 통역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역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경부보 34명, 순사 784명, 합계 818명으로 총 인원의 10.1%이다.(제24표 참조)

제8장 진퇴상별

1. 진퇴

경찰관의 승진은 경력과 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정하지 않지만, 판임문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개 채용한 뒤 2년 내지 5년이면 경부보로 승진하고, 또 2년 내지 5년이면 경부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다. 또 판임문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시험을 거친 뒤 승진시키고 있다. 순사부장 시험 합격자를 순사부장에, 경부와 경부보 특별 임용령에 따른 고시 합격자를 경부보에 임용하고 이어서 경부로 승진시키는 등 인재의 등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1940년도에 승진한 자는 경시에 일본인 17명, 조선인 3명, 경부에 일본인 99명, 조선인 6명, 경부보에 일본인 189명, 조선인 20명으로 대부분은 시험에 이 합격한 자들이다.

그리고 사변 발발 전에는 순사 지원자 수가 상당수에 이르렀고, 채용에는 소질 및 체격에 있어서 충분히 엄선을 할 수 있었으나, 사변 이후에는 일본인에 관한 한 장정의 소집과 은진산업(殷賑產業)의 호황으로 지원자 수가 격감된 상태이다. 한편 퇴직 상황에 대해서는 1940년도에 일본인 968명, 조선인 473명으로 합계 1,441명이다. 그 중에서 징계 면직자는 일본인 135명, 조선인 137명이다. 의원(依願) 면직자 중에서 병으로 인한 자는 일본인 524명, 조선인 317명, 집안 사정으로 인한 자는 일본인 418명, 조선인 146명이다. (제22표 참조)

2. 직무사상(職務死傷)

경찰관 직무와 관련한 사상(死傷)은 일본인 경찰관이 조선인 경찰관보다 많다. 1940년도에 사망한 자는 일본인 10명, 조선인 7명으로 합계 17명이고, 부상자는 일본인 346명, 조선인 252명으로 합계 598명이다.

이들 순직자들에게는 각각 그 공을 높이 인정하여 경찰상여를 수여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이를 표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유족들을 구휼 방법도 마련했다. 1921년 이후 매년 경성에서 성대한 순직 경찰관의 초혼제를 실시하여 그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 그 밖의 상당한 대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23표 참조)

또한 1941년 9월 18일 소위 만주사변의 발생 아래 오늘날까지 국경경비에 종사하는 경찰관 중에서 비적들로 인해 순직한 자는 38명에 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황송하게도 천황 황후 두 폐하로부터 각각 제자료(祭粢料)의 하사(下賜)가 있어서 그 영광에 감격하고 있는 바이다.

3. 징벌

원래 조선인들 중에는 사소한 문제에도 곧바로 청원을 하거나 타인을 중상 모략하는 투서 등을 보내는 습성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특히 경찰관의 조처 등에 대해서는 더욱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경찰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을 기하고 엄밀히 조사하여 기율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허위이고 실제로 징벌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세태의 기운은 더욱 더 경찰 사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경찰관의 책무는 한층 중대해졌기 때문에 경찰관의 임용은 물론 기강의 엄정, 사기 진작, 절제 수양 등에 유의하고, 만약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치 없는 필벌주의로 임하고 예의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도태를 실행하고 있다. 1940년도의 순사 징벌 수는 533명, 그 중에서 징계면직을 당한 일본인 135명, 조선인 137명을 합계 175명이고, 감봉된 일본인 80명, 조선인 96명으로 합계 176명, 문책된 일본인 45명, 조선인 40명으로 합계 85명이다.

그리고 이를 징계 사유별로 보면, 징계면직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계약위반, 위신실추, 직무방기, 복무의무위반 등이 가장 많고, 감봉 및 문책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직무태만, 위신실추, 기강문란의 사유에 따른 자가 특히 많은 편이다. (제24표 참조)

4. 상여(賞與)

경찰상여 : 경찰의 근무는 늘 불면과 쉬지 못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조선은 일본처럼 기후와 풍토가 좋지 않아 겨울에는 추위와 얼음 위에서, 여름에는 작열하는 열사 위에서 연일 활동을 계속하고, 게다가 어떤 때는 총화 속에 의연히 서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노고는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비적 토벌, 범인 체포, 인명구조, 방역, 홍수와 화재를 비롯한 그 밖의 천재지변에 대한 방어구제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공이 특히 현저한 경우 해수(害獸)(□□□) 포살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로부터 경찰상여를 수여하고 있다.

경찰상여의 종류는 (1)상장, (2)50원 이하의 상여, (3)50원 이상 500원 이하의 특별상여가 있는데, 상여의 수여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1940년도 경찰관 수상자는 일본인 5,768명, 조선인 6,634명으로 합계 12,302명이다. 그 중에서 상금을 받은 자는 일본인 5,427명, 금액 26,41원, 조선인 6,626명, 금액 23,386원으로 합계 49,427원이다. 1인당 평균액은 일본인은 4원 75전, 조선인은 3원 52전이다. 이를 경부 이하 현 인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2원 44전이다.

경찰관 이외의 수상자는 상장 49명, 상금은 771명에 대해 5,668원으로 1인당 7원 35전이다. 또 상여 사유별로 보면 인명구조, 범인 체포 또는 검거인 경우가 가장 많다. (제25표 참조)

공로기장(功勞記章) : 경찰관 중에 그 공로가 크고 일반 경찰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엄밀 주도한 심사를 한 뒤 공로기장을 주어 이를 표창하고, 경부보 및 순사에 대해서는 월 5원의 공로 가봉을 지급하고 있다.

공로기장을 수여한 것은 1919년 7월에 한 명에게 준 것이 최초이고, 1920년 1명, 1921년 7명, 1922년 6명, 1923년과 24년에 각각 3명, 1925년 2명, 1926년 1명, 1927년 1명, 1929년 1명, 1930년 2명, 1932년 5명,

1933년 9명, 1934년 9명, 1935년 4명, 1936년 18명, 1937년 29명, 1938년 5명, 1939년 4명, 1940년 3명으로 합계 115명이다. 이를 관직별로 보면 경시 1명, 경부 16명, 경부보 13명, 순사 85명이다.

정근증서(精勤證書) : 품행방정하고 직무에 근면하고 사무 및 어학에 숙달하며 만 3년간 근속한 순사에게는 도지사로부터 정근증서를 수여받는다. 그리고 본 증서 수여자에게는 정근 가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미 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단지 계획만 있을 뿐, 아직 예산 관계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1940년 말 현재의 증서 수여자는 일본인 2,860명, 조선인 1,994명으로 합계 4,862명이다. (제26표 참조)

그 밖에도 직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자 또는 직무상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치료비로 하루 2원 이내 (□□□□□□□□□□□□□□)를 지급하고 사망한 자에게는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은 사망 당시의 월봉 1개월분으로, 여기에 근속 1년 이상 9년 이내까지 1년을 더할 때마다 사망 당시 월봉의 3분의 2를 더하여 지급하고, 또 앞서 언급한 치료를 받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월봉 6개월분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국경 경비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는 1년에 대해 1년 반의 은급기간 가산의 특전이 있으며, 직무로 인해 부상을 당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자에게는 2천원 이내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9장 근무 및 생활

1. 개요

조선은 근래 교육이 크게 보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관계상 지금도 여전히 시대의 추이를 알지 못하고 인습에 사로잡혀 함부로 부화뇌동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소위 사회주의자 무리들이 이를 이용하여 당국의 시행방침이나 지도보호를 왜곡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찰관은 조선통치의 진의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임무 수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일반 행정의 시행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과반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조선 사정에 어두운 자도 있고, 또 어학이 미숙한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통신기관의 불완전, 광대한 담당구역, 주재소와 본서 간의 먼 거리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복무상 큰 어려움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일본 내지와 비교할 바가 못되고, 특히 벽지에서는 생활상 많은 불편과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국경 지방 근무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2. 담당¹⁾

제도개정 이전에는 현병 상등병 및 현병 보조원을 순사로 간주하고 순사 1명당 담당은 면적 27평방

1) 목차에는 '수지(受持)'되어 있음.

킬로미터, 호수 242호, 인구 1,295명으로 이를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 보고, 또 일본 내지와 비교했을 경우 그 경비력이 크게 떨어지는 감이 있었다. 1919년의 소요사건 이후에는 시국의 영향과 제도의 개정과 맞물려 충실히 도모한 결과 1923년 말에는 면적 10평방킬로미터, 호수 169호, 인구 919명으로 되었지만, 1923년에는 행정 정리에 따른 감원으로 면적 12평방킬로미터, 호수 212호, 인구 1,100명이 되면서 다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뒤 점차 증원하긴 했으나 여전히 면적 10평방킬로미터, 호수 217호, 인구 1,138명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일본 내지의 순사 1인당 담당 면적 4평방킬로미터, 인구 840명, 대만 4평방킬로미터, 인구 680명, 관동주(關東州) 1평방킬로미터, 인구 1074명, 사할린 면적 87평방킬로미터, 인구 785명에 비하면 얼마나 조선 경찰관의 부담이 큰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총 인원 중에서 국경 지방에서 특종 경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면 그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학을 보더라도 일본인 순사는 조선어에, 조선인 순사는 일본어에 숙달할 필요가 있고, 또 일본인과 조선인 순사의 소질도 자연히 다르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격·부적격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경찰서와 주재소, 주재소 상호간의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담당구역도 너무 넓어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밖에도 문화적 수준이 낮은 조선에서는 국경 경비, 연안 경비, 우편 호위, 집달리(執達吏) 사무, 임야보호, 민사소송 조정, 전매사무, 경찰사무 이외의 집무가 많고, 또 조장(助長) 행정, 사상 선도와 그 밖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가 매우 번잡하여 실제 부담률은 배가 되고 늘 직원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27, 28표 참조)

3. 특종근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은 일본 내지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기관은 경찰 본연의 사무 외에 여러 특종 근무에 매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는 지금의 조선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최하급 행정기관인 면장의 직무 집행 효과는 일본 내지의 정촌장(町村長)에 비해 여전히 격차가 있고, 지방 이민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을 신뢰하고 경찰의 지시 명령에 잘 복종하고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무적인 효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매우 편리한 탓에 자연히 조장행정 원조의 의뢰가 많고, 그래서 이 조장행정 원조 사무에 매달리는 경우도 매우 많게 된다. 이러한 특종 근무 두세 가지를 든다면,

검사 사무 : 지방법원 지청 중에서 검사를 배치하지 않은 지청의 검사 사무는 1912년 훈령 제13호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의 요구에 기초하여 경시 또는 경부가 해당 사무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무를 다루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제주, 황해도 송화, 평안남도 덕천, 평안북도 초산 및 영변, 강원도 원주, 함경북도 웅기 등 7곳으로, 사건의 취조, 법정의 입회 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바쁜 경찰 사무는 한층 더 복잡해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임 검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사쟁송(爭訟) 조정 사무 : 1910년 제령 제11호로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이 공표되어 지방법원 또는 지청 소재지 외의 경찰서장은 주택과 그 밖의 건물 혹은 물품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경계 등에 관한

분쟁 또는 200원 미만의 금전 채권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수속이 간단하고 처리가 신속한데다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정식으로 재판소에 출소하기에는 너무 번잡한 소액 채권의 소송에서는 매우 편리하다. 또 조정은 되도록 강제는 피하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쌍방의 주장과 지방의 관습과 그 밖의 사건 자체의 진상을 조사하여 원만한 조정을 하는 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매우 양호하다.

집달리 사무 : 조선은 교통과 그 밖의 각종 사정으로 인해 일본 내지처럼 각지에 사무 집행관을 두기 어려운 탓에 지방법원 또는 지청 소재지에서 면 지역에서는 거의 경찰관이 이 사무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 당시에는 법령과 그 수속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건수도 매우 적고 또 그 집행에도 종종 경찰에 대한 피집행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방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수속 절차가 알려지면서 집달리는 권리의 실행보전 등에는 필요한 기관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집행 임무를 맡은 경찰관도 사무에 숙달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졌다. 1939년 도에 이 일에 종사한 연 인원 980명은 하루 평균 2.07명이다.

원조 사무 : 원조 사무는 도로의 수리, 임야보호, 국경 지방의 관세 사무, 징세 원조, 해충구제, 산업 장려, 부업 저금의 장려, 미취학 아동의 교양, 청년단의 지도, 어업단속 등이다.

(1) 관세 사무는 주로 두만강 및 압록강 유역의 경찰서 또는 주재소가 경비업무를 하는 한편 맡고 있으며, 1938년에 이 사무에 종사한 연 인원은 35,702명으로 하루 평균 97명이다.

(2) 삼림단속 중에서 도별과 화재 등 경찰의 임무상 당연히 경방(警防)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해충구제의 장려 또는 삼림육성의 장려와 그 밖의 산림감시 보조 등 1939년에 이 일에 종사한 연 인원은 41,402명으로 하루 평균 13명이다.

(3) 농경에 관한 원조 사무로서는 도청, 군청 등의 시설 취지에 따라 종자의 정선, 뜻자리의 설치 및 손질, 비료 제조, 비료 방법, 해충구제, 수확시의 건조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보급하고 장려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충구제에는 큰 힘을 쏟고 있다.

(4) 미취학 아동의 교양에 대해서는 벽지 근무 경찰관들 중에 자비를 들여 주재소 내에 교양시설을 설치해 여가 시간(□□)에 미취학 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고, 그 중에는 거액의 학비를 지급하여 도회지에 소년을 유학시키는 곳도 있다. 근래 교육열이 끓어오른 조선에서는 일반인들로부터 큰 호감을 얻고 있다.

그 밖의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인사상담소, 소작상담소, 무료숙박소, 탁아소, 공동목욕탕 시설, 또는 융화회, 야학회, 담화회, 시국좌담회, 강화회 등을 개최하여 민지(民智)의 개발 및 사상의 선도에 노력하고, 보건위생조합 시설 또는 각 주재소, 출장소 등에 구급약품을 비치해 응급조치에 대비하는 등 여러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4. 휴가

순사의 짐무는 내근순사의 경우에는 일반 관청의 예를 따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근순사는 경찰서에서 격일 근무, 주재소에서는 일요일과 축일과 상관없이 7일에 1일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범죄수사, 경계사찰 혹은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비번일의 집무가 매우 많아서 평소 규정의 휴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국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24시간 하루를 편하게 쉬는 일은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주야로 무장을 풀 여가도 없을 정도로 심신이 모두 과중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종래의 순사 휴가 규정은 6개월 개근자에게 7일간, 1년 개근자에게는 21일 휴가를 주고 있었지만, 1926년 6월 순사 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근무의 성격상 아직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경의 경비 지역에서는 내근과 특무 모두 비적의 수사와 토벌에 종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외근형사와 마찬가지로 3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휴가 이외에 특별히 3년에 30일 이내의 위로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0표 참조)

5. 생활

조선은 풍속, 언어, 민정 등 모든 면에서 일본 내지와는 다르지만, 근래 교통기관의 발달이 현저하고 철도는 부산-신의주, 경성-남양간의 반도를 가로지르는 선을 간선으로 하여 여러 지선과 민영철도가 부설되었고, 연안의 각 도에는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의 정기항로가 있으며, 정기 자동차의 선로는 주요 도시에서 각 경찰서 소재지를 연결하여 일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지방의 개발을 촉진하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선은 물자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생활 상태는 안정되어 있어서 일본 내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쪽과 북쪽, 특히 국경 지방은 교통이 불편하고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근래 국경 도로의 일부가 완성했으므로 그 방면은 다소간 완화되었다. 또 이 지방의 겨울은 매우 추워 영하 30도를 넘는 경우가 보통이고, 따라서 생활상 불편과 노고는 상상을 뛰어넘으며 또 외로움 또한 실로 심각하다.

건강 상태를 본다면, 일본인 경찰관은 대륙적 기후풍토에 익숙하지 않은 점과 식료품과 주택 등의 변화에 따른 위염, 호흡기 질환 혹은 위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자가 비교적 많아서 각 도에서는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로 조선인 경찰관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보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벽지에는 의사는커녕 의생(醫生)조차 없는 곳도 있어서 일단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의사의 왕진을 받는 것조차 힘들고, 굳이 왕진을 받고자 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시일을 요하고, 끝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완화하는 방책으로서는 이들 벽지의 주재소, 출장소 등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해 임시약품의 보급을 행하는 등 응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생생활비는 가족 수, 근무 장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회지 근무자는 군 지역에 근무하는 자보다 많은 돈이 들고, 사변 발생 아래 최근에 특히 생활필수품 가격의 급등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제29표 참조, 제11표 참조)

제10장 경찰관의 급여

순사에게는 봉급 외에 가봉, 수당, 숙사료, 여비 및 피복을 지급하고 있다.

봉급 : 일본인 순사에게는 초봉 37원 및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가봉을 지급하고, 조선인 순사에게는 초봉 37원을 지급하고 가봉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판독불가……) 또 벽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에게는 토지의 구별에 따라 본봉의 10% 내지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인은 본봉 최저 37원, 최고 76원으로 가봉을 포함한 평균액은 68원 86전, 조선인은 최저 37원, 최고 62원으로 평균액은 42원 95전이다. (1940년 □□현재)

현재 공로 가봉은 월 5원을 지급하고 정근 가봉은 월 2원인데, 정근 가봉 이후의 지급에 관해서는 처음 가봉 수급 후의 경과 핫수 및 근속년수에 따라 각각 규정의 구분을 근거로 최고 10원까지로 하고 있다.

수당 : 국경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순사에게는 토지의 구별에 따라 1급지에는 월 5원 50전, 2급지에는 3원의 임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형사, 통역, 회계 등의 특종 기능을 보유하고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는 3원 내지 5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 관계상 실제로 지급하는 월 평균액은 4원 8전이고, 비번 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30전, 50전, 70전, 1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이 역시 실제로는 예산의 관계상 거의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순사에게는 일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가족 수에 따라 월 2원 내지 10원의 임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임시수당으로 본봉의 15%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 7원에서 최고 15원까지로 하고 있다.

여비 : 여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관 주재소 근무자에게는 여비로 월 평균 3원을 지급하고, 담당구역 내의 출장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숙사료 : 일본인 순사에게는 토지 등급에 따라 5원 내지 13원의 숙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조선인 순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피복대구(帶具) : 순사에게는 사용기간을 정해 동의 하카마(袴), 하의 하카마, 모자, 히오이(日覆), 아랫깃(下襷), 겨울장갑, 여름장갑, 겨울내의, 여름내의, 겨울양말, 여름양말, 단화(편상화)(編上靴) 포함, 고무장화, 작업화(地下足袋) 등을 지급한다. 또한 사용기간을 정해 정(正)견장, 약(略)견장, 검, 외투, 비옷, 수첩, 포승줄, 호루라기, 배낭, 가죽각반, 퀸(卷)각반, 헬멧형 모자, 완장, 박차(拍車), 탄약대, 방한모, 방한털, 방한외투, 방한내의, 방한바지, 방한장갑, 방한양말, 방한복면, 방한동복(胴服), 방한화 등을 지급하고 전자를 급여품, 후자를 대여품이라 하다. 그리고 고무장화 및 작업화는 현품 지급으로 바꾸어 매달 20전을 지급하고 있다.

재료 및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순사 보통 피복

품목	주요 재료 및 제작 방법	표준 중량
동의 하카마	앞에는 □□, 뒤에는 □□□, 소매 뒤는 □□ 슬릭을 사용한다. 단 기마순사 용은 상의에 □□□□□을 붙여 옷깃은 □□□로 한다. 입□일행(立□一行) 긴 '재킷'식으로 소매기장(記章), 옷깃기장을 붙인다.	1,760
하의 하카마	옷감은 서다갈포(鼠茶褐布)를 사용한다. 염색은 인단트렌 염료 및 광물염료를 겸용하고 땀처리를 한다.	900
모자	옷감은.....(판독불가).....	150
외투(판독불가).....	2,250
비옷(판독불가).....	1,170

순사 방한 피복

품목	주요 재료 및 제작 방법	표준 중량
방한모	앞에는 서다갈포(鼠茶褐布)로 하고 □□에는 면(綿)을 내용으로 한다. 수포(垂布) 뒷부분과 전비(前庇) 뒷부분에 아스트라칸, 또는 모피를 사용하고 코 막이를 부착한다.	250
방한 □□	앞에는 서다갈포를 사용하고 뒤에는 모피를 사용한다. 탈착식(脫着式)으로 해서 외투, 방한외투 또는 방한모 등에도 사용한다.	100
방한 외투	앞에는 서다갈포, 뒤에는 아스트라칸을 사용한다. □□□□ 띠를 붙인다. 보온을 위해 여유를 많이 두고, 또 경부 이하를 □□□□□□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40
방한 내의	□□□□로 한 '메리야스'제로 하고 밀침(密針) 및 '수선'으로 소정의 형상으로 □□.	670
방한 바지	동	450
방한 장갑	동	75
방한 양말	동	150
방한 복면	동	70
방한 동복	앞에는 서다갈포, 뒤에는 모피를 사용한다. □□□로서 소매를 붙이지 않는다.	2,450
방한화	작업화(地下足袋)로 하고 내부에 방한을 위해 발가락 보호대를 넣어 보온력을 높인다.	950

제11장 치안상황

1. 병합 전의 상황

경찰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지방에 민란이 끊이질 않았고, 특히 1894년 동학당의 난 이래로 무도한 무리들이 각지에 모여 양민들을 위협하고 또 중앙의 정변이 빈번히 일어난 뒤에 지방의 안寧에 큰 악영향을 주면서 점차 질서가 문란해졌다. 그리고 1907년 7월 일한조약이 성립되어 각지의

구 한국군대가 해산되었을 때 경성에 해산병들의 폭동이 일어나 그 영향이 조선 전체에 파급되었다. 그래서 입으로는 의병이라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야탈과 살상을 저지르고 종종 지방관청을 습격하거나 관리들을 위협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를 틈타 불량한 무리들, 화적, 소규모 도적의 무리들이 발호하여 특히 경북, 강원, 경기, 황해 및 전라남도와 북도 방면에 가장 심해서 심상치 않은 사태를 초래했다. 때문에 통감은 한국 황제의 위임을 받아 주둔 수비대로 하여금 한국 경찰과 협력하여 이를 진정시키도록 했고, 한편으로 귀순자 사면의 특전을 주어 도적 무리들의 귀순을 장려하고, 도로 공사를 실시해 귀순자들에게 생업을 갖도록 했다. 1909년 말에는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게 되었지만, 그 잔당들이 경북, 강원, 황해, 경기도 등지의 산지에 출몰하였고, 또 초적(草賊), 무적(蕪賊), 무뢰한들이 여러 방면에 점재하고 있어서 아직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2. 병합 후 독립소요 전후의 상황

합병 후 치안이 확립하는 동시에 신정(新政)의 혜택이 도시와 시골에 널리 서민들에게 미치어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내심 불평을 품는 무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시 일을 저지를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국외에서 국권회복을 운운할 따름이고, 그 밖의 일반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심이 평정을 되찾았다.

세계대전 발발 당초 조선 내에서는 종종 독일의 우세를 선불리 판단하고 국권회복의 시기가 도래한 것처럼 유설하는 자가 있었다. 특히 1918년 러시아의 제2혁명 후 독일 세력의 동점(東漸) 및 제국과 여러 나라의 시베리아 출병 당시 황당무계한 풍평을 떠들어대는 자도 있었지만 민심이 동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일부 재외 조선인들은 그려는 동안 함부로 독립운동에 분주히 뛰어다녔고, 잘못 이해한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조선독립을 실현하려면 먼저 민족을 규합하여内外가 호응하여 그 의지를 세계에 표명해야 한다며 1919년 1월 하순에 도쿄와 조선에 사람을 보내어 주로 학생과 기독교 신도들 중 불평자들에게 선전을 시도했다. 이에 앞서 사대뢰동(事大雷同)의 여폐(餘弊)는 유언비어가 빈발할 조짐이 보였고, 특히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후부터 세계사조의 변동에 자극을 받아 일부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세계의 대세를 알지 못하고 결국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줄기 희망을 품는 자도 있어서 인심이 동요되었다. 이와 동시에 천도교 신도들 중에 인심이 흔들리는 것을 간파하고 독립의 비망(非望)을 도모하는 자도 있어서 기독교와 불교 신도의 동지들과 협력하여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독립소요를 야기했다. 이 독립소요 사건은 약 2개월 만에 진정되었고 집단적 시위운동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당시의 민심은 소요의 여파로 인해 평정을 잃었고, 불안한 정세가 널리 확산되어 한때 폭동과 협박 등이 빈발한 탓에 1919년 8월 경찰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경찰력의 충실과 인민의 각성을 바탕으로 불온한 계획은 매번 사전에 적발하여 실행을 막았다. 그러자 그들 불온한 무리들은 함부로 양민을 협박하고 독립자금이라면서 금품을 강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성을 사게 되었다.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 불온한 운동에 부화뇌동하고 무지한 무리들도 대부분 후회하면서 생업에 돌아가거나 자진해서 과거 자신의 잘못을 관현에 사죄하고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불온한

계획 대부분은 그 근원이 재외 불온자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잠입으로 감행된 것이었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그 밖의 불온단체는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겨우 형체를 유지할 뿐, 내외의 신망을 잃고 민심 또한 떠난 탓에 1920년부터 1925년까지는 국경 3도를 통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1926년도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저 초목이 무성한 시기를 기다려 삼사오오 잠입하여 관헌의 눈을 피해 강도 짓을 하는 경우가 몇 건 있을 뿐이었다.

3. 최근의 상황

조선인들 중 일부가 천제일우의 호기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던 1921년의 워싱턴회의가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끝난 아래, 외국의 원조 또는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야망을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민심은 더 이상 무모하고 공허한 운동으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고 또 민족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음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다. 조교계(操觚界)와 종교 관계자들 및 청년학도 등의 유식계급은 종래의 운동에서 탈피해 교육과 산업의 발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물심양면으로 충실히 해지면서 민족문화의 향상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족자립의 기초적 발전을 이루려는 이른바 실력양성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로써 폭력적 직접행동을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1926년 고 이왕 전하의 국장 당시 일부 소수의 불량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에 합창하여 경거망동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민족의 자각을 응변해주고 있다.

그런데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사소한 말싸움이 원인이 되어 두 학교 학생들이 집단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출동하여 해산시켰다. 그러나 일단 학교로 돌아간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각자 곤봉 등을 들고 사람들로 봄비는 시내로 나와 시위운동을 벌이고 또 농업학교, 사범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조선인 학생들도 이에 참가하여 기세를 올려 한때 시내에 처참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경찰의 진무(鎮撫)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들의 싸움의 원인이 된 당일 사건은 민족사상의 첨단적 표현운동이라며 지방 민심에 상당한 충격을 준 아래로 학생들의 동요를 틈타 그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주의(主義)의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들을 책동해 같은 달 12일에 재차 그 지역의 조선인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시위운동을 감행하도록 했다. 나아가 그들 사회주의자들은 경성의 동지들과 모의하여 학생들 사주하여 폭동을 기도하고, 다른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책동도 있고 해서 12월 9일부터 수일간에 걸쳐 경성의 각 조선인 중등학교의 싸움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른 지방의 각지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1930년 2월까지 조선 각지에서 194교, 5만 4천 명의 학생동요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지만, 경찰에서 주동자와 선동자를 검거했기 때문에 3월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재외 조선인의 독립운동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 지나 중부와 남만주 등지에 미약하게나마 모습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나에 있는 임시정부 계열과 그 밖의 불온단체나 남만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불온단체가 지금도 여전히 국경지대에 출몰하여 금품을 약탈하거나 또는 조선 내에 동지들을 잠입시켜 주의(主義) 선전, 동지 획득을 시도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1926년 12월 의열단 원 나석주가 경성 동양척식회사에 난입하여 살상을 자행하고, 또 1927년 대구 조선은행 지점의 폭탄

사건 등이 있었지만, 그러한 무모하고 흉악한 망동도 바로 탄압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일반인들은 그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상황으로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1928년의 어대전(御大典)²⁾ 전후와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 당시 재외의 불온한 무리들이 조선 내의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여 일대 소요를 기획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지만, 일부 학생들의 격문 살포와 동맹휴업이 있었을 뿐, 매우 평온하게 보냈다.

그 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조선인 일반은 큰 관심을 갖고 사건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국제연맹이 나선 이후에는 이에 공명하여 제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자도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한때 민심이 동요되었으나 만주에 대한 우리 방침이 확고하고 모든 정세가 순조롭게 우리 주장대로 돌아가자 제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일반 민심도 평정을 되찾았다. 1932년 1월 8일 사쿠라다문(櫻田門) 밖의 불상사와 같은 해 4월 29일 상하이에서의 폭탄사건이 재외의 불온한 무리들에 의해 야기되어 조선 내의 민심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뒤 특이한 사고는 없었고 같은 해 11월 오사카 지방에서 거행된 육군 특별 대연습, 지치부노미야(秩父宮) 전하의 만주국 방문, 만주국 황제폐하의 방일 및 여러 황족 전하가 조선 방문을 하여 관람한 사단 대항연습 등도 평온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1932년 11월 10일 국민정신 작흥에 관한 조서환발기념일(詔書渙發記念日)을 기해 전 조선에서 일제히 개시된 농촌진흥 자력갱생운동은 일반 민심과 일치한 이래 본 운동은 착실히 그 효과를 올려 조선반도에 생기를 불어넣는 감이 있었고 민정에 있어서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1936년 제국 수도에서 불상사가 발발하자 이로 인해 일본 국민의 국체 관념이 동요된 것으로 오인하고 일부에서는 사건의 확대와 악화를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 같은 해 8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조선 출신 선수가 마라톤에서 1위와 3위로 입상하자, 조선 민중들은 조선민족의 우위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열광적 흥분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기운을 틈타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책동도 있고 해서 적지 않은 민심의 안정을 저해했다. 마침 동아일보가 8월 25일 마라톤 우승 선수 손기정의 사진을 오사카 아사히신문에서 옮겨 게재할 때, 고의로 선수의 가슴 부위에 있는 일장기 마크를 지우는 광태(狂態)를 보였기 때문에 무기정간 처분을 내리고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으며, 또 중앙일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있었지만 중앙일보는 동아일보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보고는 자진해서 휴간하고 반성의 뜻을 표했다.

1937년에 들어서 겉으로는 온건·합법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비합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행동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한 뒤 엄정한 선도를 강화하는 방침 아래 같은 해 2월에 조선 내의 민족단체로서 은연한 세력을 갖고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의 각 부문에 걸쳐 유력한 회원을 망라하여 부동의 지반을 갖고 있는 동우회(同友會) 및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등의 불온한 기획사건 검거를 비롯해 조선물산장려회, 조선소년단총본부, 평양 대성학우회(大成學友會) 등의 협의단체도 시국의 중압과 당국의 선도에 의해 해산했다.

조선의 종교 유사단체는 모두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고 민심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폐해가 있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당국은 1936년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폐해가 있는 곳은 단호히 해산시키는 동시에 폐해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선도 개선한 결과 1934년 11월 말 64개 단체, 신

2) 쇼와(昭和) 천황의 즉위식.

도 수 17만여 명이었던 종교 유사단체도 1937년 말에는 15개 단체, 신도 수 9만여 명으로 격감하였다. 한편 1937년 2월 발간된 백백교(自白敎) 사건은 처음부터 당국의 시선을 피해 비밀리에 포교 활동을 하며 조선독립이 가까웠다는 등의 망언을 하고 무지한 신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물은 총액 16만여 원, 비밀의 폭로를 우려해 살해된 자는 남녀노소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때문에 전 조선에 걸쳐 철저하게 비밀 포교 중인 사교(邪敎)를 단속한 결과 47개 단체, 신도 24,670명을 발견하고 간부의 처벌, 교단의 해산, 신도의 계몽 설교 등을 지도했다. 이리하여 종전에 민족단체로서의 역사를 지닌 천도교도 지나사변 발발 아래 당국의 뜻을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총후(銃後)의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잔존 종교단체도 당국을 인식한 총후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 일반 민중들의 시국 인식이 철저해짐에 따라 일본과 조선에 46만여 명의 신도가 있는 기독교도 점차 종래의 맹목적 외국인숭배 관념에서 각성하게 되었고, 193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7회 조선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조선인 출신 대표 186명은 출석 외국인 선교사 18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장일치로 기독교 신자의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이로써 1935년 아래의 기독교 신자의 신사 불참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명실 공히 일본적 기독교 재건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한편 사회운동 방면을 살펴보면, 독립운동의 좌절로 자포자기애에 빠진 무뢰불량 청년, 혹은 시정이나 사회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은 실망과 반감으로 과격사상에 투합하였고, 그 중에는 코민테른으로부터 적화선전비를 받기 위해 적화운동에 광분하는 자들도 나오게 되었다. 1924년에 들어서 조선노농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등 전 조선의 통일기관이 조직되어 세포단체 역시 각지에 번성하였고 1925년 중에는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당 청년회 같은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1차 공산당 조직 및 고이왕 전하의 국장 때의 제2차 공산당 관계자의 불온한 계획 검거 이후 주의(主義) 운동의 방향은 전환되어 종래 민족운동과의 연대를 배척하던 데서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여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일본 내지의 주의 운동자들이 무산정당을 수립하여 정치운동으로 전향한 데 자극을 받아 조선의 사회운동은 부분적 경제운동에서 전 민족적 정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결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합동하여 민족 단일당의 결성을 주장하고, 1927년 2월 신간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신간회는 조선민족 각 계급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 조선 내는 물론 일본 내지 각지에도 지회를 조직하여 한때는 지회 140곳, 회원 약 3만 명을 갖고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적 항쟁을 펼치고, 혹은 민족혁명을 도모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중한 단속을 펼쳤다. 그러나 1930년 이후 공산당의 조직이론이 변경되어 민족 각 계급의 결합은 도리어 계급적 투쟁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민족주의자의 연대를 끊고, 무산계급은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으로 복귀하여 운동을 좌익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장하면서 내홍을 겪게 되면서 마침내 1931년 5월에 신간회는 해산을 결의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청년총동맹이나 형평사(衡平社) 혹은 근우회(槿友會) 등의 표현단체들 사이에서도 해산운동으로 분규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정식으로 해산을 결의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극좌분자의 지도에 따른 해산이론에 기초하여 표현단체에서 공산당 혹은 좌익노동 농민조합 등의 비합법 조직으로 나아가 자연 소멸하는 형태가 되었고, 청년의 사상은 더욱더 악화되어 각지에 좌경적 불상사가 발생하자 당국은 엄중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처했다.

그 뒤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공산당 몰락의 영향과 관현의 엄중한 단속과 맞

물려 공산주의 운동도 1933년 말경부터 서서히 진정세를 보였고, 1937년 7월 지나사변의 발발 이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일반 민중의 시국 인식을 철저화한 덕분에 불온한 사상운동은 한층 더 추락하고 쇠퇴해졌으며, 범죄사건 같은 것도 감소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불량분자의 은밀한 책동은 아직 완전하게는 극복되지는 않았고, 그 잡행 활동은 여전히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운동 형태가 매우 교묘해서 비합법성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일·러 개전을 예상하고 후방 교란을 꾀하는 자가 있는 등 특별히 주의 경계가 필요하다. 또 대륙작전 기지로서 군사상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조선을 무대로 첨자의 잠입과 암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경찰로서는 경시할 수 없는 정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외사경찰 기구의 확충을 도모하여 더욱 엄중한 단속을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상 선도 방책을 강구하는 등 은위(恩威)를 병행함으로써 불온한 사회주의 운동의 소탕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4. 지나사변하의 치안상황

조선 내 민심의 동향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현저히 호전되었고 종래 조선 통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를 초래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점차 진정시키고 순조롭게 경과되고 있다. 하지만 1937년 7월 7일 빌발한 북지사변 아래 조선에서는 합병 이래로 볼 수 없었던 동원령 하에 있고 재향 군인의 소집 혹은 자동차와 군마의 징발, 자동차 운전자의 모집 또는 계속되는 일본 내지의 대부대의 조선 통과, 북지 수송 등으로 인해 일반 조선 민중들은 사변이 예상 외로 중대함을 감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광대한 시국의 수습에 의심을 품고 일본의 패배를 연상하는 언동을 하고, 또는 철도 수송의 제한, 수입품의 통제, 금융기관의 경색 혹은 물가의 자연 폭등 등의 사실로 인해 막연히 정치적,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종종 유언비어가 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철저한 시국 인식 계몽운동과 유언비어와 그 밖의 시국에 따른 각종 불온한 행위에 대한 단속 등으로 민심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나아가 현지 일본군의 결정적인 대첩과 단호히 소신에 따라 매진하는 의연한 제국의 태도에 직면하여 그 실력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더욱 더 황국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굳히고 동양평화를 위해 지나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종래 자칫 정치적으로 불온한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미신적 포교를 하면서 원활한 시정(施政)을 저해하는 경향에 있던 천도교, 시천교(侍天敎)와 그 밖의 종교 유사단체가 이번 사변에서는 솔선하여 애국적 행사를 계획하거나 이에 합류하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도교 및 불교 각파, 기독교와 그 밖의 일반 단체도 미찬가지로 당국의 지도 통제에 순응하면서 민중을 계몽하고, 내선일체에 부합하는 애국적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등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민중의 취향을 자세히 관찰하면 국제관계에 대한 기우 혹은 경제적 불안 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하기 어렵고, 또 일부 어리석은 주의자와 청년학생들 중에는 여전히 사변에 대한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자신의 주의적 입장에서 사태를 곡해해서 제국주의적 침략, 혹은 일본 군부의 전단적(專斷的) 무력행사이라며 매우 온당치 못한 반전·반군적 언동을 일삼으며 국민의 협력일치를 방해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또 사변 발생 당시에는 6만여 명에 달하는

재류 지나인 관련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지나 및 소련 방면에 산재하는 불온한 자들은 호기 가 찾아왔다며 적화 혹은 배일 책동의 앞잡이가 되어 첨보 임무를 띠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 관련자들 중에는 세삼 교리와 교의의 해석을 내세우면서 제국의 국체와 어울리지 않는 사상을 품고 국론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자도 있으며, 그 밖의 민심을 혼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시국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기 공갈 등의 비행을 저지르는 자도 있다.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치안 정세 하에서도 그 이면에는 엄중한 경계를 필요로 하는 점이 적지 않다. 재류 지나인은 사변 발발 당초에는 멀지 않아 현지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 아래 지극히 평온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뒤 사태의 진전에 따라 조선부대의 동원, 일본 내지 부대의 대량 수송 등의 사실을 목격하고 사변가 예상 외로 확대한 데 놀라 1927년과 1931년처럼 지나를 배척하는 운동이 발발하는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사변에 따른 지나인 고용 감소 등의 영향도 받아 급기 조선을 떠나 귀국을 결심하는 나가 증가하였다. 인천, □□□, 신의주 등에는 한때 귀국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러 큰 혼잡을 빚었는데, 이들 귀국자들은 7월 중순 이후 8월을 최고조에 달했고 대체로 10월 하순 경까지 일단락되었다. 사변 발생 아래 12월까지 귀국한 자 33,209명으로 재류 지나인의 과반수가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 뒤 12월 14일에는 베이징에 북지 신정권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조선에 거주하는 지나인 대다수의 출생지 산둥성(山東省)도 신정권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선 거주 3만여 명의 지나인들도 연말에는 잇따라 신정권에 참가하여 방공과 일본·만주·지나 3국의 친선제휴를 외치고 있고 완전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또 일반 외국인 관계를 보면 소련·영국·프랑스·미국의 각 공관원들은 시국에 관한 언동에 신중을 기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피하려는 경향에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없지만 지나사변에 대한 국내의 상황, 특히 일반 민중의 태도, 군사행동 등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열심히 정보 수집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이탈리아 및 백인계 러시아인은 철저하게 방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사변은 방공 및 근본적 동양평화 확립을 위해 절대 불가피한 성전이라며 일본의 태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지나 군벌의 횡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백인계 러시아인의 경우에는 지나 군벌을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소련을 응징하지 않는 한 평화는 바랄 수 없다며 노골적인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변을 계기로 일반 민중들에게 충분히 시국을 인식시키기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경찰관 주재소를 주체로 한 시국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좌담회는 민중의 시국 인식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1940년 7월까지 개최한 좌담회 개최 수는 725,667회로 참가한 연 인원은 33,903,025명에 달하고, 같은 해 8월 이후 계획된 방공좌담회와 병행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제12장 국경경비

1. 개황(概況)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만주국에 접하고 있으며, 이 국경선의 길이는 1,311킬

로미터(□□□□□□□□□□)에 걸쳐 있다. 그리고 국경 경비 구역은 강 연안에서부터 20킬로미터 내지 40킬로미터 지역으로, 그 면적은 약 27,7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중앙에 높은 산들과 지맥이 사방으로 뻗어 나와 산악이 험악하고, 특히 백두산 산록 경국 약 80킬로미터 사이에는 큰 밀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전선의 가설조차도 불가능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두만강은 물길이 험하고 뱃길 이용에 결함이 있으나 압록강은 이와 반대로 발동기선과 고뢰선(高瀨船) 등이 늘 강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곳곳에 선착장도 있다. 또 상류는 수심이 얕은 곳이 많고 갈수기에는 걸어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으며, 겨울에는 강이 얼어 사람과 말의 통행도 안전하여 강 건너편과의 교통도 자유롭다. 이런 기회를 노리고 강 건너 만주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적은 조선 내 잠입을 시도하기 때문에 경비상 가장 경계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강 건너편 만주국 지역은 광활한 평야로 일반적으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아주 조선인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

2. 비적(匪賊)상황

종래 국경 지방에는 때로 지나 마적들이 침입한 적이 있었지만, 1919년 2월의 소요사건 발발 후 이 사건에 관여한 일부가 검거를 피해 지나 땅(□□□□)으로 도피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불온한 무리들과 함께 각종 불안단체를 조직하여 비적이 되었고, 각지에 근거를 두고 늘 조선 내에 무력침입을 감행하기 위해 우리 경비력을 감시하고, 교묘하게 국경 연안의 경계망을 피해 조선으로 들어와 약탈, 방화, 살상 등의 횡포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들 비적은 정교한 통기를 휴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매우 민첩한 동시에 자리에 정통하고, 야영에 익숙하고 자유자재로 출몰하면서 강 건너편에서 국경을 넘어 침입하고 있다. 또 인적이 드문 산악과 밀림지대에 잠입하여 일몰을 기다려 민가를 습격해 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며, 또 관공서를 습격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국 경찰은 조선 내의 단속을 강화하여 이를 검거 소멸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의 비적들의 상황을 탐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지나 당국에 대해 종종 비적의 단속을 요구하거나 자위상 어쩔 수 없는 적절한 조치로서, 지방적으로 양해를 구해 우리 수사대를 강 건너편에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방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근절할 수 없었다.

이는 국경 일대의 지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험준한 산악이고 울창한 밀림이 비적들의 잠복과 강 건너편으로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관헌의 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다가, 피해를 입은 인민들은 비적의 혐박에 떨고 후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는 도리어 우리 관헌의 행동을 그들에게 밀고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비적을 비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근거지인 지나 측의 단속은 매우 불철저한 것으로, 소탕에 있어서 아무런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국경을 넘었을 때는 지나 측의 반감을 사서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외무당국은 국교상 장애를 초래할 것을 염려해 종종 본부에 대해 절대 진출 금지를 요망해왔다. 그리고 월정 진출은 우리 입장에서도 중대한 각종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피하는 데 노력·연구를 했으나 당시 크게 창궐하던 비적들의 절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 그 뒤

1925년 6월 미쓰야(三矢) 경찰국장은 봉천(奉天)에서 지나 당국과 국경 경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우리 관현은 이 협정에 기초하여 한층 더 강경하고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였다. 지나 관현 역시 비적의 단속에 관해 크게 선전하고 호구조사, 가택수사를 단행하고 때로 적극적으로 그 소탕에 종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적들은 이러한 단속에 마음을 졸이며 외형상으로는 농부로 가장하고 잠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과거의 죄악을 후회하며 귀순을 신청하는 자들이 점차 증가하였고 조선 내의 주민들 역시 경찰 관현을 신뢰하면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일 없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진압에 있어서 현저한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비적의 횡포가 가장 심했던 것은 1910년으로 총 건수 1,651건, 비적 4,643명, 피해는 살상 50명, 방화 36가구(□□17,380□), 손해금품 114,624원, 경찰서 및 주재소의 습격 13곳, 경찰관의 순직자 9명, 부상자 24명에 이른다. 그 뒤 경비력의 충실과 엄밀한 단속 경계로 평안북도를 제외하고 함경남도와 북도의 국경 연선 약 800킬로미터에 걸친 일대에는 1923년 이후 집단적인 침입은 거의 없고, 다만 때때로 시국을 표방하는 강도 살인 등의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을 뿐, 그 대부분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932년 3월 만주국 성립 아래로 만주에서도 비적의 소탕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가 성립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탓에 광대한 지역에 걸친 활동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 건너편은 비적들의 횡포가 심하고 언제 조선 내를 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경계 단속은 만주와 조선은 하나(滿鮮一如)라는 견지에 입각한 긴밀한 연대 공조를 통해서 비로소 완벽을 기할 수 있지만, 1936년 10월 도문(圖們)에서 미나미(南) 총독과 우에타(植田) 관동군 사령관의 회견은 양자의 비적 소탕 합동작전상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그 이후 국경 관념을 배제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1937년 여름 이후 국경수비대가 이 방면으로 이주함에 따라 국경 경비의 중임은 오직 우리 경찰관의 양 어깨에 달리게 되어 그 책무는 더욱 가중되었다. 또 종래 비교적 무난했던 조선과 소련의 국경 지대는 일지사변(日支事變) 발발과 더불어 극동 국제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소련 첨자의 암약이 여전히 활발해지고 있으며, 조선인 당원을 조선 내에 밀파하여 국내 정세의 첨보 수집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소련 관현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탈출해 조선으로 귀환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때로는 해상의 불순한 날씨를 이용해 출어중 표류했다며 표류선을 가장하고 조선으로 입항하고, 또는 양민을 가장해 국경을 넘거나 철도로 잡입하여 잡화상을 가장하여 은밀히 정교한 무전기를 사용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서 전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 근래 강 건너편의 소련 관현의 행동은 점차 도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관계상 1936년 훈춘현 내 만주와 소련의 국경 장령자(長嶺子) 사건, 같은 해 4월에는 함경북도 경흥 연안 오가자(五家子) 사건 등 소련 관현의 불법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에는 현지 교섭으로 해결한 경미한 섭외 사건 같은 것도 그 이후로는 이에 결코 응하지 않고 모두 중앙의 교섭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행동은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변해 저들의 비행기는 조선 내 상공도 침범하게 되었다. 또 연해주 방면을 지나고 있던 소련 경비선이 이유도 없이 우리 어선을 나포해서 억류하는 등 조선과 소련의 국경의 사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38년 7월 11일 함경북도 경흥 연안의 만주와 소련의 국경 고지 장고봉(張鼓峯)에 소련 병사 20여명이 불법 월경하여 만주령을 침입한 뒤 진지를 구축하고 점차 병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자 그곳 부근의 국경선 지방을 시찰 중이던 마쓰시마

(松島) 현병 오장을 불법 사격하는 동시에 신병을 납치하는 폭거를 거듭하자 마침내 그 지방의 수비를 맡고 있던 제19사단 장병들이 출동하게 되면서 이른바 장고봉사건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적에게 큰 타격을 주어 국경선 밖으로 격퇴하였고, 8월 10일 저녁 모스크바에서의 일·소 정전협정이 성립하여 11일에는 완전히 전운이 가라앉게 되었다. 이후 그 방면의 경비는 한층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늘 상황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경비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경비기관

경찰서는 부(府)·군(郡) 하나에 경찰서 하나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경 3도는 면적이 광대하고 특별한 경비를 해야 하는 관계상 경찰관서의 설치를 조밀하게 하고 있다. 즉 함경북도는 1부 12군에 21곳, 함경남도는 2부 16군에 21곳, 평안북도는 1부 19군에 24곳을 설치하고 있고, 또 경찰관도 정원 이외에 평안북도에 646명, 함경남도에 73명, 함경북도에 111명, 계 830명의 내지인 순사를 다른 도에서 차출하여 임시 정원으로 증원시켜 배치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국경에 근무하는 순사 1인당 담당 면적과 인구는 평안북도는 면적 10,105평방킬로미터, 인구 588명, 함경남도는 면적 16,011평방킬로미터, 인구 820명, 함경북도는 면적 12,33평방킬로미터, 인구 505명이라는 비율이다. (제28,33표 참조)

그리고 국경의 경비 시설은

(1) 경찰관 주재소와 출장소는 그 주위의 지세를 고려하여 참호를 정사 주위에 파고 토벽이나 철조망, 목책 등을 둘러싸서 보루를 쌓고 필요한 장소에는 망루를 설치하였으며, 진지 사이의 연결망을 파둔 곳도 있다. 1923년 이후 신축 주재소의 사무실 및 숙사의 외부에는 두께 약 60센티(2尺) 이상의 벽을 만들어 총탄을 막고 구내를 안전지대로 하였으며,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비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 평안북도에는 비행기와 기관총을 갖춘 발동기선 2척, 프로펠러선 1척을, 함경북도에는 발동기선 1척을 배치하여 연안 경비에 임하고 있다.

(3) 강 건너편 만주국의 정세를 고려해서 강안의 경찰서, 주재소, 출장소에는 전부 기관총과 망원경을 갖추고 있으며 철모도 배치해 두었다.

(4) 강안 주요 지역에는 참호를 파거나 염호(掩壕)를 만들었고, 강을 건너는 지점을 제한 또는 지정해서 비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있다.

(5) 경비전화를 대부분의 강안 주재소, 출장소의 대부분에 가설해 두었다.

(6) 무기는 38식 보병총, 44식 기총 외에 권총과 단검을 배급하고 있다.

(7) 피복은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외에 겨울에는 다갈색 모포, 모피가 달린 방한 외투와 방한동복(胴服), 방한모, 방한 셔츠, 방한 바지, 방한장갑, 방한 복면을 대여하여 방한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고, 또 시기에 상관없이 수사 토벌용으로 다갈색 하카마 바지, 다갈색이나 초록색 외피를 대여하고 있다.

4. 근무상황

국경의 치안 상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관은 주로 비적의 경계 방비에 임하고 있고, 평소

근무는 오히려 야간의 근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상 불면과 쉬지 못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건강한 장년층을 배치하고 있다. 또 비적들은 늘 우리 경비망을 주시하고 있어서 우리 관헌과 조우하게 되면 곧바로 발포 사격하는 횡포한 무리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이러한 불시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긴장을 높출 수 없고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일상적인 근무는 강안 순찰, 요충지 잠복, 검문과 그 밖의 일반 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 외에 세관 사무, 집행관 사무, 전매 사무, 임야보호단속, 맹수 처치, 우편 호위 등을 맡고 있으며, 부원이 소수인 주재소, 출장소 등에서는 거의 휴일도 없는 상태이다. 또 순찰은 험준한 산악과 절벽 등지를 정시에 순찰하고, 특히 비적의 수사와 체포에 있어서는 여름에는 어두운 밀림 깊숙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길도 보이지 않는 산중에 오르며, 또 밤을 씹으면서 야영을 하고 가파른 언덕과 계곡을 건널 때는 추적이 수십일 걸릴 경우도 있어서 그 근무 환경은 너문 힘들어 노고에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모두 신체 건강하고 사기가 충전하며, 그 행동은 용감하고 기민하고 규율을 잘 지키고 있으며, 어려움을 참고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오직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숭고한 정신은 이곳 국경에서 빼저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 가족과 처자들까지도 늘 긴장하고 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권총 사격 연습을 하여 예상치 못한 비상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각자 권총을 들고 응전하거나 전화 통보와 그 밖의 연락 임무를 맡는 등의 굳건한 자세와 각오는 실로 유부(儒夫)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바가 있다.

늘 국경지방 근무하는 경찰관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지방민의 지도유에 노력하고 또는 취학치 못한 아동을 위해 사비를 투자해 야학을 열거나 도로를 개수하고, 혹은 빈민을 구제하는 등의 사례는 다른 지방에 비해 오히려 국경지방의 경찰관에게 많은 상태다.

제13장 범죄의 상황

1. 개황

과거 조선은 강도, 살인 등의 잔인한 범죄가 다른 것에 비해 많았지만, 병합 후 제도가 확립되고 경비 기관이 정비됨에 따라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뒤 한때 강력범죄, 즉 강도와 살인이나 공갈 등 난폭한 범행이 점증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주된 범죄는 재산과 관련한 범죄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절도가 가장 많다. 게다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사변 발생 후 총후(銃後) 국민의 자각과 적절한 범죄예방 조처 덕분에 1937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와 횡령, 문서위조 등의 지능범이다. 지능범죄는 문화의 침윤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른 범죄는 이동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문화의 발달에 따라 그 수단과 방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근래 만주국과 북지 방면과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일본 내지와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지나 쪽으로 도주하는 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통화위조에 관한 범죄는 1930~1933년경에는 위조화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이는 주로 조선 밖에서 일어났고 국경 방면에서는 만주국의 위조화폐도 상당수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반입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소 감소된 듯하다. 또 조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조는 규모도 작고 유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거의 전부를 검거하고 있지만, 위조화폐의 발견은 잔존화폐의 발견과 조선 밖에서 들여오는 밀수와 함께 경계를 요한다.

또한 국내의 금 가격이 국외에 비해 유독 저렴하기 때문에 1932년 여름부터 만주국 방면에 금과 밀수출을 하는 자들이 속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나사변 발발 이후 여러 법령의 강화와 이웃나라 만주국 화폐제도가 점차 확정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졌기 때문에 밀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만주국의 금 가격이 급등하여 조선 내의 가격과 큰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 폭리를 노리려고 금 밀수출을 기도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 생산 장려와 병행해서 금제품과 금괴의 밀수출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 범죄발생 및 검거

과거 수년간의 범죄는 1918~1919년에 걸쳐서 의외의 변화를 보였다. 1918년의 발생건수 84,583건이었던 것이 1919년에는 72,019건으로 하락하였고, 1920년 이후에는 매년 증가하여 1926년에는 136,982건으로 늘어났다. 1930년에는 178,013건, 1935년에는 199,720건, 1936년에는 197,404건, 1937년에는 196,721건, 1938년에는 183,058건, 1939년에는 167,914건, 1940년에는 181,195건으로 1939년에 비해 13,381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통제경제의 단속 강화에 따른 각종 행정법규 위반과 물자의 입수 곤란에 따른 절도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는 대부분 매년 다소의 증가와 감소에 머물고 있다.

1920년과 1921년에는 강도 공갈이 매우 많았는데, 이는 소요사건이 낳은 특이한 현상으로 1922년에는 격감하였고, 1923년 이후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범죄는 특히 안녕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이기에 예방과 검거에 힘쓴 결과 일반 범죄의 증가에 반해 1927년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1931년에는 도리어 감소하였고 1932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1933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층 더 주의를 요한다.

1919년의 소요사건 이후 경찰 제도를 개정하고 오로지 민심의 안정과 치안의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당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아직 경비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다가 교통의 불편, 통신기관의 불비, 넓은 담당구역, 조선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인해 검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각 도에서는 검거 실적을 올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때로는 형사 강습회를 개최하거나 경찰지문, 경찰 사진 수집에 노력하면서 1931년에 전 조선을 통일하여 경기도를 보관관청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1934년에 경기도에 법의, 형사 화학감식 설비를 마련하는 등, 수사상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 경찰부장 회동에서는 특히 자문 사항으로서 의제로 삼는 등 그 방법의 향상을 도모한 결과 검거 성적은 현저히 향상되었고 최근의 성적은 일본 내지의 각 부현의 검거율과 비교해도 순색이 없을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34표 참조)

3. 범죄 즉결

범죄 즉결 사건은 1919년, 1920년에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처단 인원의 경우 58,084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1년 이후에는 해에 따라 다소 증가와 감소는 있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1940년의 즉결 건수는 80,708건, 인원은 104,878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19년 소요사건의 발발로 인해 인심이 동요되어 오로지 치안유지에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할 여력이 없어서 자연히 즉결 사건도 감소하였다. 그 뒤 일반 민심이 안정됨에 따라 다시 제반 단속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즉결 사건의 주된 것은 형법 관련 범죄이거나 도박 관련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는 경찰법 치벌규칙 위반이 가장 많고 자동차 단속 규칙 위반, 폭행 단속에 관한 위반, 음식점 영업단속 규칙, 도로 단속 규칙 위반, 조선 자동차 단속 규칙 위반 등이 주된 것이다. 그 밖의 자동차 단속법규 및 도로 단속 규칙 위반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도박 범죄가 많은 까닭은 조선에서 는 오락기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가 저급한 취미를 갖고 있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도박이 일종의 버릇이 되었기 때문인데, 근래 당국의 철저한 정책 실시로 황국신민임을 자각·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개선되어 도박 관련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제35표 참조)

제14장 다중(多衆)운동

1. 노동쟁의

조선의 노동쟁의는 1912~1917년까지 6년간 계 36건, 1년 평균 6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19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19년과 1920년에는 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운동사에 있어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31년에는 205건이라는 최고기록을 보였고, 1932년 152건, 1933년 176건, 1934년 199건, 1935년 170건, 1936년 138건, 1937년 99건, 1938년 90건, 1939년 146건, 1940년 96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동쟁의의 경과 개요를 검토하도록 하자. 1919년과 1920년경 일본 내지의 사업계가 전에 없던 호황기를 누리면서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그 뒤 반동(反動) 경기로 생활의 불안이 점차 심각해졌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만연한 사회주의적 시대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본 내지에서 노동쟁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점차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자 조선에서도 자극을 받아 일부 야심가 또는 주의자들의 선동과 사주로 비교적 저임금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모방하듯 노동쟁의가 결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산업의 발달이 매우 낮은 조선에서는 그 내용도 일본 내지와는 달라서 대부분은 일부들, 항만 짐꾼들 및 정미소 일부와 기타□ 공장의 직장 등, 물가급등에 따른 생활 곤란 때문에 일어나는 소규모 쟁의에 지나지 않고, 1921년 이후에는 재계의 불황으로 쟁의 내용도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금 하락에 대한 반대였다.

그러나 1932년에 들어서 재계 사정이 호전되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쟁의가 다시 많아졌고, 노동문제는 일약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되면서 사상계의 동요와 맞물려, 비교적 무사했

던 조선의 노동문제도 점차 조직적으로 변했다. 또한 다분히 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가장 주의를 요하는 점이다. 이어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 사상계의 호전에 따라 노사가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쟁의도 점차 온건해졌으며, 그 건수도 매년 감소는 하고 있으나 주의자의 지하 암약은 아직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또 1937년 7월의 지나사변의 발발과 장기전으로 이행함에 따라 물가도 급등하게 되었고, 최근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 노동자 측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고용주, 감독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등의 악질적인 쟁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소작쟁의

종래 조선의 소작제도와 소작관행에는 많은 결합과 부조리가 있었다. 즉 소작인 생산의 50% 이상은 지주들의 수확인데다가 소작지의 지세 공과 등도 소작인 측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소작 기한도 아무런 보증이 없는 탓에 소작자는 지주나 토지 관리인[마름(舍音) 혹은 농감(農監)이라 불린다]에 의해 임의로 처분되어서 소작인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었다. 그렇지만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인습의 영향으로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고 토지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정이 깊은 면이 있어서 소작쟁의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후 경제계의 동요와 더불어 일본 내지에 소작쟁의가 빈번히 일어나자 조선에서도 비슷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즉 1922년까지 조선 전체를 통틀어 1년에 평균 30건에 미치지 못했던 소작쟁의가 1923년에는 176건으로 급증하였고, 그 뒤 당국의 단속으로 한때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최근 또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29년 9월에 조선농지령(農地令)이 발표되자 이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지주들이 농지령 시행 이후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작료 증액, 소작인 정리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소작인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쟁의는 순식간에 106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농지령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었는데, 1935년에는 71건으로 줄었다. 1936년에는 56건, 1937년에는 24건, 1938년에는 30건으로 대체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규모 쟁의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39년도 조선 남쪽 지방 희유의 가뭄 당시에도 지주와 소작인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한 결과 쟁의는 불과 28건에 머물렀고, 1940년도에는 23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나사변의 장기화에 따라 물가의 급등, 비료나 생활필수품 등의 입수 곤란과 맞물려 미곡과 잡곡의 공출 등 농민에게 가해지는 중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민정의 동향은 그리 낙관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경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쟁의의 수단은 종래에는 대개 온건했지만 조선의 주민 약 80%를 차지하는 농민에 대해 점차 주의자들이 착목하게 되면서 각지에 농민단체를 설치하여 이에 좌의적 지도를 시도하고, 또는 쟁의에 관여하여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탓에 쟁의도 점차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특히 내지인 지주의 증가에 따라 민족적 반감도 더해져 쟁의를 야기하고 사태를 분규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년간 이어지는 농업불황으로 지주, 소작인 모두 곤경에 빠져 제반 정세는 장래 소작분쟁을 크게 야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932년 12월에 조선소작조정령을 발표하고 1933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한 바, 그해에 조정 신청 727건, 그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의 소작

제도 매년 소작관행에는 부조리한 점이 많아서 소작인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고 이대로는 도저히 농촌의 건전한 발달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1934년 4월 조선농지령을 제정하고 발포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작조정령의 운용과 맞물려 소작인의 지위는 안정을 찾았고 불합리한 소작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2년부터 조선에서 일제히 시작된 농촌진흥, 자력갱생 운동은 착실히 그 실적을 올렸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농촌의 평화는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사변의 장기화, 더욱 복잡해진 국제정세로 인해 객관적인 정세를 지켜보고 있던 주의자들은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며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1940년 봄부터 좌익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민심의 분열을 틈타 교묘하게 반전과 염전(厭戰)의 선전 선동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서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제15장 재외조선인

1. 이주 연혁

제국 밖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확실한 조사는 없으나 각종 정보를 종합하면 약 150만 명内外로 추정된다. 원래 조선인은 생활하기 좋은 땅을 찾아 전전하는 습관이 있고 해외이주 대부분은 생활상의 필요에 기인한다. 특히 노령 연해주와 만주 간도 지방은 조선과 인접해 있고 또 미개척지가 많아서 농업에 유리하다는 말만을 듣고 이주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 그 연혁 역시 매우 오래되었다. 특히 두만강 건너편인 북간도 방면 이주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숫자는 약 51만 명에 이르러 조선인인 토착 만주인의 몇 배에 달하고 있다. 이 지방의 농업은 조선인의 독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조선인의 이주지는 주로 만주이고 총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지나 본토(주로 베이징, 텁진, 상하이), 북미, 하와이 및 멕시코 지방에도 분포하고 있다. 종래 그 대부분은 과거(동양 이민 자유 시대) 노동자로서 이주 또는 도항을 한 자들과 그 자손들이었으나, 지나사변에 따른 우리 대륙정책이 진전하면서 지나 방면에 대한 조선인의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장래를 생각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2. 불령자의 상황

과거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생활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매년 외국으로 밀항하는 자 대부분은 만주에 이주해서 생활의 길을 찾으려는 자들이다. 이들 이주자들 중에는 종종 불량자가 섞여 있어서 우리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양민을 선동 압박하거나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방면의 독립운동자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대오를 갖추어 무기를 들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국경을 넘어 우리 경비기관을 습격하거나 사람과 가축을 살상하고, 또는 가옥의 방화, 재산 약탈, 양민 납치, 관리 암살을 피하는 등의 횡포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다.

1910년 9~10월에 이들 불량자들과 지나 마적 및 과격파들 일부와 결탁한 400명의 무리가 훈춘을 급습해 우리 영사관과 거류 일본인의 가옥을 방화하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 지나인들 중에 그들에게 살상된 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참혹한 짓을 감행했는데, 이를 동기로 북간도 각지의 불온한 조선인들이 망동(妄動)을 하기 시작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침내 우리 군대를 출동시켜 이들 비적단을 철저하게 소탕한 뒤 북방으로 내몰아 간도 각지의 질서유지를 위해 나선 결과, 당시 비적들 중 귀순을 하는 자가 5천여 명에 달했고, 그 이후 이 방면은 평정을 되찾았고 그들의 부대 침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간도 지방의 조선인 비적들 중에 평안북도 내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인명을 해치는 등의 난폭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안으로는 국경 경비의 충실과 밖으로는 현지 관헌의 협조를 얻어 지나 측 관헌의 단속을 독려하여 1925년 이후 점차 평정을 되찾았으나 그 뒤 공비(共匪)의 공동전선으로 인해 토벌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비적들은 만주사변 당시 약 5만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당시 경비가 느슨한 틈을 타서 활발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그 뒤 만주국의 성립과 더불어 일본과 만주의 군경의 토벌은 점차 주도면밀하게 되면서 1937년 3월 말 현재는 그 숫자가 약 1만 명으로 격감하였다. 또 완전한 소멸도 시간문제였으나, 우연히 같은 해 7월 7일의 노구교(蘆溝橋)사건이 지나사변으로 확대되자 만주의 각 비적단들이 초목이 무성한 시기와 맞물려 일제히 봉기하여 잔당의 규합, 자금 획득, 반만항일(反滿抗日) 사상의 선전 등에 광분하였다. 특히 공비는 이 기회를 틈타 각 비적단의 합류 통제를 획책하고 착실히 그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비적단의 횡포는 악질적이고 심각해졌고, 비적 숫자도 급증하여 1937년 말에 1만 6천여 명에 이르렀다. 일본과 만주의 군경에 대해서 도전적 태도를 취하거나 후방 교란을 획책하는 등, 그 동향에는 엄중한 경계를 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과 만주 군경의 압박을 받아 1938년 말에 그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 잔존 공비는 지나공산당 예하에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서 완전히 통일 편성되었고, 이른바 중한합작 항일을 주장하면서 매우 과감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동향은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하와이, 미국 등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중에는 병합 전후 자신의 실이나 정치적 불평을 가슴에 품고 피난한 자들이 매우 많고, 이들 무리는 독립자금이라며 양민으로부터 금품을 강탈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일반 조선인들이 점차 자각하게 되면서 감언이 혼혹되지 않게 되었다. 1919년 봄 그들은 상하이에서 이른바 임시정부를 조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사이에 알력이 생겼고, 자금 부족으로 종종 자멸의 위기에 봉착한 탓에 1921년 워싱턴회의를 계기로 조직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때문에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필사적으로 국면 전환을 도모했다. 그러나 당쟁은 여전히 격렬해져 통일되지 않고 결국 결렬되었다. 1924년 이후에는 자칭 대통령 □□ 문제 운운, 임시헌법 개정 문제 운운 등 갖가지 실패를 거듭하였고, 게다가 지방적 세력다툼이 심했기 때문에 간부의 경질이 종종 이루어졌다. 거기다가 자금 공급의 길이 완전히 막혀 그저 잔해를 끌어안고 이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이래 임시정부 대한독립당, 병인의용대, 흥사단,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 상해 한인청년당, 애국부인회 등 각 단체는 모두 일본과 지나 관계의 분규를 이용하면서 지나에 영합하였다. 배일(排日)과 지나를 지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재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를 조직하거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

統一同盟)을 조직, 또는 중한합작 등을 주장하면서 상하이 시 당부(黨部)나 항일회(抗日會)와 연락을 취하고 조선 내에서 각종 불온한 계획을 세웠다. 그 뒤 임시정부 계열의 김구(金九) 일파와 의열단 김원봉(金元鳳) 일파가 연합하여 지나 측의 양해를 얻어 청년투사 양성을 위해 군관학교를 설립해 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을 조선과 만주 각지에 밀파하여 반만항일(反滿抗日) 공작 또는 무장폭행 등의 불온한 계획을 꾸몄다. 1935년 6월에는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의 주도로 난징(南京)에 의열단 이하 지나에 있는 각 혁명단대표회를 개최하여 종래의 임시정부 및 그 밖의 기성 단체의 해체를 선언하여 대동단결체로서의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한 뒤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당세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나 측의 지원을 받아 청년투사의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구 일파의 임시정부 존속파는 같은 해 11월 항저우(杭州)에 신정부를 조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애국단을 주체로 하는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여 혁명당과 대립하였고, 지나 측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반만항일의 불온한 행동을 경쟁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단체들의 앞으로의 행동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편 소련 내의 불량 조선인들은 공산주의에 공명하여 교묘히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불온한 계획을 세우고, 상하이와 만주 지방의 불온한 무리들과 연락을 취하여 일본 내지와 조선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25년 1월 일소협정 성립 이후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공공연히 소련 영토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기는 했으나, 코민테른의 세계적화 방책에 기초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근거지 또는 연락지점으로 삼아 끊임없이 당원을 조선으로 밀파하여 적화공작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운동이 점차 쇠퇴하는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만주에서는 남북 양 청년총동맹 및 한족 노동당, 간도에서는 동민주 조선청년총연맹을 기반으로 계속 여러 단체들이 생기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 텐진 및 베이징 방면에서는 동방피압박민족해방 혹은 반제국주의 하에 지나와 한국 공산당원들이 공동전선을 펼치면서 제3국제당과 연락을 취하고, 한편으로 조선 내의 사상단체와 서로 호응하면서 주의의 선전, 기관의 밀접 및 각 기관지의 발행을 하여 국외의 조선인들에게 선전하는 동시에 조선 내에도 밀송하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그 뒤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각 파벌 간의 내홍이 일어나 전선이 분열되면서 수습할 길을 찾지 못한 탓에 국면의 타개책으로서 지나 공산당에 합류한 뒤 지나혁명의 완성으로 한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도모하고자 각 파는 잇따라 지나 공산당에 가입하여 그 지도 아래 활약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만주의 공산운동은 전기를 맞이하여 마침내 지나 공산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직접행동을 취하게 되면서 1930년 5월 30일의 간도 5·30공비폭동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일 국제반전 데이, 그 밖의 10월혁명 기념일 전후의 만주 전체로 공비폭동이 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인들의 독자적인 공산주의 운동은 거의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만, 지나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 지도 협력 하의 공산주의 운동은 만주사변과 지나사변 발발에 따라 점차 활발해졌으며, 기회를 엿보면서 그 마수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